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46호

2018. 1. 1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80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규 칙]

제31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5

[훈 령]

제1008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7

[입법예고]

제2018-4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제2018-48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제2018-69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4

◆ 고 시

제2018-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명칭 및 보유자 인정 고시 15

제2018-2호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5

제2018-3호 2018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6

제2018-4호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3

제2018-6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 고시 24

제2018-7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29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1

제2018-9호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2

제2018-1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9

◆ 공 고

제2018-6호 2017년도 제18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46

제2018-11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48

제2018-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49

제2018-1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50

제2018-2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52

제2018-2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53

제2018-3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54
제2018-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56
제2018-36호 도시계획시설(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	56
제2018-40호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57
제2018-44호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재열람 공고	58
제2018-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9
제2018-46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60
제2018-57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61
제2018-5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 공고	63
제2018-6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69
제2018-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70
제2018-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0
제2018-66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72
제2018-6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73
제2018-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75

◆ 구 고 시

제201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82
제2018-1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KT부지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83
제2018-4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94
제201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96
제2018-6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 고시(노원구)	99
제2018-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99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초구)	101

◆ 구 공 고

제2018-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용산구)	102
제2018-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성북구)	119
제2018-38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은평구)	121
제2018-18호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금천구) ...	166
제2018-75호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 특별계획구역Ⅲ,Ⅳ 신설 -(서초구)	166

제2018-4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남구)	168
--	-----

◆ 사업소고시

제20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0
제2018-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2
제2018-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3
제2018-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3
제2018-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4

◆ 기 타

제201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5
---	-----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80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3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의2의 제목 “(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을 “(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활동기한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의장이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 이에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 의장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항).
- 시장 또는 교육감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5조의2).

[규 칙]**◆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31호****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08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일상감사의뢰서(계약업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일상감사 자체점검표(계약업무) 및 일상감사 자체점검표(민간위탁사업)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건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한다.
4. 안전관리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5. 시책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 1. 계약업무 및 4. 안전관리계획에서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란 광장, 공원, 도로, 산 등 실외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와 실내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공연, 박람회, 전시회 및 이와 유사한 행사이며, 기념식, 시상식, 설명회, 회의(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계약업무)

사 업 명			
집행부서		담당자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추정가격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 일반경쟁[] 2. 추진경위 ○ ○ ○ 3. 입찰참가자격 ○ ○ ○ 4. 낙찰자 결정방법 ○ 수의계약[], 적격심사[], PQ+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2단계입찰[],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기타[]			

-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발주방침서(안)
2. 시방(규격)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3. 원가산출서(기초가격 조사서)
4.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5. 수의계약 사유서(해당 사업)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완료일 . . . / 예정 ☐ 비대상 ☐
②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50% 이상 증액사업 또는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등)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③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건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⑦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⑧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제외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⑨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⑩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외퇴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⑪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제안내용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 사전공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일 . . . / 종료일 . . . 예정 ☐ 비대상 ☐
⑫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 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용역·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⑰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품)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 방법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⑲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⑳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민간위탁사업)

구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위탁 근거	① 민간위탁의 근거(법, 조례 등)는 명확한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타 관련 개별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절차 이행	②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였는가?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경제적 효율성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는 이행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외회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④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신규위탁 → 시의회 동의, 재위탁 → 시의회 보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동의(보고)일 . . . 예정 ☐ 비대상 ☐
	⑤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	외회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⑥ 계약심사단의 민간위탁 협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6조	외회일 . . . / 결과통보일 . . . 예정 ☐ 비대상 ☐
계획 수립	⑦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대상사무의 위탁 목적, 범위의 타당성 여부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는지 여부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년까지 가능)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모집 공고	⑧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의 명시 -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안서의 내용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탁자 모집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으며 적정한가? - 평가요소(항목) 및 배점 -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수탁 기관 선정	⑩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는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⑪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계획은 적정한가? - 위원 자격의 적정 여부(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 6~9명으로 위원회 구성여부(위원장 포함)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 ☐ 아니오 ☐ 비대상 ☐
기 타	⑫ 수탁기관 선정 관련 현장확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 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 비대상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사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 지방계약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일상감사 제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의 명확화 및 관련 서식의 변경 등을 통해 일상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안 별표 1)

– 공사 20억원 이상, 전문 및 그 밖의 공사 10억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대상 확대

나. 수의계약 일상감사 대상 조정(안 별표 1)

– 수의계약의 일상감사 대상을 2천만원 초과 사업으로 조정

–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의 명확화(안 별표 1)

– 조달구매 중 일상감사가 제외되는 물품을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명시

– 축제·행사 중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축제·행사 명시

라. 일상감사 의뢰서 및 자체점검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중 계약업무, 제2호서식 중 계약업무 및 민간위탁사업)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7호****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까지 확대함 (안 제4조제1항)

나.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6, FAX: 2133-1033, E-mail: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8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장 감면 규정 등의 “직접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함 (안 제4조)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등 공제세액의 금액을 정함 (안 제16조)

다.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6, FAX: 2133-1033, E-mail: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9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 규모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서 기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전화 : 2133-7388, FAX : 2133-0719, E-mail ysc001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명칭 및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명칭 변경 및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명칭 및 보유자 인정 고시

가. 종목 명칭 및 보유자 인정 대상자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명(분야)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 (백모필장, 황모필장)	전상규(백모필)	남	1948.8.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7나길(이하 생략)
	정해창(황모필)	남	1952.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길(이하 생략)

나. 인정일 : 2018.1.11

다. 인정사유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백모필장) 인정 대상자 : 전상규
 - 백모필 제작의 모든 공정에 숙련된 기능과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백모필장) 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황모필장) 인정 대상자 : 정해창
 - 황모필 제작의 모든 공정에 숙련된 기능과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호 필장(황모필장) 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호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위탁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14호
www.khma.org, ☎1577-0337)
2. 위탁교육명 : 주택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3. 교육대상자 :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보)
4.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70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5.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8)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호**

2018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장에 대한 “2018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14호
www.khma.org, ☎1577-0337)
2. 위탁교육명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교육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4.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5.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호**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변경지정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1,588.3	증) 18.0	1,606.3	• 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 • 수표교 복원계획에 따른 대지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구역면적 증가

다. 지정(변경) 사유

-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07.14)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지역으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함

2. 도시환경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대지	소계	1,421.0	감) 40.7	1,380.3	85.9	
	대지	1,421.0	감) 40.7	1,380.3	85.9	
정비기반 시설	소계	167.3	증) 58.7	226.0	14.1	
	도로	167.3	증) 58.7	226.0	14.1	

나.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상업 지역	소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일반상업지역	1,588.3	증) 18.0	1,606.3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변경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 선형변경 • 제12지구부담면적 : 224.2㎡ • ()는 장교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도로	850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서고2005-255호 (05.08.25)	• 구역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 도로모퉁이 변경 • 제12지구부담면적 : 1.8㎡

주) ()는 대상지 내의 폭원 및 연장임

2) 공공공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교동 20-3	418.8	-	418.8	서고2007-132호 (07.05.17)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분담) 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	부담률 (%)
				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1,421.0	167.3	167.3	-	31.9	8.7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1,380.3	226.0	226.0	-	18.0	13.1

주) 기정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31.9㎡)은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매입하고 변경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18㎡)은 무상양도 처리에 따른 부담률 증가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 축	보상후 철 거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획지	1,380.3		1	-	-	1	-	-

5)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장교구역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변경	제12지구	1,606.3	획지	1,380.3		업무	70이하	950이하	7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지역 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 70% 적용 - 고층부(6층이상, 20m이상)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 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 (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역사보전 (의무)	옛 길 재현	옛 길 흔적 표시	50% (옛 길 흔적 표시하되 인센티브 미적용)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설치시	3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침투형 트렌치 시설 설치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0%							
			공공 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1.3 x ((226㎡-18㎡)/1,380.3㎡) x (600%+200%) = 156.7% ⇒ 150% 적용						
		※ ①(600%) + ②(200%) + ③(150%) = 950%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청계천로) : 저층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건축한계선 8m ○ 동측(수표로) : 건축한계선 2m ○ 서측(소로2-4) : 건축한계선 2m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계획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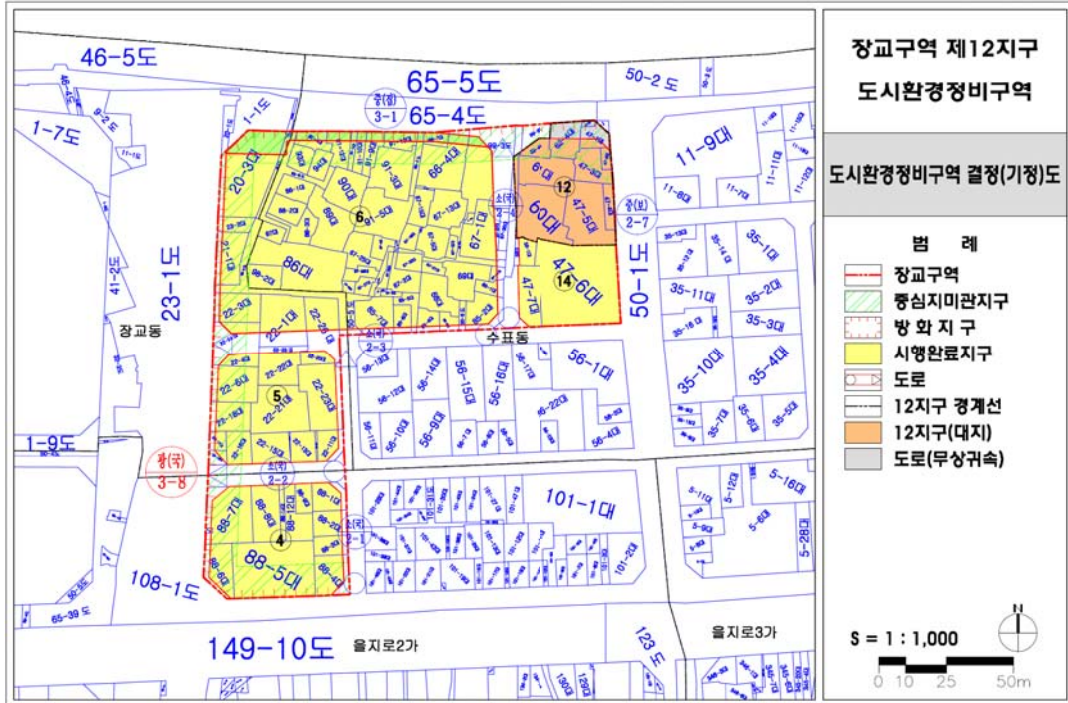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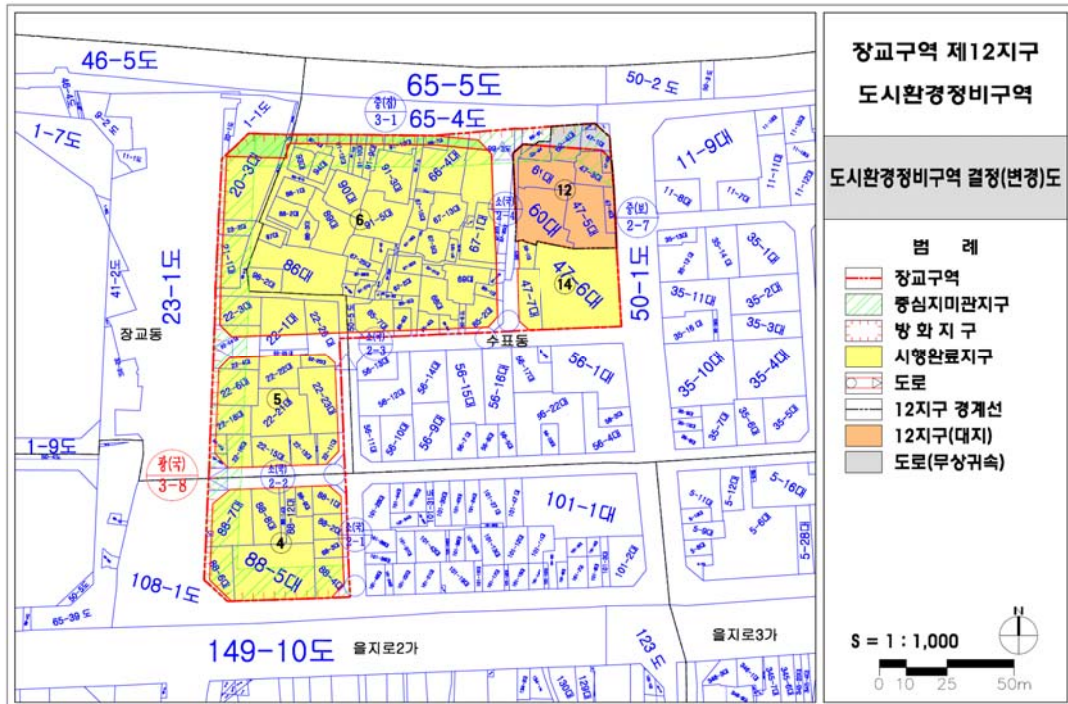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36) 및 중구 도심재생과(☎ 3396-577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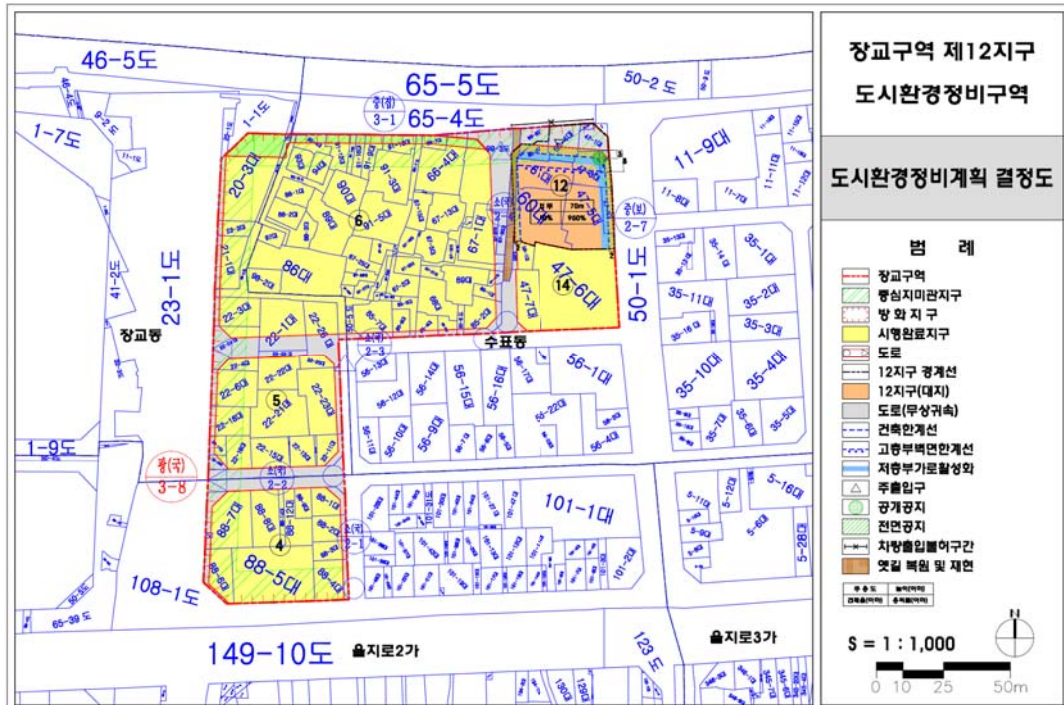
■ 정비구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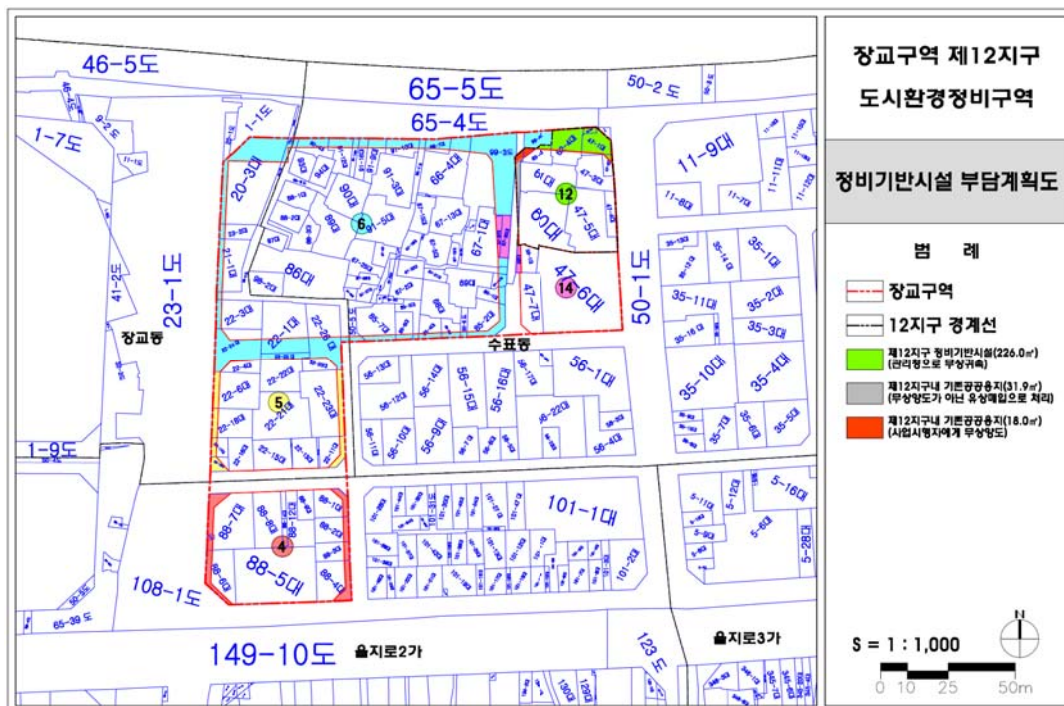
■ 정비구역결정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77호(2015.6.18)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및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9호(2016.3.10.)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로 ~ 양천구 신월동 ~ 목동유수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명 칭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다. 사업규모 및 시행면적(변경없음)

1) 면적 : 71,569㎡

2) 규모

구 분		제 원	비 고
유 도 터 널	저지유도터널	•터 널 : D=5.5m, L=877.1m	
	고지유도터널	•터 널 : D=5.5m, L=219.90m	
빗 물 저 류 배 수 시 설	저류배수터널	•터 널 : D=10.0m, L=3,629.7m	
	저지수직구1	•수 직 구 : D=5.4m, H=46.2m	
	고지수직구	•수 직 구 : D=5.4m, H=47.6m	
	저지수직구2	•수 직 구 : D=5.4m, H=45.8m	
	환기수직구	•수 직 구 : D=5.4m, H=42.3m	
	유출수직구	•수 직 구 : D=7.5m, H=39.8m	
	유지관리수직구	•수직구 : D=6.9m, H=52.2m	
유수지개선		•유수지 : A=15,452㎡ •유수지 : A=56,7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사유 : 굴착 공사 중 사유지 보상 협의지연, 2017년도 수방기간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임시비상저류에 따른 공사중단, 2018년도 예산현액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2133-3870)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방재시설부(☎3708-8773, 8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6호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 고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변경(신설·해제)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일반 도로	남산1호터널 북단 ~퇴계로2가4	삼일대로	0.7	중앙버스전용차로	2018.1.11 부터
일반 도로	세종대로4~동대문R	종로	2.8	중앙버스전용차로	2018.1.11 부터

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일반 도로	세종대로4~동대문R	종로	2.8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18.1.11 부터

다.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현황

전 일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동작대로	사당역 ~ 과천시계	2.1	'93. 2
현 충 로	국립현충원R → 한강대교남단	1.9	'93. 8
노량진로	영등포R ~ 대방역3	1.1	'94. 8
퇴 계 로	회현역 ~ 광희동4	3.0	'94. 5
한 남 로	한남5 → 한남초교	0.6	'94. 5
망 우 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94. 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 ~ 염곡4	1.0	'94.12
남대문로	광교R ~ 송례문교차로	1.5	'95. 4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 ~ 반포IC	1.3	'95. 4
양 평 로	양평동4 ~ 영등포전화국4	1.5	'95. 4
압구정로	한양APT4 ~ 한남대교남단	2.5	'95. 4
남부순환로	시흥IC ~ 까치고개	7.3	'95. 4
올림픽로	삼성4 ~ 잠실역4	3.3	'95. 5
	축협풍납 ~ 올림픽회관	1.0	'99.12('07.8 전일제 변경)
대 학 로	이화R → 혜화R	1.5	'96. 8
	종로4가 → 이화R	0.6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혜화R	0.5	'03. 7
관 악 로	봉천4 ~ 송실대3	2.0	'98. 2('07.1 전일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 ~ 오목교	3.1	'95. 5('07.8 전일제 변경)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 ~ 학여울역4	3.5	'95. 5('07.8 전일제 변경)
풍 납 로	천호4 ~ 축협풍납	1.2	'99.12('07.8 전일제 변경)
소 계	21개 구간	41.6	

시 간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왕십리길	한양공고앞4 ~ 성동교북단	3.4	'93. 8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 ~ 여의교	1.0	'94.8('00.2 시간제 변경)
현 릉 로	염곡4 ~ 내곡C	2.9	'95.4('00.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 ~ 목동역	2.9	'95.4('00.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 ~ 을지병원4	2.0	'95.4('98.9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 ~ 양원초교앞	1.5	'96.8('03.2 시간제 변경)
	강서구청입구4 ~ 화곡역4	1.9	'95.5('07.8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 ~ 남영역	2.7	'96.8('00.2 시간제 변경)
동 일 로	수락파출소 ~ 망우로	10.2	'96.8('98.9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 ~ 학여울역4	3.7	'96.8('00.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 ~ 화곡역4	2.1	'96.8('98.9 시간제 변경)
도산대로	신사역 4 ~ 안세병원 4	0.9	'98.2('07.1 구간축소)
종 암 로	종암경찰서 ~ 고대입구3	1.3	'99.12
성 산 로	성산1교 ~ 사천고가	1.5	'94. 5('07.8 시간제 변경)
은 평 로	서부세무서 ~ 녹번역3	0.7	'95. 5('07.8 시간제 변경)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 잠실4	1.5	'99.12('07.8 시간제 확장)
화 랑 로	월릉교 4 ~ 삼육대학교	4.4	'14.11
소 계	17개 구간	44.6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천호대로	신답R ~ 아차산역남측3	4.5	'96. 2
	신답철교 ~ 신답R	1.4	'03. 7
	천호4 ~ 상일.I.C	5.1	'11. 3
하 정 로	신설동R ← 신답철교	1.7	'03. 7
	용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0.3	'05. 9
삼 일 로	퇴계로2가 ~ 종로2가	1.0	'04. 5
	남산1호터널 북단 ~ 퇴계로2가	0.7	'18. 1
도 봉 로	의정부시계 ~ 미아4	10.0	'04. 7
미 아 로	미아4 ~ 혜화R	4.0	'04. 7
창경궁로	혜화R → 원남4	1.3	'04. 7
강남대로	신사역4 ~ 영동1교남단	4.8	'04. 7
수 색 로	고양시계 ~ 사천교	3.9	'04. 7
성 산 로	사천교 ~ 이대후문	2.9	'04. 7
경 인 로	영등포R ~ 오류IC	4.4	'05. 7
망 우 로	망우역4 → 청량리R	4.9	'05. 7
	시조사3 → 망우역4	3.3	'05. 7
	망우역4 ~ 구리시계	2.2	'10. 8
왕 산 로	동대문R ~ 청량리R	3.4	'11.12
시흥대로	대림3 ~ 기아대교 앞	6.5	'05.12
대 방 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 ~ 대림3	2.5	'05.12
마 포 로	마포대교북단 ~ 충정로삼거리	3.4	'06.12
충 정 로	충정로삼거리 ~ 미동초교	0.5	'14.11
한 강 로	한강대교노들섬 ~ 서울역남단	4.1	'06.12
	서울역남단 ~ 서울역북단	0.5	'09. 7
송파대로	잠실대교 남단 ~ 성남시계	6.3	'08. 1
통일·의주로	고양시계 ~ 박석고개	2.4	'08.10
	박석고개~녹번역삼거리	3.3	'10.12
	녹번역3 ~ 서소문4	5.4	'11.12
공 항 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2.5	'09. 4
	발산역4 ~ 등촌중학교	2.3	'10. 8
	김포공항입구 ~ 공항전화국	1.0	'12.12
	강서구청입구4(북단)	0.1	'15. 4
	발산역4 ~ 공항전화국	1.8	'15. 8
노량진로	대방역3 ~ 한강대교남단	2.8	'09. 5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 논현역4	3.5	'09. 6
남대문로	송례문교차로 → 서울역북단	0.5	'09. 7
동작대로	사당역 ~ 이수교차로	2.7	'09.11
신 촌 로	신촌R ~ 아현교회	1.2	'09.12
양 화 로	양화대교 ~ 신촌R	4.0	'09.12
새문안로	미동초교 ~ 세종로4	1.2	'17. 4
종 로	세종대로4 ~ 동대문R	2.8	'18. 1
소 계	41개 구간	121.1	

기 타 구 간 (중앙버스전용차로-경부고속도로)

□ 운영시간

○ 평일, 토요일·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21:00까지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다음날 01:00까지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2.6	'04. 7 : 최초 시행 '08. 7 : 평일 확대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11. 1 : 운영시간 변경
	서초IC ~ 한남대교 남단	4.2	'08. 7 : 최초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11. 1 : 운영시간 변경
소 계	1개 구간	6.8	

라. 전 체 구 간

구 분	운영구간	거 리(km)
전일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21	41.6
시간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7	44.6
중앙버스전용차로	41	121.1
경부고속도로	1	6.8
합계	80	21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 BRT팀(2133-24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용어 순화어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권하는 말 (행정순화어)
1	웹진	뜻: 인터넷 상에서 발간되는 잡지 예: 웹진 창간호를 발행하다	누리잡지
2	가이드북	뜻: 특정 이벤트나 시설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담은 책이나 소책자	안내서, 지침서, 길잡이
3	CS (Consumer Satisfaction)	뜻: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는 경영방식 예: 공사 CS 비전 공모전	고객 만족
4	갱의실 (更衣室)	뜻 : 옷을 갈아입는 방 ※ 국립국어원: ‘갱의실(更衣室)’의 ‘更’자가 가진 두 가지의 음과 훈, 즉 ‘다시 갱, 고칠 갱’을 혼용하여 ‘갱의실’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사례이다. (표준어는 ‘경의실’)	갈아입는 방, 탈의실
5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뜻: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것 예: 이는 공사의 대표적인 CSR활동으로 꼽힌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6	RMS (Records Management System)	뜻: 기록관리시스템 예: 공공기록물 효율적 관리 위해 RMS 구축	기록 관리 체계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권하는 말 (행정순화어)
7	복싱데이 (Boxing Day)	뜻: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상자에 곡물 등을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하는 유럽의 전통에서 비롯된 단어 예: 스타트업 복싱데이 ※ 박싱데이(흔히 쓰는 오타)도 함께 순화	자선의 날
8	그린푸드존 (GREEN FOOD ZONE)	예: 그린푸드존 책임 구역제 지정·운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
9	월류	예: 관내 저수조 청소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지하저수조 월류로 인한 기계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함.	물 넘침, 무넘이
10	폴딩도어	뜻: 아코디언 주름과 같이 겹쳐서 여닫게 하는 문 예: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폴딩도어 등 설치 공사	접이문
11	핸드레일	예: 보행 힘든 어르신 위한 ‘핸드레일’ 설치	안전손잡이
12	EMS (emergency medical service)	예: 주 제 : ‘SAVE Seoul ; Systems for Action & Vision of EMS’	응급 의료 서비스
13	헤드랜턴	예: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난지생태습지원을 둘러보고 위장천막 안에서 가까이 다가온 조류를 관찰하거나 소리를 들어보면서 숨 막히는 순간을 직접 체험해 본다.	이마등
14	비상콜	예: 자동방송, 열차행선안내, 전기사계, 인터폰, 비상콜폰, 종합무선중계, 음향유도설비 이동통신 서비스설비	비상 호출
15	정류장 ID	예: 마을버스 정류장 ID부착	정류장 (고유) 번호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02-2133-64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8-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광진구 광장동 318-6 일원	-	증) 6,890	6,890	-	체육시설 지하 중복결정

나.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위치 : 광진구 광장동 318-6 일원 - 면적 : 6,890㎡	○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및 공공시설물 보관을 위한 공공시설물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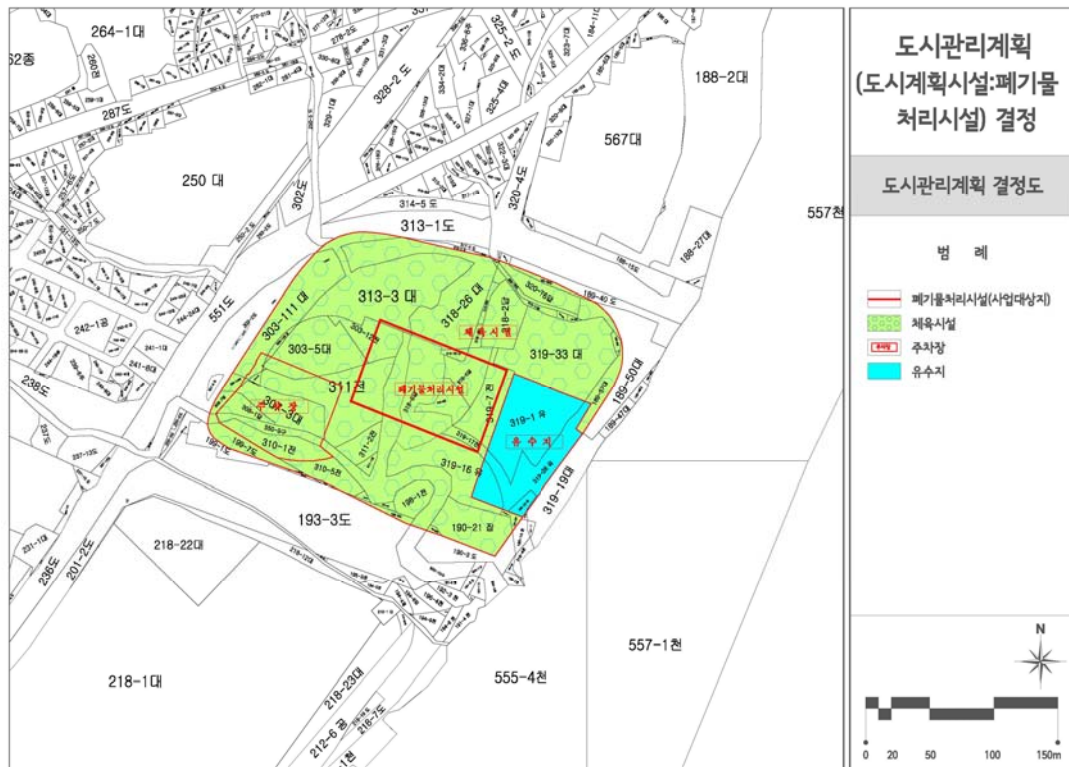
다.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 - 8407),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450 - 7685), 청소과(☎ 450-760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호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	증)29,883.7	29,883.7	

다. 지정사유

- 대상지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로서 자동차 특화산업지역이나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쇠퇴한 낙후산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또한, “2025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 2016.08.11.)”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대상지역과 “장안평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 2016.08.04.)”에서 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으로 적용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함
- 따라서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서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핵심거점시설인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29,883.7	29,883.7	100.0%	
획 지	-	증)29,883.7	29,883.7	100.0%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883.7	-	29,883.7	100.0%	
유통상업지역	29,883.7	-	29,883.7	100.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유통업무설비	-	성동구 용답동 234일대	29,883.7	감)29,883.7	0	서울특별시고시 제580호 (78.11.7)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통업무설비	유통업무설비 폐지	자동차 관련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지정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29,883.7	-	-	용답동 234 용답동 234-2	1	-	-	1	-	

(이하여백)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기준/허용 /상한)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도시환경정비구역	29,883.7	획지	29,883.7	응답동 234 일대	자동차 관련시설	60이하	400이하 /600이하 /-	130이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		건폐율		• 60%이하 (옥상녹화, 건축물 저층형태 준수시 저층부(8층이하)에 대해 최대 70%까지 완화)								
				구분	인센티브항목						인센티브량	
				옥상녹화	저층부 상부 옥상녹화 조성 : 건폐율 완화 이상 옥상녹화						70%이하	
				건축물 저층형태	건축물 저층 외관 및 형태 : 저층부 실내공개공지(개방공간) 조성							
		※구체적인 인센티브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용적률	기준 용적률	• 400%								
			허용 용적률	• 600%이하(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준수 : 20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량 = 400%+200%≤600%이하								
구분	인센티브항목						부여량					
의무	친환경개발						100%이하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80%이하					
	생활문화 인프라						10%이하					
	산업안정						20%이하					
	공익시설						30%이하					
보행가로 활성화						20%이하						
※구체적인 인센티브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a) ※a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높이	최고 130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자동차시장1길 : 5m, 자동차시장3길변 : 3m								
건축물 형태 및 디자인에 관한 계획		• 자동차산업의 핵심거점시설의 상징적 경관형성과 건축물 관리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위치 : 자동차시장1길 : 5m, 자동차시장3길변 : 3m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준용										
공공시설 등 부담계획		• 공공기여율 20% 이상 ※구체적인 공공기여계획은 계획설명서 참조										

※ 주된용도 :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인 용도[자동차관련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과 자동차 관련 판매·정비(튜닝 포함), 문화·전시·교육, 이동수단 등을 포함하는 용도]
 ※ 주된용도 외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단,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연면적의 30%이하(주차장 제외)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보전	대기질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조성	
	수 질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폐기물	•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소음진동	• 분산투입, 저소음장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재난방지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여 침수피해 대응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식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에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따름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	-	해당없음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규	-	-	용답동 234 용답동 234-2	29,883.7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파.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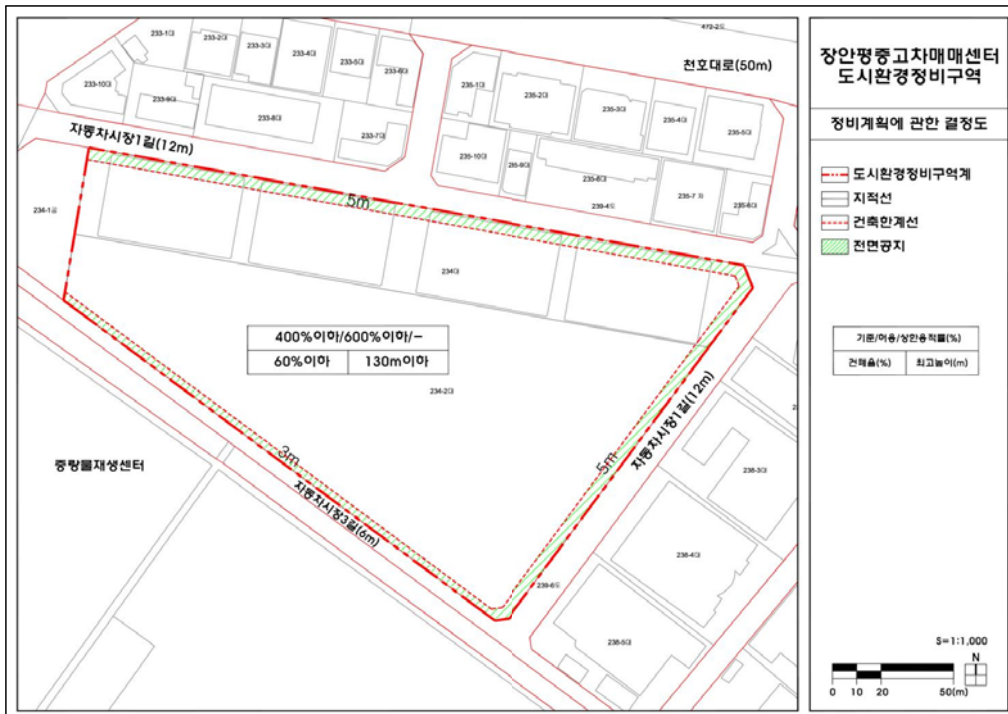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41) 및 성동구 도시재생과(☎ 2286-662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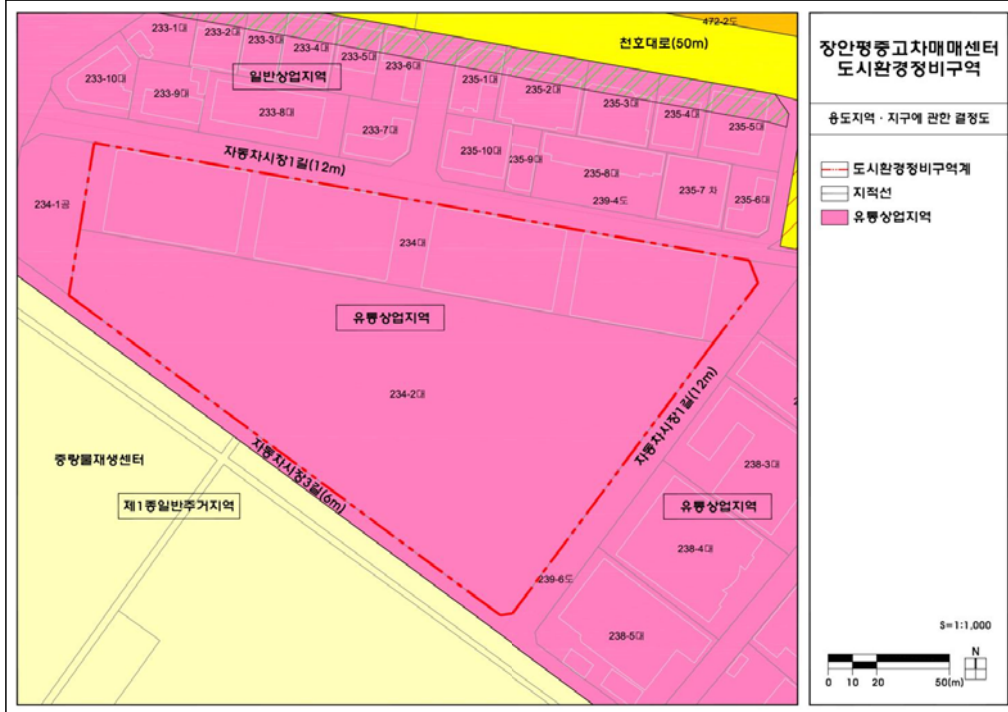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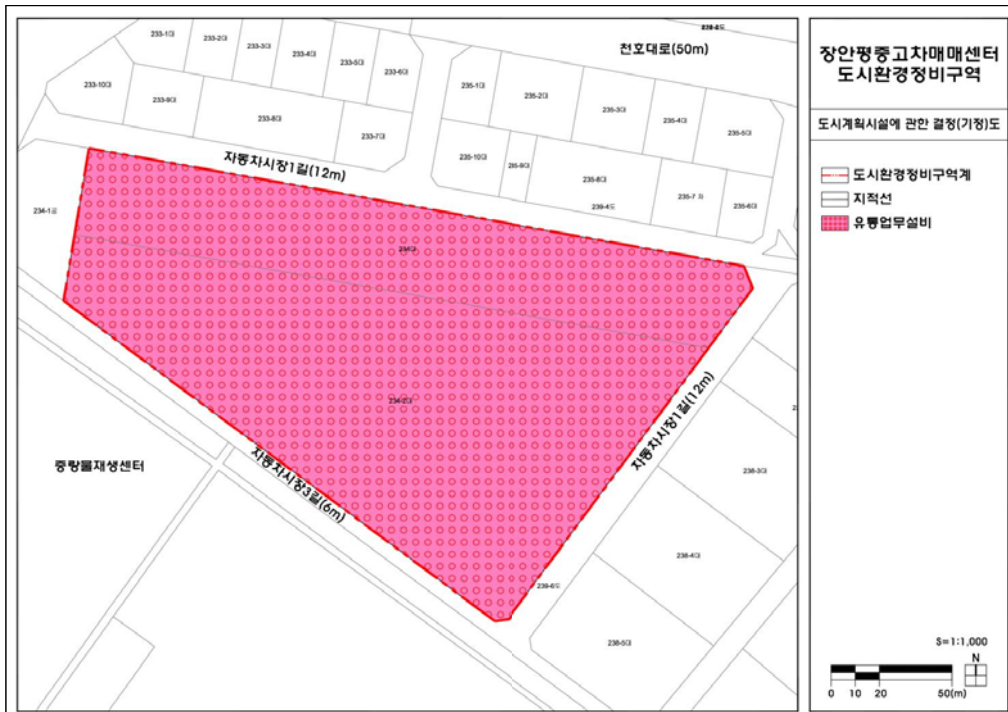
■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8호(2014.04.10.)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2017년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12.06.) 및 2017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2.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32, 140-33, 140-34
- 면 적 : 1,578.3㎡
- 결정취지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

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I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59,160	-	959,16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상업 지역	소 계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일반상업지역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강남구 삼성동 140-32, 140-33, 140-34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578.3	250	680	역세권 2030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 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 경)하고자 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III.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959,160	-	959,160 (1,578.3)	서고 제1994-189호 (1994.6.7)	

※ ()의 면적은 사업대상지(강남구 삼성동 140-32, 140-33, 140-34)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59,160	-	959,16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제3종일반주거지역	287,225	감) 1,578.3	285,646.7	29.8	
상업 지역	소 계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일반상업지역	671,935	증) 1,578.3	673,513.3	70.2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C5-3	-	1,578.3	-	
변 경	C5-9	삼성동 140-32, 140-33, 140-34	1,578.3	공동개발 지정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C5-3 → C5-9 공동개발 신규지정 - 기정 : - - 변경 : 삼성동 140-32, 140-33, 140-3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신규 지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정용도 (지상2층이상)	-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1)	신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불허용도 (지상2층미만)	D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상층 부속용도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및 제6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삼성동 140-32, 140-33, 140-34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를 신설함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적용 - 삼성동140-32, 140-33, 140-34 필지에 한함
용적률	- 기준용적률: 220%이하 - 허용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의 2배 이내 [400% 이하]^{주1)}	• 기본용적률: 680% 이하	
높 이	• 20m 이하[40m 이하] ^{주2)}	• 40m 이하	

주1) []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시

주2) []는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최고 40m까지 완화가능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50%이하 - 변경 : 60%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건폐율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용적률 220%이하, 허용용적률 250%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680%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용적률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높이 변경 - 기정 : 20m[40m 이하]이하 - 변경 : 40m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높이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 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 이상(394.58㎡ 이상)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삼성동140-32, 140-33, 140-34필지에 한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10%이상 ~ 20% 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의무)		
	주거	주거비율	• 80% 초과 90% 이하		
		공공:준공공	• 25% : 75%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준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 11. 16.) 준용

4) 공공기여 계획 : 신설

구 분	공공기여율	계 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의 25% 이상 (394.58㎡이상)	25.07% (395.73㎡)	• 삼성동140-32, 140-33, 140-34필지에 한함 • 공공기여계획 면적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로 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 11. 16.) 3-3-1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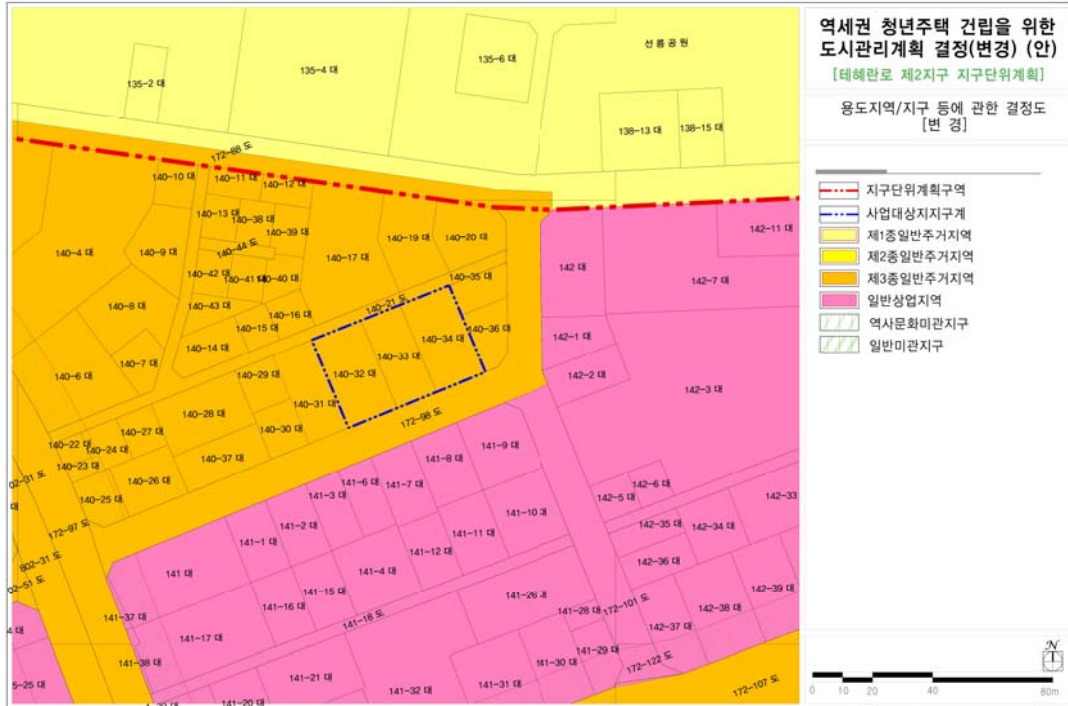
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02-2133-7058)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1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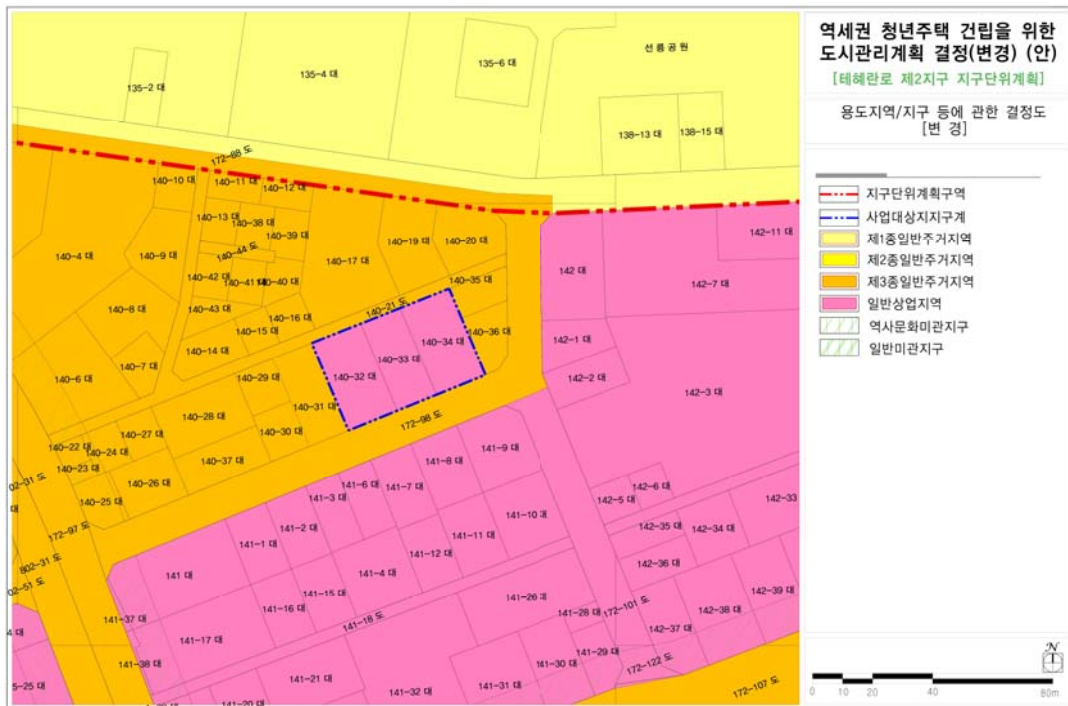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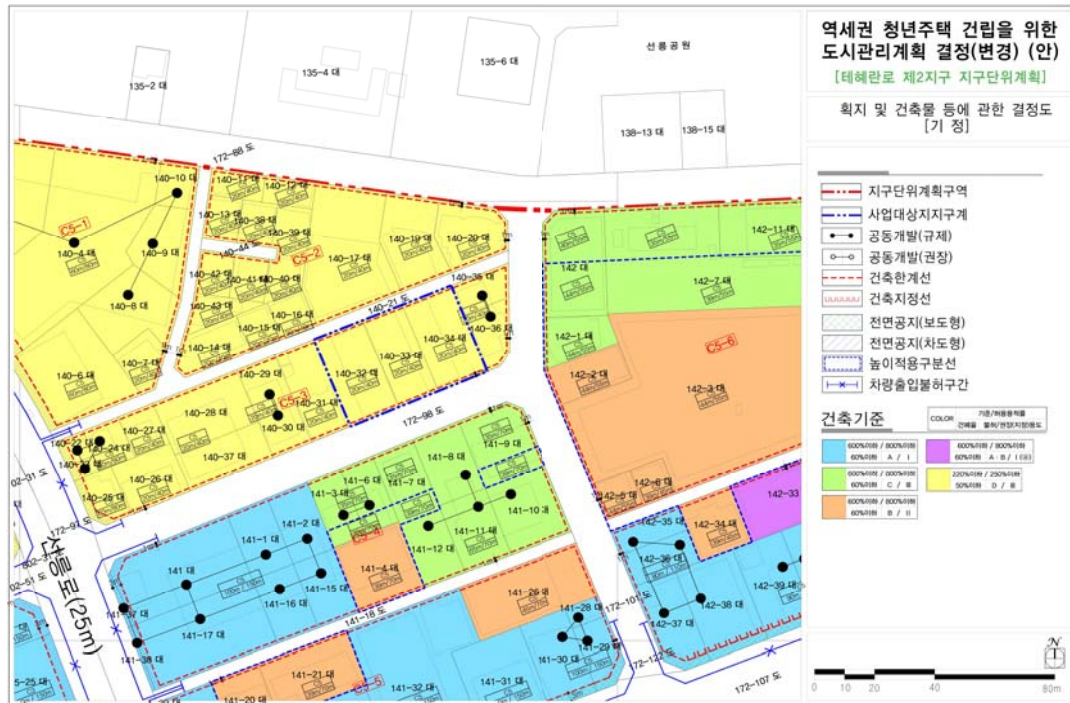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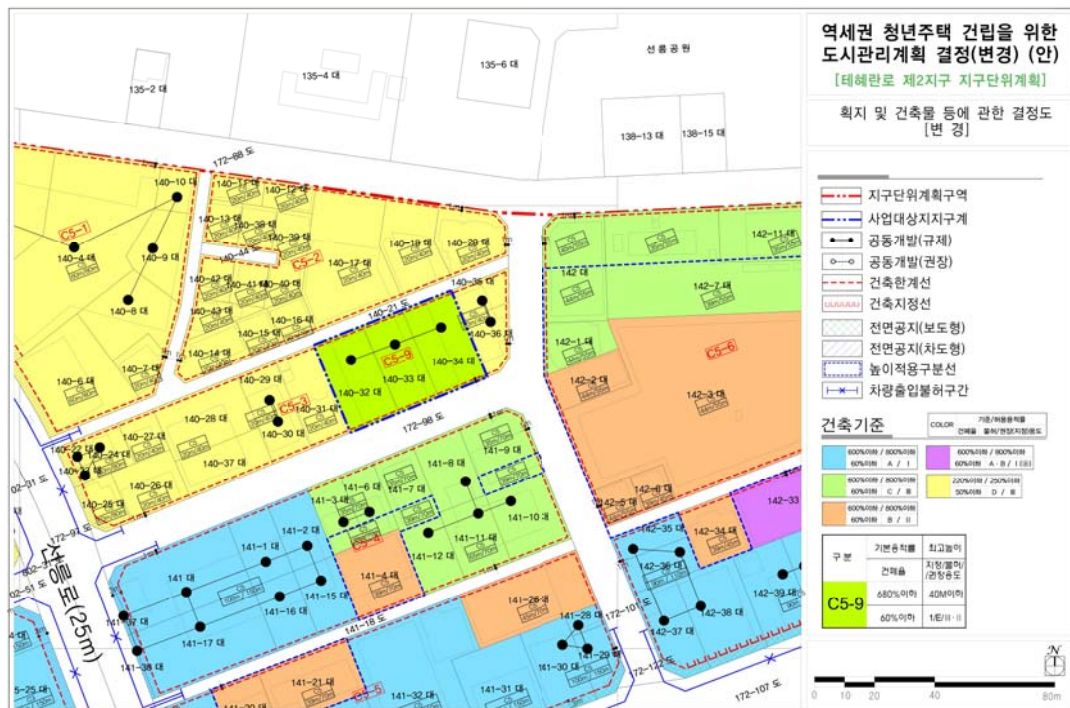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호

2017년도 제18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7. 12. 22.(금)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9건 12작품 (조각 10, 미디어 2)
 라. 심의결과 : 승인 6작품, 부결 6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1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양천구 롯데캐슬마에스트로	조각	빛의 숲		○	작품이 다소 평이하고 유사작품이 많으며, 가변설치의 개념이 모호함
2	강남구 드림하이 오피스텔	조각	행복한 발걸음		○	작품 조형요소의 부조화, 컨셉이 단순해 보이며, 유사요소가 많음
3-1	성북구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조각	꿈의 오케스트라 (welcome 연주회)		○	배치, 설치 환경의 부조화, 설치방안의 제고 요망
3-2		조각	누군가를 위한 선물 들		○	가격과다, 요소의 컨셉이 단순해 보이는 측면이 있음
3-3		조각	illusion-family		○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4	중구 노보텔 동대문	미디어	Human Hashtag	○		
5	양천구 민간임대주택복합시설	미디어	Don't know mind #2	조건부 ○		관리방안 제고 요망
6	강서구 우성에스비타워2	조각	꽃피는 봄이오면 II		○	가격과다, 형태가 단순하여 조형적으로 재미 부족
7-1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즈	조각	숲을 머금다	조건부 ○		작품 설치시 설치 위치의 하부구조를 고려한 설계 여부의 확인 및 작품의 하중 고려 필요
7-2		조각	Resilience-Nature	○		숲 형태의 세련도를 높이고 완성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단순화가 다소 지루한 측면이 있음 (권고사항)
8	동작구 노량진 주상복합	조각	어머니의 보석상자	○		
9	동작구 사당래미안로이파크	조각	SPACE 2017-숲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변경)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변경)
						사용기간 (변경)
2017-118	(사)용산구의정회 (대표 : 한성방)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81길 14	-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재 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식품지원	50 (현금)	전국	'18.1.1 ~ '18.12.31
						'18.2.1 ~ '18.12.31
2017-119	(사)웁글로벌코리아 (대표 : 김종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13	- 공적개발원조 지원, 해외봉사단 파견 및 해외 긴급구호 등	900 (현금및물품)	전국	'18.1.1 ~ '18.12.31
						'18.1.1 ~ '19.12.31
2017-120	(사)홀리비전 (대표 : 최명우)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1	- 취약계층 청소년 학 비지원 및 합창반 운 영지원	10.6 (현금)	전국	'18.1.1 ~ '18.12.31
						'18.1.1 ~ '19.12.31
2017-121	(사)시민 (대표 : 임현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 익 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등	990 (현금)	전국	'18.1.1 ~ '18.12.31
						'18.1.1 ~ '19.12.31
2017-122	(재)한국의료지원재 단 (대표 : 유승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물품 지원으로 보 건의료 증진에 기여	300 (현금및물품)	전국	'18.1.1 ~ '18.12.31
						'18.1.1 ~ '19.3.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변경)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변경)
						사용기간 (변경)
2016-11 3-1	(재)한국의료지원재단 (대표 : 유승흠)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물품 지원으로 보 건의료 증진에 기여	200 (290)	국내외	'17.1.1 ~ '17.12.31
						'17.1.1 ~ '18.3.31
2017-33 -1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 (대표 : 정광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 안중근의 정의, 민족, 평 화정신 등 기념 사업 전개	250	전국	'17.3.9 ~ '17.12.31 ('17.3.9~'18.3.8)
						'17.3.9 ~ '17.12.31 ('17.3.9~'18.3.8)
2017-10 1-1	동성애동성혼개헌반 대 국민연합 (대표 : 김계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03	- 왜곡된 성윤리 및 성인식 을 바로잡고 결혼에 대 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왜곡된 성윤리 및 성인 식을 바로잡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 립 및 법안 연구와 자문 의뢰	500	전국	'17.10.30 ~ '18.8.31
						'17.10.30 ~ '19.10.29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다회장(多繪匠)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다회장(多繪匠)

- 다회(多繪)는 여러 겹의 실을 합사하여 끈목을 짜는 것으로, 복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띠와 유소(流蘇), 여러 종류의 노리개·주머니끈 등을 맺는데 사용되는 전통기술임.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공장조(工匠條)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로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공예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회장(多繪匠)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136-70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동진L&D	서울 후-제493호	이두희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2층 (천호동) (02-757-0364)	소재지 (17.11.24.)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92, 6층 (능동, 광명빌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7, 2층 (천호동)
(주)에이스라이프	서울 후-제425호	정영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11호(가산동,코오롱 디지털타워에스텐) (1566-5353)	소재지 (17.11.27.)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106~1107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11호(가산동,코오롱 디지털타워에스텐)
세계평화대리점	서울 후-제609호	유치순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17길 37, 202호 (방학동, 상일맨션) (02-955-3627)	소재지 (17.12.03.)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3가길 69, (방학동)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17길 37, 202호 (방학동, 상일맨션)
열매대리점	서울 후-제435호	김인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36길 12, 1층(명일동) (02-442-4232)	상 호 (17.12.05.)	열매상사	열매대리점
				전 화	02-472-4232	02-442-4232
				소재지 (17.12.05.)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51길 58, 102호(성내동)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36길 12, 1층(명일동)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아모레 퍼시픽	서울 후- 제3호	심상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한강로2가) (02-6040-5011)	소재지 (’17.12.01.)	서울시 중구 청계천 100, (수표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한강로2가)
알즈너 날개대리점	서울 후- 제664호	김종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80길 19, B동 201호(수유동) (010-5545-3895)	소재지 (’17.12.06.)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14길 31, 1층(면목동)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80길 19, B동 201호(수유동)

2)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스피나월드	서울- 제788호	송진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1230호(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1599-1347)	소재지 (’17.11.2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8, 11층(역삼동, 케이앤아이타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1230호(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주)제이놀 글로벌	서울- 제756호	김상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5, 4층, 7층(역삼동, 아승빌딩) (02-6349-4483)	상 호 (’17.12.04)	(주)헬씨라이프	(주)제이놀글로벌
				소재지 (’17.12.0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4길 502호, (방배동, 광진빌딩)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5, 4층, 7층(역삼동, 아승빌딩)

3)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마임문정지사	서울 후- 제591호	안보영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4길 18, 2층(문정동) (02-408-8818)	’17.12.11.	개인사정
마임 장안동부지사	서울 후- 제92호	조숙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3길 11, 3층(장안동) (02-2242-7456)	’17.11.16.	영업부진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마임 (봉천동부)	서울 후- 제249호	최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91, 309호(봉천동) (02-875-9266)	'17.12.14.	영업부진
마임 (남현지사)	서울 후- 제279호	김삼순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45, 2층(사당동) (02-588-0336)	'17.12.20.	영업부진
히트	서울 후- 제678호	전순심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5-1, (길음동) (010-2327-7662)	'17.12.26.	사업부진
아모레 동국특약점	서울 후- 제205호	최우철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92-1, 201호(동교동, 영호빌딩) (02-333-3046)	'17.12.29.	개인사정
마임강동지사	서울 후- 제304호	이정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 41, (풍납동) (02-478-5007)	'17.12.26.	개인사정
알즈너 프라임대리점	서울 후- 제683호	고낙영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38, 1층(장위동) (010-3734-5595)	'17.12.31.	개인사정
조은생활(주)	서울 후- 제673호	김정온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3, 202호(잠실동, 위너스빌딩) (070-5014-0887)	'17.12.31.	방문판매 전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홍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일시 : 2017-08-12 01:57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북98사4840(트레일러)차량 총중량 28톤 초과	처분일 : 2017. 9. 25. 과태료 : 15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11. 30. 독촉일 : 2017. 12. 15.
방성배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일시 : 2017-08-04 16:09 장소 : 천호대교 내용 : 강원98바1232(트레일러)차량 총중량 6.85톤 초과	처분일 : 2017. 9. 25. 과태료 : 8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11. 30. 독촉일 : 2017. 12. 1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1. 31.
 -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112330	알트론(주) 권은영	서울 금천구 벚꽃로12길15(독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기술계3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2	112495	(주)동서에이브이 이군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6길99-5(신내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3	112164	우리정보네트웍스(주) 문길영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10,1106호(수서 동,수서현대벤처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4	202393	(주)한국스마트시티 박명선	서울 구로구 경인로661,104동 601호(신도림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5	110642	(주)옴니포스텍 최명찬 허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2,201호(가락동,광진빌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6	200400	(주)민우이앤씨 민형기	서울 마포구 연남로1길 67, 2층(연남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7	200500	(주)다성이앤씨 김현권	서울 광진구 자양로 6길12, 3층(자양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8	202291	(주)케이엘매트릭스 이승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704,705호(영등포동8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3개월 (2017.12.11.~ 2018.03.10.)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공고기간 : 2018.03.10.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주소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8. 1. 11.(목) ~ 2018. 1. 24.(수)

2. 공고내용

업 체 명 (대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거람종합건설(주) (정재영)	건축공사업 01-3766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 3층 302호	○사업자 등록 폐업 등록번호: 543-81-00258 폐업일자 : 2017.10.31.	등록말소 (2018.1.25.)	건설산업 기본법 83조 제12호

3.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고하였습니다.

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청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명의, 등록증 등 대여행위 위반, 영업정지처분 위반, 부실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02)2133-82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윤병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일시 : 2017-11-14 07:23 장소 : 장안교앞 내용 : 서울02거7086(포크레인)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7.12.26.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2. 28.
 -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36호

도시계획시설(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7호('15.07.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4호('15.09.10.)로 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7호('15.10.29.)로 도시계획시설(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 “(가칭)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시설명칭 :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칭 : (가칭)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명칭 : 문화비축기지)

다. 사업면적 및 내용

- 면적 : 101,510㎡
- 내용 :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원조성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마. 사업기간 : 2015. 10. 29. ~ 2017. 12. 31.

바. 관계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비치 ☎ 02-376-87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1	111447	영동지이엔티(주) 신강식	서울 금천구 벚꽃로234, 804호(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효력상실 및 기능계1인, 기술계3인 부족)	등록취소 전청문통지서 2018.01.29. (10:00~12:00)

당 사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2	310412	(주)수로텍 정성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504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에스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능계1인,기술계1인 부족)	영업정지1개월 (2018.01.01.~ 2018.01.31.)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3. 공고기간 : 2018.01.29.(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
2018.01.31.(영업정지 처분)
4.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4호**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재열람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정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 2017년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7.12.28) 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가. 재열람사유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단절토지 10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되,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하지 않음.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 용도구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149,597,339	감) 15,982	149,581,357	

※ 기정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7호(2017.12.14.)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 02-2133-8331, 8332) 및 각 구청 도시계획과

- 마.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바.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현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118번길 *** (석남동)	일시: 2017-10-24 16:01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7289 내용: 제한 축하중 1.83t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6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연번	상 호	허가번호	소 재 지	대표자
1	㈜강서해인청과	2강1023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박*태

2. 처분의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2017. 8~10월)

4. 처분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5. 처 분 일 : 2017. 12. 28.

6. 이의제기 안내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7.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

(허가취소 절차관련 문의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관리팀 ☎2640-6056)

8. 기타 문의처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2133-538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7호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서울120061	(주)더시크릿캐슬	곽용두	강남구 봉은사로 312, 203호 (역삼동, 역삼하나빌)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록취소
2	서울120114	(주)경산구조안전 연구소	이상철 (등기상: 김준배)	강남구 논현로12길 33, 제2층 201호 (개포동) (등기상 : 송파구 충민로 5, 제10층 제디 1007호(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록취소
3	서울140021	(주)달봉씨오엔	김용구	강남구 개포로31길 8, 2층 (개포동, 푸르지오디아뜨)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31.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 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 : 토지관리과, 담당자 : 허은정,
전자우편 : hej629@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2층(서소문동)
(☎ 02-2133-4684~5, FAX 02-768-8920)
- 일 시 : 2018년 2월 8일(목)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영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변경등록 및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사항 -

대상 기간 : 2017.10.01. ~ 2017.12.31. 23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71	사단법인 국제한인간 호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17 (염리동) 3층	김의숙	2017-10-13	○재외교포 간호 지도자들의 네트 워크 구축 및 한국 간호 지도자들 과의 학술 및 연구 협력 체계 구 축 ○한국 간호사의 해외 학위 및 전문 훈련과정의 장학 지원 ○한 국 간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역량개발 훈련 ○국제 보건 및 국제협력 사업의 개발 및 지원	기획조정실 국제 교류담당관
2170	더 라이트 핸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가산동, 월드메르디앙1차) 1203호	조갑주	2017-10-13	○국내외 지역사회 복지지원 및 장학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원조 사업 ○연구용역 및 긴급 구호사 업	기획조정실 국제 교류담당관
2169	행복한이웃1 5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8길 45 (구로동) 1층	윤석주	2017-10-13	○어르신 문화, 정서 지원사업(사 랑방, 나들이, 영화보기) ○어르신 물품 지원사업(반찬, 간식, 외팔, 치킨배달) ○어르신 건강지원 사 업(가정방문, 병원 이용 안내서비 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사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172	(사)환경보호 국민운동본 부 관악을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6길 27 (신림동, 신림중앙시장) 2층 다-1호	김태일	2017-10-16	○환경분야 연구조사, 학술회의 및 환경보호 활동, 환경 감시 ○ 계몽 및 환경교육(저탄소 녹색 성 장 미술, 포스터, 만화, 전국대회 개최) ○공기질 검사 및 계몽활동 (도립천 수질감시, 세차장 폐수시 설) 등 환경보호 자원봉사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73	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역삼동, 비전타워) B1층	김수미	2017-10-17	○체계화된 다양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표준화 사업 ○피트니스 생활체육 전문가 양성 ○피트니스대회 시설의 규격 및 경기용품의 공인인증 제도화 ○국내외 피트니스 관련 대회와 행사 주관, 주최 및 후원 ○저소득층자녀 장학사업 등 후원활동 지원 ○청소년 체육활동 재능기부 활동 ○피트니스 전문가 진로희망 멘토링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74	착한청년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동2가, 아이템플) 509호	윤관식	2017-10-20	○취약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대청소 후원활동 ○사회복지 모금행사 후원활동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175	은평마을예술창작소별별공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26 (갈현동) 1층	선경희	2017-10-25	○주민 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행사기획 및 운영 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 ○문화예술 매체발간사업 ○유관단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본 단체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제협력 사업 ○본 단체의 목적과 부합하는 위수탁사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77	새롬워크게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한국노총) 609호	박현수	2017-10-27	○구인 구직 알선과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사업 ○직업능력, 평생 교육 지원사업 ○노동문제 상담 지원사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176	서울패밀리합창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20 (이문동) 2층	이동원	2017-10-27	○합창을 통한 문화 발전 기여 서비스 ○새로운 창작음악 제작서비스 ○소외계층에게 합창을 통한 정서함양 서비스 ○합창 공연을 위한 음반제작 및 유통 서비스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7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서승희	2017-11-01	○피해자 지원 ○모니터링 및 자료분석 ○법제화 ○홍보 ○학술연구 ○교육 ○인권진흥 ○출판국내외교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79	국제라이온 스협회 354-C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55 (장안동) 3층	강운성	2017-11-02	OLCIF기금모금 및 기탁 ○국내외 저소득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봉사사업 ○공익을 위한 시설물 지원 사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181	강서다솔장 애인자립생 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동, 가양5단지아파트) 9106호	최명애	2017-11-22	○자립 생활의 이념 보급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 를 위한 사업 ○동료 상담가 교육 및 파견사업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정보의 제공과 의뢰사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180	국제기후종 교시민(ICE)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7 (충정로2가) 석당빌딩 2층	이정배	2017-11-22	○인권과 커뮤니티 기반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사업 ○기후변화 공동 대응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적, 지 역적 네트워크 사업 ○기후 변화와 생태 위기대응 역량개발 사업 등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182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8 (한강로2가) 2층	임수정	2017-11-2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184	대한직장인 체육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71 (삼성동) 유진빌딩 4층	어명수	2017-11-24	○전국 직장 스포츠클럽 활동지원 ○각 종목별 직장 스포츠클럽 리 그 및 각종 공식대회 개최 ○전국 직장동호인 1인1기 스포츠 참여운 동 전개 ○각종 직장스포츠 전문 지도자 및 심판 양성교육 ○직장 동호인 간 친선교류촉진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83	한국어머니 배구연맹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지층 27호	박점희	2017-11-24	○카네이션배 등 각종 어머니 배 구대회의 개최 및 운영 ○국제어 머니 배구대회 개최 및 참여를 통 한 국제교류 ○어머니 배구동호인 저변확대, 활성화 ○어머니 배구 지도자 양성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85	한국중소상 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영등포동) 201호	인태연	2017-11-27	○공정 경제와 골목 상권 살리기 정책개발 및 제도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중소기업단체 교육지원 ○민주적 상인교육 및 상인 리더 십강화 프로그램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2186	평화나눔재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9길 19 (명륜4가) 한국기독교교회관 1009호	윤현기	2017-12-01	○평화시민대학 운영 ○평화봉사 단 운영 ○통일박람회 참여 ○평 화나눔 바자회 개최 ○평화나눔 학술제 개최	행정국 자치행정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87	한국불교상 담학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8 (독산동, 서울불교대학원대 학교) 301호	백경임	2017-12-07	○학술적 임상적 연구를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사례발표 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88	마포나눔봉 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 28 (합정동) 101호	김동수	2017-12-18	○지역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및 의식주 해결노력을 위한 자원봉사 ○어르신 관련 지역 재능기부 및 일자리 창출사업 ○어르신들의 문화체험 및 복지 관련 사업 지원 ○찾아가는 나눔 봉사회 사업 ○지역장애인들의 필 요에 맞는 목적사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189	아시아미디 어컬처팩토 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35 (문래동2가, 성문빌딩) 3층	정소희	2017-12-19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가, 아티 스트들의 활동 근거지 마련과 활 동 지원 ○이주민이 향유할 수 있 는 문화예술공간, 교류의 장 마련 ○이주, 다문화 등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문화 콘텐츠 생산 ○ 새로운 이주민 문화예술 기획자· 아티스트 양성 ○예술·문화 활동 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민 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통의 확장 ○이주민과 이주민예술가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90	드림메이커 (DREAM MAKE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7 (창천동) 지하2층 씨티비즈니스센터 107호	주상원	2017-12-22	○청소년, 청년, 성인 대상 자아탐 색 작업 ○청년 대상 강연 사업 ○청년 대상 네트워킹 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91	대한당뇨병 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 엘지여의도에클라 트) 1124호	김광훈	2017-12-26	○당뇨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 책 및 제도개선 사업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연구사업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한 비만, 대사증 후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지원사 업 ○당뇨병 지식 및 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 력 사업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 한 홍보사업 및 관련 출판물 제작 및 배포사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

대상 기간 : 2017.10.01. ~ 2017.12.31. 15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386	한국국제창작다례 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4길 14 (평창동) 지하1층	김복일	2017-12-19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889	한국미술학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25 (불광동) 지하1층	임종기	2017-10-17	대표자,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942	강북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번동, 가든타워빌딩) 1119호	안해영	2017-12-11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963	(사)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02호	김자동	2017-12-07	소재지 변경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216	인문학카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41 (잠실동, 해유빌딩) 지하1층	이관호	2017-10-11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326	재단법인 환경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서소문동, 동화빌딩) 3층	최열	2017-11-03	대표자 변경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470	통일한국포럼 (구 새터민종합복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여의도동, 맨하탄21리빙텔) 717호	손명화	2017-12-20	단체명칭, 소재지 변경	행정국 자치행정과
1619	사단법인 느헤미야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6길 37 (양재동) 세양빌딩 3층	전존	2017-12-21	소재지 변경	행정국 자치행정과
1754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여의도동, 성우빌딩) 1001호	이상근	2017-12-15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773	착한사람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동2가, 아이템플) 509호	서태호	2017-11-10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884	해외주민운동연대 (구 해외주민운동을 위한 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3 0길29-6, (사당동, 반석빌딩) 4층	강인남	2017-10-20	단체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896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구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20-6 (신길동) 서울여성플라자 4 층 NGO돌움터	조현임	2017-11-08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1997	중국동포지원센터 (구 C-K여성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II) 809호	박옥선	2017-11-16	단체명칭, 소재지 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71	세계교육문화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4 (오류동, SC메디칼센터) 8층	김종병	2017-12-26	소재지 변경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105	멋진 사람들 (구 착한홀라걸)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성수동2가, 아이템플) 509호	배희숙	2017-10-17	단체명칭, 소재지 변경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사항 -

대상 기간 : 2017.10.01. ~ 2017.12.31. 2개 단체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관부서	말소일	말소사유
637	5.18 서울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 (충정로3가) 2층	최병진	2005-02-15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7-10-20	신청에 의한 말소
1097	사단법인 예코맘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로 130 (양재동, 한도빌딩) 6층	하지원	2009-12-2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12-26	신청에 의한 말소 (중앙부처 등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0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1	(재)한국여성재단 (대표 : 이혜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 남녀가 협력하는 성 평등 사회조성 및 사회 적 약자 권익신장과 보 건복지증진	600 (현금)	전국	'18.1.4 ~ '18.12.31
						'18.1.4 ~ '19.12.31
2018-2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 조혜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 동물학대방지, 동물 관련 인식개선 등 동물 복지 증진 캠페인과 피 학대동물 구조 보호	1,000 (현금및물품)	전국	'18.1.4 ~ '18.12.31
						'18.1.4 ~ '19.12.31
2018-3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 임순례)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 유기동물 구조 및 지 원, 교육, 동물보호 와 동물권 소송센터 운영	994 (현금및물품)	전국	'18.1.4 ~ '18.12.31
						'18.1.4 ~ '19.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14.3.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9호('16.6.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가칭)세운 문화공원 조성사업(세운상가 재생사업)」에 대하여
2. 공원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완료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3가 143-1 주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가칭)세운 문화공원 조성사업
 라. 사업의 규모 : 문화공원 A=3,748.3㎡
 마.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주소 :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바. 사업의 기간 : 2016.6.16. ~ 2017.12.25
 사. 관계도서 : 생략(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강동구고시 제2017-220호(2017.12.2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고면 고시된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보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계획
- 1) 사업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보도) 확장
 -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1번지 일원

- 3) 규 모 : 보도확장 폭 1.5→5m, 연장 87m
완화차로 폭 26.5→30m, 연장 370m
-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기 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89)

용 지 조 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1-1	전	878	122.9	이영수 (이인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차 204동 1102호	-	-	-	
					이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251 성북버들자이2차아파트 208동 1703호	-	-	-	
					이중원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34 롯데우성아파트 107동 802호	-	-	-	
					이재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109동 701호	-	-	-	
2	1-4	대	210	80.1	이영수 (이인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차 204동 1102호	-	-	-	
					이의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251 성북버들자이2차아파트 208동 1703호	-	-	-	
					이중원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34 롯데우성아파트 107동 802호	-	-	-	
					이재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19 아크로리버파크 109동 701호	-	-	-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2	전	679	51.6	김재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27 미사강변도시18단지 180동 204호	영동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 도곡지점	근저 당권	
4	599-2	도로	60	0.1	공	강동구	-	-	-	
5	599-5	도로	63	13.4	공	강동구	-	-	-	
6	6-18	도로	994	994	공	강동구	-	-	-	
7	6-2	대	66,234	28.2	한국보훈 복지공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	-	-	
8	1-2	도로	1,931	7.5	공	서울특별시	-	-	-	
9	3-8	도로	38	3.1	공	서울특별시	-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6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그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여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청원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청원경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변경

-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의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이관(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1조~제14조, 제17조, 제27조, 제38조~제42조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의 충직, 정원관리, 인사관리, 교육, 신분, 표창 등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적용 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하여 이관
- 다.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규정 명확화(안 26조)
- 「청원경찰법」 제 3조(청원경찰 직무)에 근거하여 경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 명확화
- 라. 퇴직준비휴가 실시 여부 재량 부여(안 29조)
- 퇴직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1개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재량을 부여함

3. 의견제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2133-5568, FAX 2133-0773, E-mail: phw050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8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변경)
						사용기간 (변경)
2018-4	(사)부스려기사랑 나눔회 (대표 : 강명순)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16	- 국내 취약계층인 빈곤 아동과 그 가정에 생활, 교육, 문화, 의료 등 지원	500 (천원)	전국	'18.1.5 ~ '18.12.31
						'18.1.5 ~ '19.12.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변경)	모집 지역	모집기간 (변경)
						사용기간 (변경)
2018-5	(사)굿피플인터 내셔널 (대표 : 이영훈)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0	-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질병예 방과 치료, 아동보호, 빈곤퇴치 등 구호활동	990 (현금 및 물품)	전국	'18.1.5 ~ '18.12.31
						'18.1.5 ~ '19.12.31
2018-6	(재)삼성꿈장학 재단 (대표 : 송석구)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20 (현금)	전국	'18.1.11 ~ '18.12.26
						'18.12.27 ~ '20.12.26
2017-3- 1	(재)바보의나눔 (대표 : 손희송)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 국내외 소외계층 및 재난피해 긴 급 지원 등	900 (현금) (998)	전국	'17.1.17 ~ '17.12.31 ('17.1.17 ~ '18.1.16)
						'17.1.17 ~ '19.1.16
2017-36 -1	(재)한국실명예방 재단 (대표 : 이태영)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06	- 저소득층에게 눈수술비를 지원하 여 자활의 기회 제공	100 (현금 및 물품)	전국	'17.3.17 ~ '17.12.31
						'17.3.17 ~ '17.12.31 ('17.3.17 ~ '18.3.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2020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을 변경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2018.1.11. ~ 1.25.(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및 관할 구청 도시계획부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2	59,119	1,482,745	14	27,783	650,165	4	14,848	409,081	4	16,488	423,500
대로	10	39,753	1,117,725	3	8,860	291,125	3	14,405	403,100	4	16,488	423,500
중로	12	19,366	365,020	11	18,923	359,040	1	443	5,981	-	-	-
소로	-	-	-	-	-	-	-	-	-	-	-	-

※ 당초 20개 노선이었으나, 노선분리 및 폐지 등으로 인하여 총 22개 노선으로 분류

■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	35	-	1,400	신설동 제1호광장	제기동	일반도로	-	총고722(36.12.26)	왕산로(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1	1	29~35	보조 간선 도로	1,400	신설동 제1호광장	제기동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	5,910	성동구 행당동 (39호광장)	자양동강변	-	-	건고 제738호 (63.12.24)	왕십리로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1	16	30~35	주간선 도로	5,910	성동구 행당동 (39호광장)	자양동강변				
기정	대로	1	53	35~37	주간선 도로	1,550	문래동광장	신길동광장	일반도로	-	건고 제393호 (78.12.7)	도림로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1	53	33~37	주간선 도로	1,550	문래동광장	신길동광장	일반도로	-		
기정	대로	2	7	30	주간선 도로	1,500	서교동 (대로2-8)	성산동 (중로1-42)	일반도로	-	총고722 (36.12.26)	월드컵 북로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2	7	30	주간선 도로	1,500	서교동 (대로2-8)	성산동 (중로1-4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2	24	30	-	2,983	우이동	방학동	-	-	건고 제2126호 (66.1.8)	방학로
변경	대로	2	24	10~30	보조간 선도로	2,801	우이동 4-2	방학사거리				
기정	대로	2	25	30~40	주간선 도로	10,000	성동교 남단	대로2-26 교점	일반도로	-	내고23 (52.3.25)	아차산로
변경	대로	2	25	20~40	주간선 도로	10,000	성동교 남단	대로2-26 교점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57	25	-	1,820	수유동 (대3-40교점)	우이동 207-7	일반도로	-	건고2493 (66.6.21)	삼양로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3	57	25	-	1,820	수유동 (대3-40교점)	우이동 207-7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69	25~36	보조간 선도로	5,973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암사동 (중2-134)	일반도로	-	건고 제198호 (71.4.7)	동남로
변경	대로	3	69	25	보조간 선도로	5,381	송파구 오금동 (대2-67)	강동구 고덕동 302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35	25~29	보조간 선도로	7,750	삼선교	불광동 (대1-12)	일반도로	-	서고 제666호 (78.12.18)	성북로
변경	대로	3	135	25~29	보조간 선도로	2,380	삼선교	삼청터널	일반도로	-		
변경	대로	3	228	25~29	보조간 선도로	3,040	세검정광장 (신영동 삼거리)	불광동 (대1-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3	20	보조간 선도로	1,260	용산구 용산 중·고교앞	용산동1가 이태원로	일반도로	-	총고722 (36.12.26)	후암로
변경	중로	2	519	12~15	보조간 선도로	443	용산구 용산 중·고교앞	용산동2가 2-11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2	20	-	6,380	성수동2가 (대2-25)	휘경동 (대3-40)	일반도로	-	건고 제738호 (63.12.24)	가람길 ~ 성수일로
변경	중로	1	52	15~20	집산 도로	3,825	성동구 용답동 240-2	휘경동 (대3-4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83	20	-	1,800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	-	서고 제387호 (78.8.3)	광운로 12길 ~마들로 1길
변경	중로	1	83	20	집산 도로	212	노원구 월계동 402-1	노원구 월계동 403-1	-	-		
변경	중로	1	469	20~28	집산 도로	1,208	노원구 월계동 152-6	노원구 공릉동 441-23	-	-		
기정	중로	1	135	20~27	보조간선 도로	5,730	반포대교	응봉동 9-5	일반도로	-	건고 제143호 (70.3.26)	응봉로, 고산자로
변경	중로	1	135	20~27	보조간선 도로	4,545	반포대교	용비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47	20	-	220	월계동 (중1-83)	성북역앞	-	-	건고 제133호 (74.5.9)	석계로
변경	중로	1	147	10~20	집산 도로	596	노원구 월계동 70-5	광운대역	-	-		
기정	중로	1	149	20	-	3,620	중로1-135 (응봉동 234-1)	마장교 (대2-38)	일반도로	-	건고 제201호 (75.12.17)	살곶이길
변경	중로	1	149	20	보조간선 도로	3,632	중로1-135 (응봉동 234-1)	마장교 (대2-3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75	20~23	집산도로	2,800	세종로 82-14	충신동 27-64	일반도로	-	서고 제39호 (78.2.10)	돈화문로 김상옥로
변경	중로	1	175	15~20	집산 도로	1,595	종로구 인사동 25-3	충신동 27-64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470	20~23	집산 도로	697	세종로 82-14	종로구 관훈동 20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98	20	-	1,370	석관동106	월계동152 (중1-83)	-	-	서고 제355호 (81.9.29)	한천로 66길
변경	중로	1	198	20	집산 도로	467	석계역 교차로	석관고등 학교 로터리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07	20	-	410	서빙고동 (광-69)	서빙고동 (중1-135)	일반도로	-	서고 제315호 (79.7.12)	이촌로
변경	중로	1	207	20	집산 도로	123	용산동6가 69-168	서빙고동 271-10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393	20~26	보조간선 도로	425	구로구 개봉동 254-16	개봉동 193-1	일반도로	-	서고 제1998 -94호 (98.3.26)	개봉로 2길
변경	중로	1	393	12~20	보조간선 도로	425	구로구 개봉동 254-16	개봉동 193-1	일반도로	-		
폐지	광로	2	24-1	40	-	550	방화동 강변 (대2-41)	신도면 효자리 (대3-57)	일반도로	-	건고 제198호 (71.4.7)	북한산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호	대로1-1호	◦ 일부구간 폭원 축소 - 폭원 : 35m→29~35m	◦ 폭원축소 시에도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는 왕산 로 미확폭구간이 자동실효시기 이전 집행이 곤란한 일부구간 폭원 축소
대로1-16호	대로1-16호	◦ 일부구간 폭원 축소 - 폭원 : 35m→30~35m	◦ 현재의 차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개설효과가 미 미한 미확폭 구간 폭원 축소
대로1-53호	대로1-53호	◦ 일부구간 폭원 축소 - 폭원 : 35~37m→33~37m	◦ 우회도로가 있어 차량 및 보행통행이 적으며 확폭 효과가 미미한 도림고가차도 하부구간은 현황 도로 로 반영한 폭원 축소
대로2-7호	대로2-7호	◦ 교차로 가각부 정리	◦ 교통흐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 교차로 가각 부를 지적선에 맞추어 변경
대로2-24호	대로2-24호	◦ 기점변경 - 우이동→우이동 4-2 ◦ 폭원 축소, 연장 변경 - 폭원 : 30m→10~20m - 연장 : 2,983m→2,801m	◦ 교통성 검토결과 현황도로로 이용에 문제가 없으며, 기 결정도로로 개설시 과도한 사면 발생으로 녹지 훼손의 우려가 있어 현황에 맞추어 변경하고, 보행 자 안전을 위해 보도 확폭구간 반영(1.5~3.0m) ◦ 기 개설되어 운영 중인 삼양로 연결구간을 반영하 여 기점 변경
대로2-25호	대로2-25호	◦ 일부 구간 폭원 축소, 선형 변경 - 폭원 : 30~40m→20~40m	◦ 지형여건상 계획된 노선으로 집행이 곤란하여 현황 도로를 반영하여 폭원 축소 및 선형 변경
대로3-57호	대로3-57호	◦ 일부 구간 폭원 축소	◦ 기 개설되어 운영중인 방학로 연결구간 변경 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9호	대로3-69호	- 연장 축소 - 연장 : 5,973m→5,381m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구간 연장 축소
대로3-228호	대로3-135호	- 연장 축소 - 연장 : 7,750m→2,380m	지형 및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개설이 지난한 북악산 터널구간 일부 폐지
	대로3-228호	- 연장 축소 - 연장 : 7,750m→3,040m - 도로명 변경 - 대로3-135→대로3-228	대로3-135호선 연장축소로 인한 노선분리로 신규 노선번호 부여
중로1-13	중로2-519호	- 연장 및 폭원 축소, 선형 변경 - 연장 : 1,260m→443m - 폭원 : 20m→12~15m	- 용산공원 내 미개설구간 연장축소 - 차량 및 보행통행이 적어 확폭 효과가 미미한 미확폭구간은 현황도로를 반영
중로1-52호	중로1-52호	- 일부구간 폭원 및 연장 축소 - 연장 : 6,380m→3,825m - 폭원 : 20m→15~20m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및 지하철 2호선과 중복 결정되어 현실적으로 집행 곤란한 구간 삭제
중로1-83호	중로1-83호	- 연장축소 - 연장 : 1,800m→212m	철도시설(광운대역) 저축으로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집행구간 연장 축소
	중로1-469호	- 연장축소 - 연장 : 1,800m→1,208m - 도로명 변경 - 중로1-83→중로1-469	중로1-83호선 연장축소로 인한 노선분리로 신규 노선번호 부여
중로1-135호	중로1-135호	- 연장축소 - 연장 : 5,730m→4,545m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응봉산 구간의 연장을 축소
중로1-147호	중로1-147호	- 연장 증가, 폭원 축소 - 폭원 : 20m→10~20m - 연장 : 220m→596m	한천로의 중간구간이 일부 폐지되어 노선이 양분됨에 따라, 석계로와 인접한 한천로 구간을 석계로에 포함하여 노선 결정
중로1-149호	중로1-149호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연장 : 3,620m→3,632m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대체하여 운영 중인 현황 도로를 반영하여 선형 변경
중로1-175호	중로1-175호	- 연장 축소 - 연장 : 2,800m→1,595m - 폭원 : 20~23m→15~20m	- 중로1-175호선 연장 축소로 인한 노선분리 - 연장축소 구간 실도로 폭원 반영
	중로1-470호	- 연장 축소 - 연장 : 2,800m→697m	- 이용중인 우회도로(현황도로)가 있는 구간으로 과도한 사업비로 인해 실효시기 이전 집행 곤란한 구간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변경 - 노선분리로 인해 신규 노선번호 부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98호	중로1-198호	- 연장 축소, 선형 변경 - 연장 : 1,370m→467m	우이천, 지하철(석계역), 고가도로(북부간선, 화랑고가) 등 현장 여건상 현실적으로 개설이 지난한 미집행 구간 폐지 및 현황도로에 맞춰 변경
중로1-207호	중로1-207호	- 연장 축소 - 연장 : 410m → 123m	연계되는 도로가 없는 막다른 길로서 개설 효과가 미미한 미개설구간 연장 축소(이촌로 지하철도를 통해 동서간 연결기능 기 확보)
중로1-393호	중로1-393호	- 폭원 축소 - 폭원 : 20~26m→12~20m	- 인근 개봉지하차도 교차로에서 남부순환로 진출입 기능을 수행 - 남부순환로로 차량 진출을 위해서는 광복교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실시시기 이전 집행이 곤란하여 폭원 축소
광로2-24-1호	-	- 노선 폐지 - 폭원 : 40m - 연장 : 550m	- 서울과 고양시를 연계하는 노선이었으나, 고양시 구간도로 폐지에정도로 시설 불필요 - 중복결정되어 이용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입지하여, 노선폐지

2) 공간시설

가)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32,661.7	감)24,807.0	307,834.7		
변경	36	한강대교북단광장	교통광장	용산구 한강로3가 140번지 주변	54,083.0	감)2,195.0	51,888.0	서고 제367호 (77.10.21)	(경미한 변경)
변경	81	이수광장	교통광장	동작구 동작동 일대	106,808.0	감)589.0	106,219.0	건고 제137호 (77.7.9)	(경미한 변경)
변경	29	양화대교북단광장	교통광장	함정동 416-6 일원	125,325.0	감)1,802.0	123,523.0	건고 제431호 (63.7.1)	(경미한 변경)
변경	27	세검정광장	교통광장	종로구 신영동72 일대	23,402.0	감)13,941.0	9,461.0	서고 제666호 (78.12.18)	
변경	51	한양광장	교통광장	행당동 20-28	16,850.7	감)107.0	16,743.7	건고 제137호 (77.7.9)	(경미한 변경)
폐지	59,63	남가좌광장	교통광장	남가좌역 앞 일대	1,463.0	감)1,463.0	-	건고 제445호 (81.12.12)	
폐지	113	동구로광장	교통광장	구로구 구로동12 일대	4,730.0	감)4,730.0	-	건고 제393호 (78.12.7)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한강대교 북단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54,083㎡→51,888㎡	◦ 인접하여 강변북로에서 이촌로로 진출하는 대체도로가 있어 교통광장 축소 시에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미집행 사유지 해제
81	이수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106,808㎡→106,219㎡	◦ 교통광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미집행 사유지 제척
29	양화대교 북단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125,325㎡→123,523㎡	◦ 외국인 묘지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고, 광장기능에 지장이 없는 미집행 사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추어 변경
27	세검정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23,402㎡→9,461㎡	◦ 대로3-135호(성북로) 연장축소로 인해 교통광장의 기능을 상실한 광장 해제
51	한양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16,850.7㎡→ 16,743.7㎡	◦ 왕십리로(대로1-16) 폭원 축소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교통 광장 면적 축소
59,63	남가좌광장	◦ 광장 폐지 - 면적 : 1,463㎡	◦ 가좌역 광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지가 출입구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기능이 상실된 역전광장 폐지
113	동구로광장	◦ 광장 폐지 - 면적 : 4,730㎡	◦ 교통광장으로써의 기능 및 필요성이 낮으며 신도림역 지하광장이 조성되어 광장기능을 수행 중에 있어 광장시설 폐지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월계녹지	완충 녹지	성북구 석관동 375-45번지 일대	2,134	감)2,134	-	건고 제8호 (76.1.21)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월계녹지	◦ 녹지 폐지 - 면적 : 2,134㎡	◦ 시의회 해제권고 및 기능 상실된 녹지 해제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3) 및 도로계획과(☎ 02)2133-8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고시 제2002-57호(2002.7.26)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471번지 일원 주차장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종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로 결정된 일부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면적이 증가되어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송인동 471번지 일원	1,322.2 (대지 1,018.4, 도로 303.8)	증) 1.6	1,323.8 (대지 1,020, 도로 303.8)	종로구고시 제2002-57호 (2002.7.26.)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주차장	송인동 478번지(7.4㎡) → 송인동 478-2번지(9.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로 결정된 일부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면적이 증가되어 변경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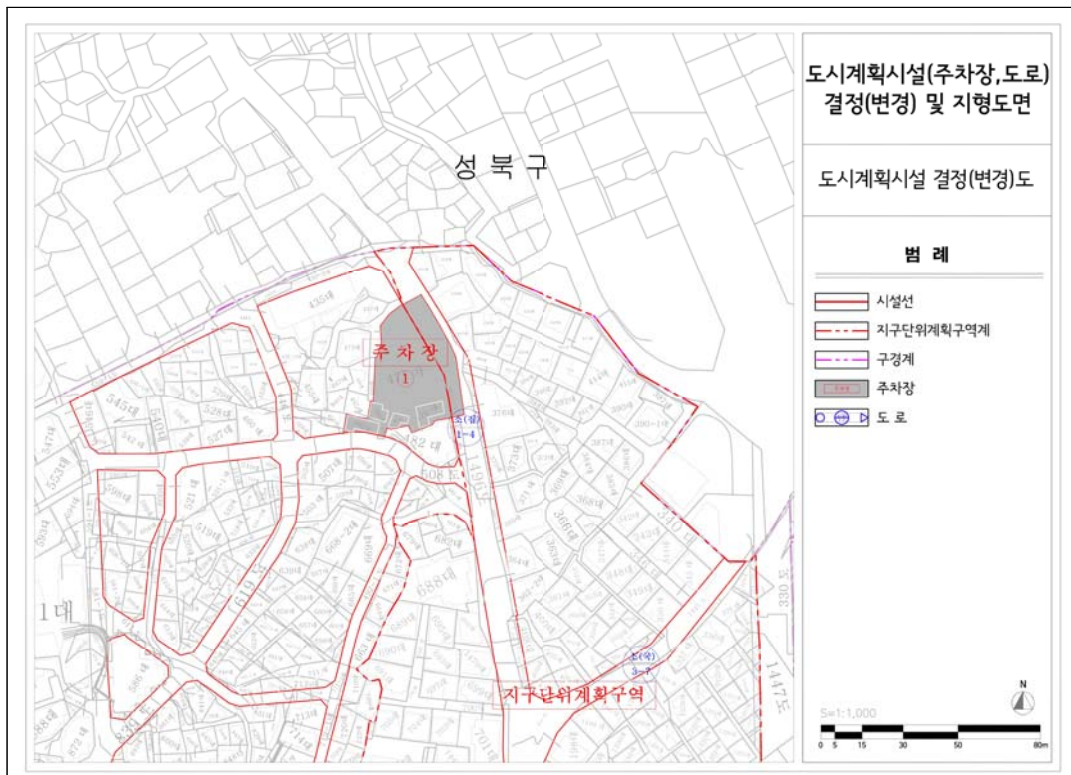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 및 주차관리과 (☎2148-33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중구고시 제2018-1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0호(2006.12.28)로 특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5호(2014.11.27)로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KT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중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KT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광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공공청사	-	중구 충무로1가 21의 1일대	11,000	감) 3,908.1	7,091.9	1982.4.20 (서고 156호)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일부(전화국) 용도 폐지 : 11,000㎡ → 7,091.9㎡ (감 3,908.1㎡)	• 전화국의 민영화(KT)에 따라 관계규정에 상충되는 공 공청사 일부(전화국) 폐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III.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중구 충무로1가 21-17 일대	3,908.1	-	3,908.1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08.1	-	3,908.1	10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3,908.1	-	3,908.1	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6	남대문 시장	-	중구 남창동 283외 수백필지	900,266 (3,908.1)	1963.12.13 (건고727호)	

주) ()는 특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공공청사	-	중구 충무로1가 21의 1일대	11,000	감) 3,908.1	7,091.9	1982.4.20 (서고 156호)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일부(전화국) 용도 폐지 : 11,000m ² → 7,091.9m ² (감 3,908.1m ²)	• 전화국의 민영화(KT)에 따라 관계규정에 상충되는 공공청사 일부(전화국) 폐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3	2	충무로1가 21-17 일대	3,908.1	KT부지 특별계획구역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용도계획

① 불허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층	상업 및 관광환경 저해용도 (P1)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장의사, 총포판매소 - 철탑 등의 구조물이 설치된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철탑 등의 구조물이 설치된 운동시설 • 의료시설 중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좌동	
	가로환경 저해용도 (P3)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목욕장, 탁구장, 체육도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기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판매 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및 이를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도 해당)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위락시설 중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좌동	
1층	가로환경 비활성화 용도 (P4)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학원, 독서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학교를 제외) •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을 제외) • 업무시설 중 - 일반업무시설	좌동	

② 권장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층	문화 및 공공용도 (S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공연장(극장, 음악당),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좌동	
	관광관련 용도 (S3)	- 숙박시설 중 - 일반숙박시설(호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좌동	
1층	가로활성화 용도 (S4)	-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서점	좌동	

나) 건축물 개발밀도

① 건폐율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	

② 용적률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용적률	600%이하	좌동	
	허용용적률	800%이하	좌동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좌동	

※ 용적률, 높이의 완화는 해당 계획지침의 완화계획을 따름(단,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는 10% 이상분에 대하여 부여)

※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획지 계획	획지선	준수시	100%	
	공동개발(지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a • 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적용 : n=2일때 a=0.1 : n=3이상일때 a=0.15	
	공동개발(권장) 자율적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a • 자율적공동개발 필지수(n)에 따라 차등적용 : n=2일때 a=0.05 : n=3이상일때 a=0.08	
	맞벽(합벽)건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추가확보 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0.2α - 피로티구조: α=0.5 - 침상형구조: α=0.8 - 개방형구조: α=1	
	쌈지형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0.8 - 개방형구조 : a=1	
	건축한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1.2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조성되는 건축선으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지정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x 0.2	중복 완화불가
		1층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 면적 / 주차장제외건축연면적) x 0.3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연립형 간판 설치	준수시	10%	시행지침 제28조
건축물 개방	개방 화장실	설치시	20%	시행지침 제40조
건축물 보전	역사·문화적 건축물	보전시	$100\% \times \alpha$ $\alpha \leq 1$ (단, 등록 또는 지정문화재는 $\alpha \leq 2$)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출입구 · 통로	준수시	10%	지침에 결정된 대지
환경개선	무장해 건축물	일반등급 이상	• 기준용적률 × 0.05	시행지침 제41조
	가로지장물, IT시설 등	건물 내 수용시	10%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완화조건	세부계획기준	비고
환경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5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0.05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0.05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4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건축인증	준수시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1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5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 1+++~1등급 : 기준용적률 x 0.1 • 2~4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5~7등급 : 기준용적률 x 0.05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준수시	•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 • 2~3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 4~5등급 : 기준용적률 x 0.05	

-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 연면적 1만㎡ 초과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 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단, 연면적 2,000㎡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 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 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 6)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단 기공동개발 대지의 판단시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공고일(2013.11.20)을 기준으로 함

③ 높이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최고높이 60m 이하 (기부채납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좌동	

- ※ 용적률, 높이의 완화는 해당 계획지침의 완화계획을 따름(단,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는 10% 이상분에 대하여 부여)
※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배치 및 대지내 공지	대상지 남측 충무로길변 공개공지쌔지형공지 조성	대상지 남측 공개공지 조성	
건축물 형태	이면도로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전면 공지(건축한계선 등) 조성	대지와 접한 도로변 건축한계선 조성 - 건축한계선 : 3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및 주차	충무로길변(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을 제외)으로부터 대지내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금지	
공공시설 확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 대지지분 : 313.07㎡(8.01%) - 건축물환산주 : 77.74㎡(1.99%) (연면적 1,843.49㎡)	
기타	첨단 IT기술을 응용한 가로시설물 조성(벽면부착형 미디어보드를 포함) 권장	해당없음	

주) 향후 토지가액 감정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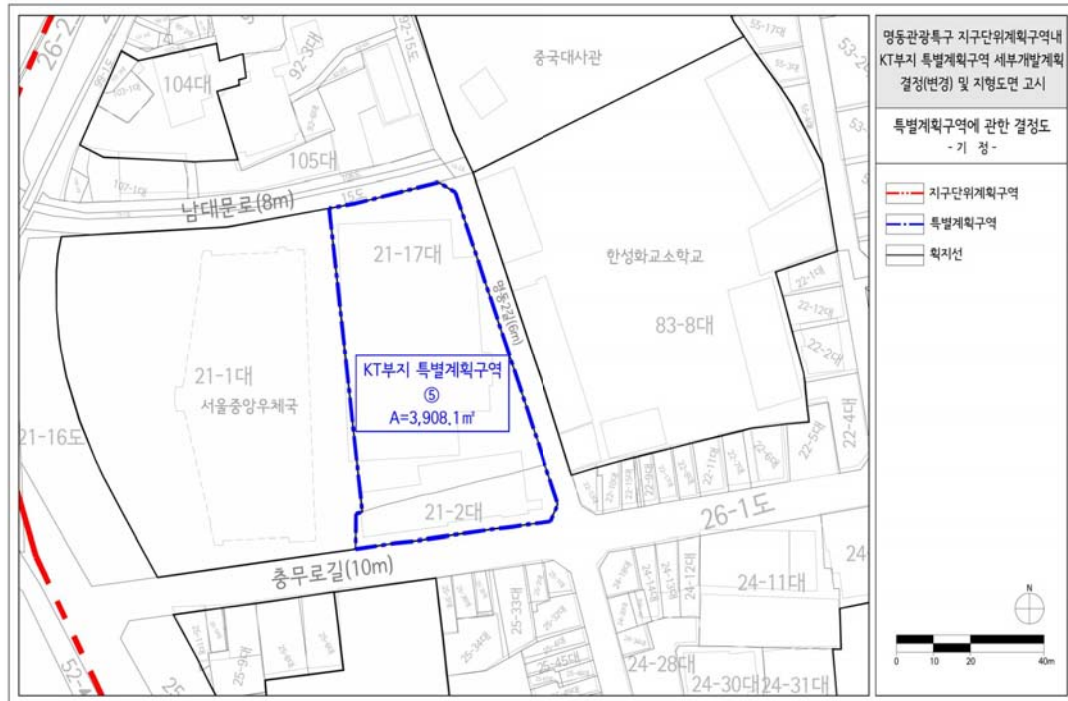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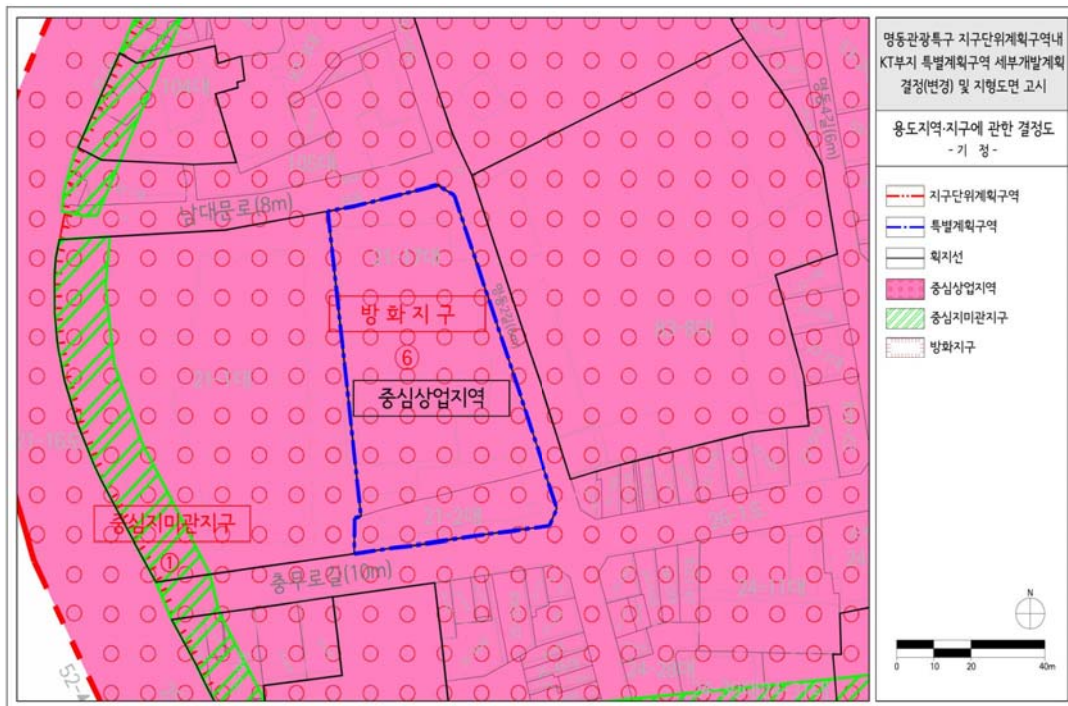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VI. 관계도서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8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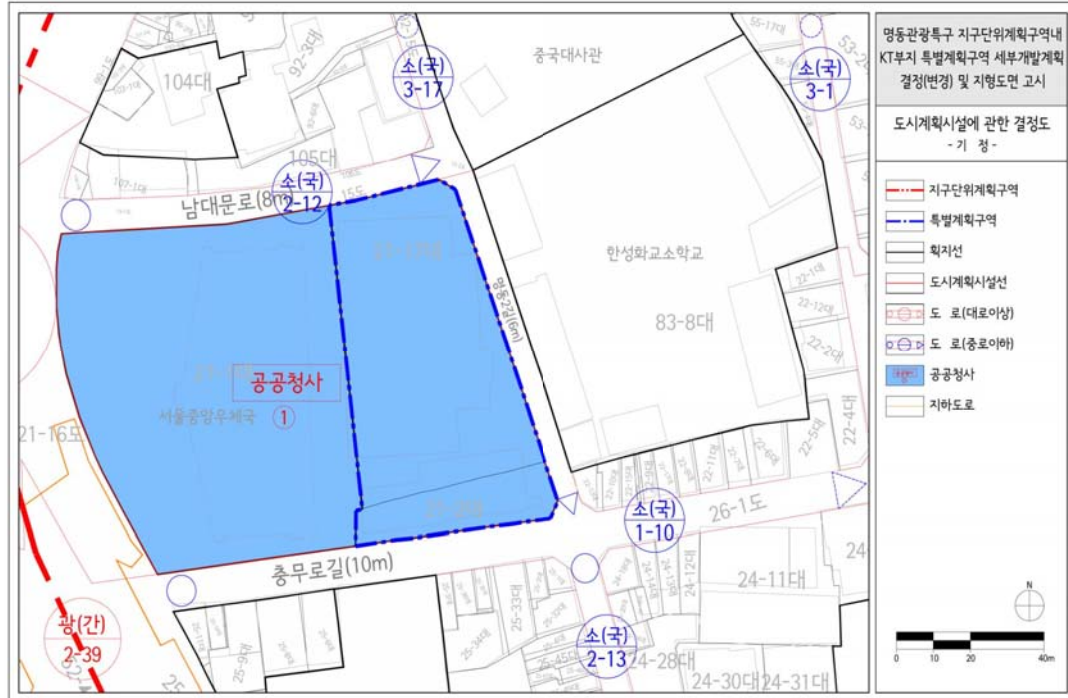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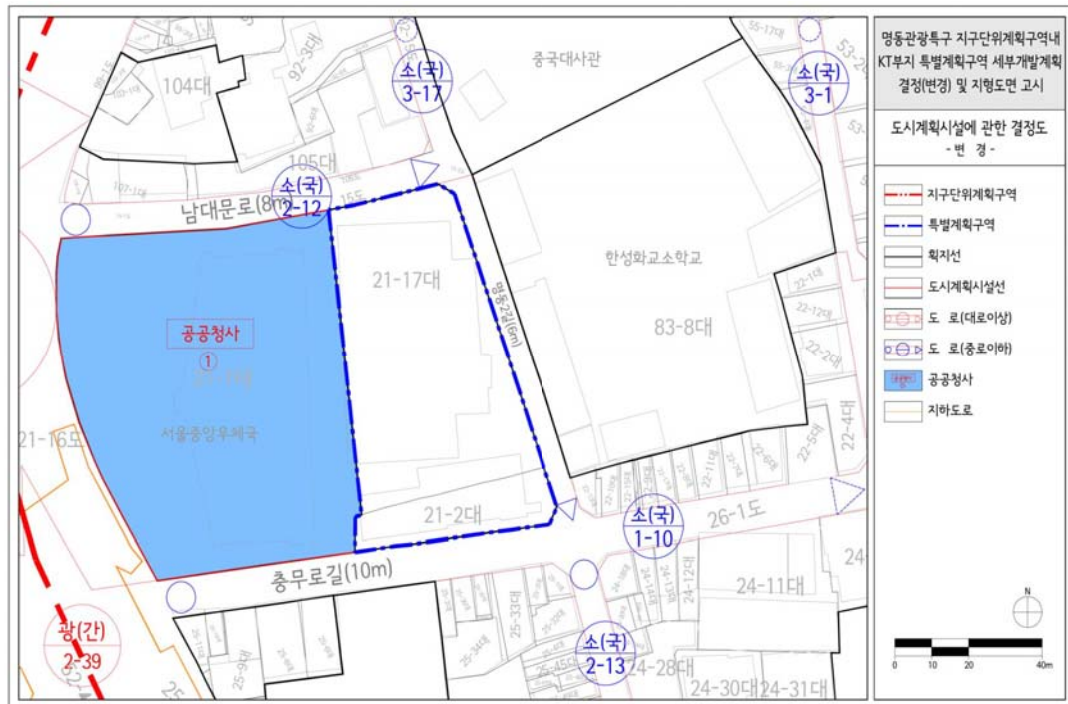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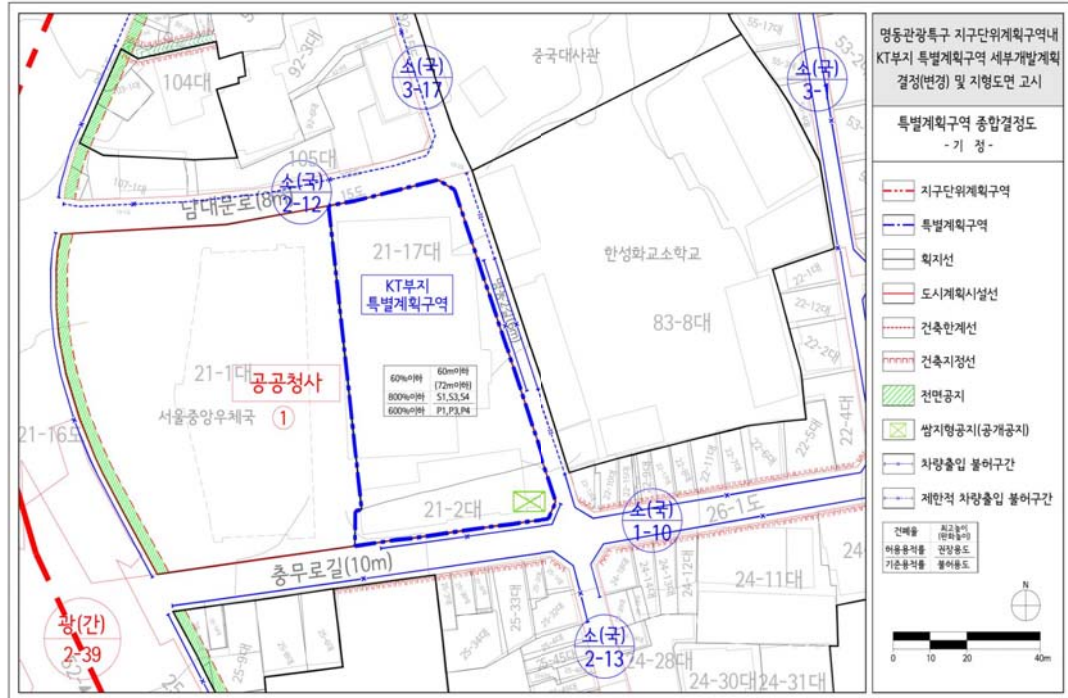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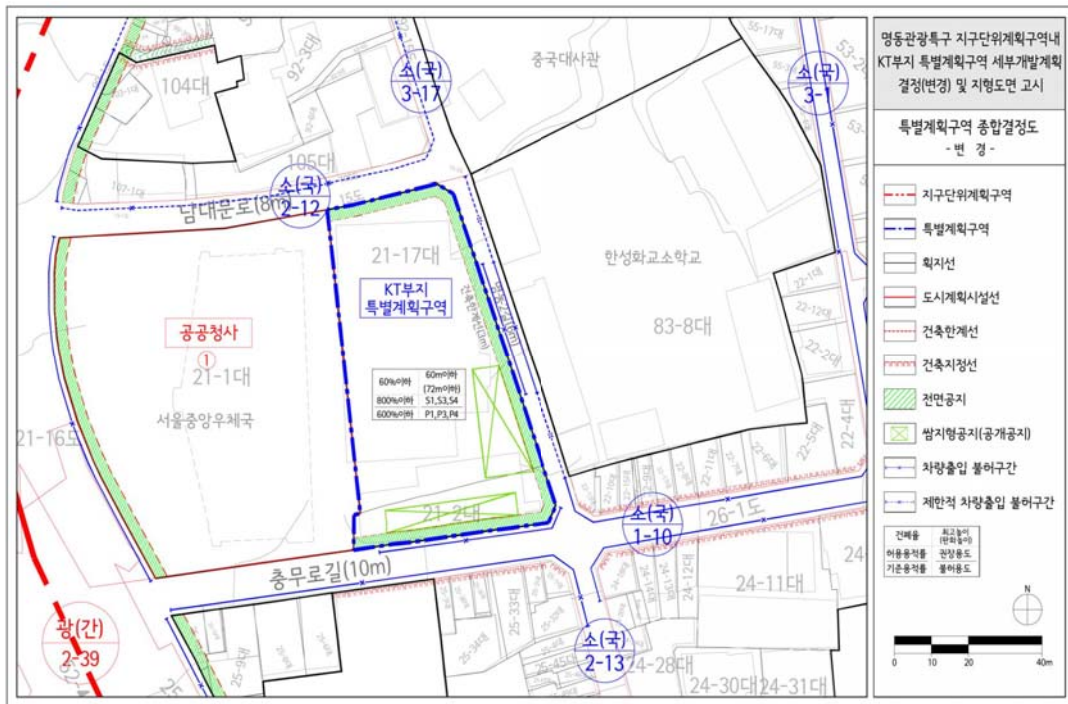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 종합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종합결정도(변경)



◆ 성북구고시 제2018-4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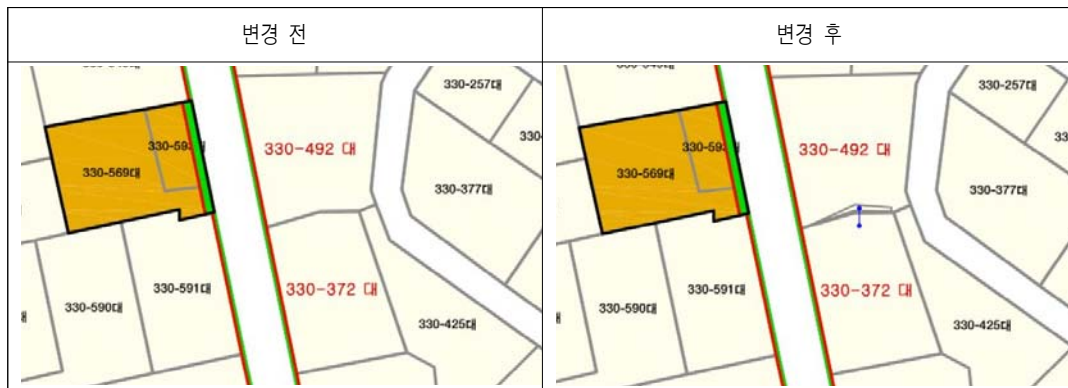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위치	면적(㎡)	개발계획	위치	면적(㎡)	
정주환경 관리구역 01-1	성북동 145-134	590	단독개발	성북동 145-134-1	526	획지계획 축소 감)64㎡
				성북동 145-134-2	64	
	성북동 145-170	1,123	단독개발	성북동 145-170-1	994	필지분할
				성북동 145-170-2	28	
				성북동 145-170-3	61	
				성북동 145-170-4	40	
정주환경 관리구역 01-1	성북동 330-492	820	단독개발	성북동 330-492-1	800	단독개발
				성북동 330-492-2	20	공동개발지정
	성북동 330-372	732	단독개발	성북동 330-372	732	
정주환경 관리구역 01-2	성북동 45-2	476	단독개발	성북동 45-2-1	448	단독개발
				성북동 45-2-2	28	공동개발지정
	성북동 45-1	501	단독개발	성북동 45-1	50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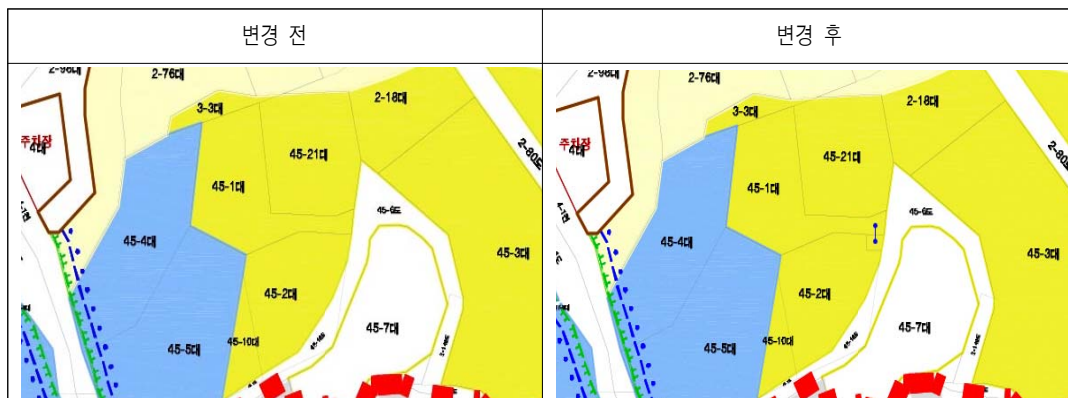
- 성북동 145-134번지 및 성북동 145-170번지



- 성북동 330-492번지



- 성북동 45-2번지



◆ 도봉구고시 제201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12호(1988.8.29) 및 서울시고시 제41호(1990.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4-104호(2014.10.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17-1222호(2017.12.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창동역(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외 1」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3~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창동 330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 명칭 : 창동역(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외 1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도로개설 : 폭 15~19m 연장 144m(일부구간 폭원확장)
폭 10m 연장 206m(중점부 선형변경)
폭 6m → 2m 연장 48.1m(폭원축소)
- 주차장 위치변경 : 3,612㎡(면적 증감 없는 근소한 위치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편 입 토 지 조 서(도로개설공사)

사 업 명 : 창동역(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외 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330	주차장	3,612	19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편 입 토 지 조 서(주차장공사)

사 업 명 : 창동역(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외 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335-1	도로	288.5	192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1/1				

물건조서

사업명 : 창동역(서)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외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해당없음		하이파킹 대표 임판영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5길 17-6	주차장 영양권	

◆ 노원구고시 제2018-6호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80-6번지 외 5필지 사도에 대하여 「사도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 변경(폐지)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도개설허가 취소 및 사도변경(폐지) 사유

- 사도폐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보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사도폐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결과 반영 할 만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사도를 폐지코자 함.

2. 사도변경(폐지) 결정조서

구분	폭원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폐지	4	57	하계동 180-36	하계동 181-11	

3. 관련 토지 조서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하계동 180-36	대	77	하계동 180-37	대	14
하계동 180-44	대	33	하계동 181-11	전	8
하계동 180-2	답	84	하계동 179-33	대	44

4. 관계도면 : 생략

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8-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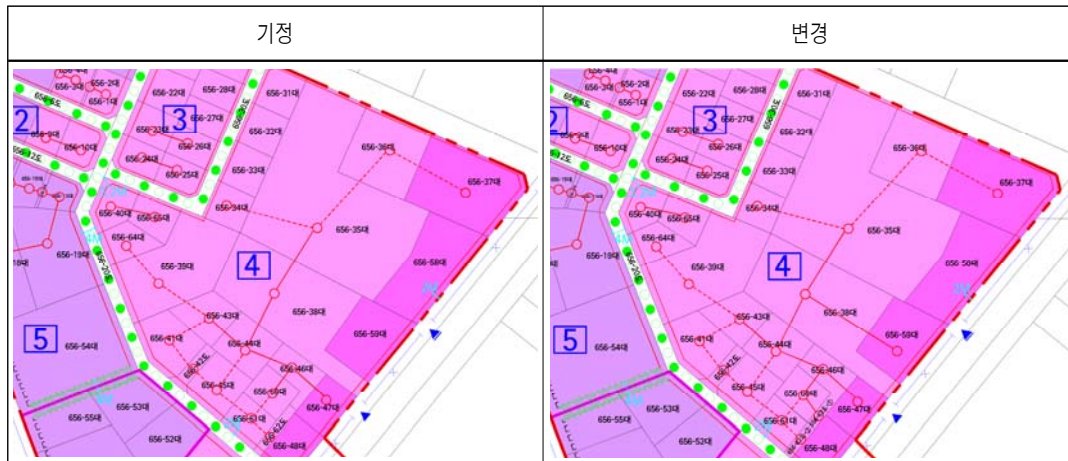
2018년 1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E-4-a	④ 등촌동	656-39	787㎡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656-35,38,43, 46,47,60,59,62-①) 공동개발(권장) (656-39)	
		656-35	2,132.1㎡	공동개발(지정)		
		656-38	1,102㎡			
		656-43	217.1㎡			
		656-46	430.2㎡			
		656-47	198.6㎡			
		656-60	165.3㎡			
		656-59	422.5㎡	단독개발		
		656-62	55.5㎡	공동개발(권장)(656-61)	②	공동개발(권장)(656-61)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1984.02.1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1984.05.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되어, 서초구고시 제2001-5호(2001.01.05), 서초구고시 제2003-100호(2003.09.01), 서초구고시 제2008-12호(2008.03.21), 서초구고시 제2008-31호(2008.06.16), 서초구고시 제2008-88호(2008.09.29), 서초구고시 제2009-74호(2009.12.17), 서초구고시 제2010-56호(2010.12.30), 서초구고시 제2013-53호(2013.05.16), 서초구고시 제2014-120호(2014.10.02), 서초구고시 제2015-94호(2015.08.06), 서초구고시 제2016-109(2016.11.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2.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신 청 개 요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예술의 전당)사업
- 3) 시행지 면적 : 166,789㎡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사업시행면적	166,478㎡	166,789㎡	311㎡ 증가
건 축 면 적	32,359.95㎡	32,359.95㎡	-
연 면 적	128,577.54㎡	128,577.54㎡	-
용적율산정용면적	80,465.09㎡	80,465.09㎡	
건 폐 율	19.44%	19.40%	0.04% 감소
용 적 률	48.33%	48.24%	0.09% 감소
건 물 등 수	9등	9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예술의 전당 사장(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5) 시행기간 : 1984.5.28. ~ 2019.12.31.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8-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용 산 구 청 장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부문	계			단계별 집행시기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1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건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169	715,356	4,854,381	97	351,336	1,782,424	7	16,156	189,256	65	347,864	2,882,701
도 로	121	400,401	2,562,946	84	229,217	1,176,792	6	12,594	185,702	31	158,590	1,200,452
주차장	3	6,291	50,566							3	6,291	50,566
공 원	22	158,713	1,565,471	9	103,753	517,287				13	54,960	1,048,184
녹 지	9	51,846	303,198	3	18,211	87,091	1	3,562	3,554	5	30,073	212,553
공공공지	4	16,233	114,283	1	155	1,254				3	16,078	113,029
학 교	3	76,731	197,824							3	76,731	197,824
공공청사	4	3,448	39,295							4	3,448	39,295
사회복지시설	3	1,693	20,798							3	1,693	20,798

□ 연차별 집행계획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호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우선 순위			주요내용															
도로	1	한강로1기(백범로)~한강로1기73-2	'18~'21	B=20m,L=80m 1600㎡	5,809			5,809				1,500			4,309			'21.7.11	
도로	2	용문동38-176~용문동38-192	'18	B=8m,L=38m 372㎡	900			900				900						'20.6.30	
도로	3	문배동40-5~문배동7-31	'18	B=8m,L=86m 688㎡	2,160			2,160				2,160						'21.7.11	
도로	4	후암동315~후암동261-2	'18	B=6m,L=319m 1946㎡	1,398			1,398				1,398						'20.6.30	
도로	5	청파동1기47-1~청파동1기97-8	'18	B=6m,L=290m 1910㎡	1,288			1,288				1,288						'20.6.30	
도로	6	청파동2790-27~청파동27기11-1	'18	B=6m,L=300m 1840㎡	1,084			1,084				1,084						'20.6.30	
도로	7	후암동43-13~후암동47-1	'18	B=4m,L=120m 510㎡	192			192				192						'20.6.30	
도로	8	이태원동207~이태원동199-1	'18	B=6m,L=300m 1850㎡	5,452			5,452				5,452						'20.6.30	
도로	9	이태원동123-15~이태원동123-10	'18	B=8m,L=38m 304㎡	5,084			5,084					5,084					'21.7.11	
도로	10	한남동521-2~한남동497	'19	B=6m,L=88m 655㎡	3,353			3,353					3,353					'21.7.11	
도로	11	후암동48-1~후암동47-7	'19	B=4m,L=60m 240㎡	186			186						186				'20.6.30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도로	12	신계동7-8~신계동16-3	'19	B=6m,L=80m 444㎡	269		269		269				269	'17	'18	'19	'20	'21	'22년 이후	'21.7.11
도로	13	서계동224-4~서계동 238-9	'19	B=15m,L=340m 5100㎡	27,724		27,724		27,724				27,724							'20.6.30
도로	14	한남동736-1~한남동736-5	'19	B=6m,L=72m 447㎡	847		847		847				847							'20.6.30
도로	15	청파동2760-1~청파동2749-1	'19	B=4m,L=67m 261㎡	202		202		202				202							'20.6.30
도로	16	후암동302~후암동44	'19	B=4~6m,L=230m 214㎡	452		452		452				452							'20.6.30
도로	17	이태원동203-1~이태원동199-1	'19	B=6m,L=80m 504㎡	1,044		1,044		1,044				1,044							'20.6.30
도로	18	이태원동150~이태원동159-3	'19	B=4m,L=176m 872㎡	278		278		278				278							'20.6.30
도로	19	청파1789-46~청파1가 93-31	'19	B=4m,L=130m 515㎡	235		235		235				235							'20.6.30
도로	20	원호로1731-16~원호로1783-18	'19	B=6m,L=51m 306㎡	128		128		128				128							'20.6.30
도로	21	이태원동254-11~이태원동240	'20	B=6m,L=386m 2803㎡	2,647		2,647		2,647				2,647				2,647			'20.6.30
도로	22	한남동253-3~한남동273-4	'20	B=10m,L=163m 1655㎡	11,983		11,983		11,983				11,983				11,983			'20.6.30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지방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도로	23	이태원동293-14~이태원동154-24	'20	B=8m,L=258m 2205㎡	1,110	1,110	1,110					1,110			'20.6.30				
도로	24	이태원동260-34~이태원동25-227	'20	B=6m,L=212m 1535㎡	1,859	1,859	1,859					1,859			'20.6.30				
도로	25	한남동736-11~한남동736-11	'20	B=8m,L=18m 147㎡	4,299	4,299	4,299					4,299			'22.6.27				
도로	26	만리동2가 270-2~서계동 33-15	'20	B=6m,L=430m 2600㎡	1,004	1,004	1,004					1,004			'20.6.30				
도로	27	한남동653-2~한남동653-49	'20	B=6m,L=103m 618㎡	1,772	1,772	1,772					1,772			'22.1.15				
도로	28	한남동263-4~한남동30-3	'20	B=6m,L=60m 361㎡	3,583	3,583	3,583					3,583			'22.1.15				
도로	29	청파동2718-8~청파동27166-8	'20	B=6m,L=198m 1590㎡	669	669	669					669			'20.6.30				
도로	30	서계동150~서계동33-36	'20	B=6m,L=42m 495㎡	355	355	355					355			'20.6.30				
도로	31	한남동316-3~한남동432	'20	B=6m,L=407m 2560㎡	2,864	2,864	2,864					2,864			'22.1.15				
도로	32	서계동73-4~서계동 58-2	'20	B=6m,L=50m 292㎡	867	867	867					867			'20.6.30				
도로	33	청파동2710-7~청파동27104-6	'20	B=6m,L=90m 540㎡	57	57	57					57			'20.6.30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총 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단계		2-1단계			2-2 단계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도로	34	후암동247-8~후암동281-1	'20	B=4m,L=52m 284㎡	576			576					'17	'18	'19	'20	'21	'22년 이후	'20.6.30
도로	35	한남동641-2~한남동631-5	'20	B=8m,L=144m 1555㎡	6,381			6,381								6,381			'20.6.30
도로	36	한강로2가76-2~한강로2가18-1	'20	B=15m,L=310m 4650㎡	32,309			32,309								32,309			'20.6.30
도로	37	남영동(광3-9)~용산동1가 2-11	'20	B=20m,L=550m 11000㎡	6,600			6,600								6,600			'20.6.30
도로	38	문배동(대1-1)~한강로2가 (대2-73)	'20	B=21~35m,L=704m, 19853㎡	11,934			11,934								11,934			'21.7.11
도로	39	한남동240-3~한남동520-6	'20	B=10m,L=320m 3285㎡	21,954			21,954								21,954			'22.1.15
도로	40	한강로1가(백범로)~한강로2가(대2-3)	'20	B=20m,L=765m 15300㎡	155,350			155,350								155,350			'21.7.11
도로	41	한강로1가(광3-9)~한강로1가(중1-4)	'20	B=12m,L=125m 1500㎡	4,463			4,463								4,463			'21.7.11
도로	42	한남동88-1~한남동525-45	'20	B=20~24m,L=300m 6685㎡	12,338			12,338								12,338			'22.1.15
도로	43	한남동512-7~한남동510-3	'20	B=4m,L=120m 569㎡	11			11								11			'22.1.15
도로	44	한남동466-3~한남동510-3	'20	B=6m,L=92m 568㎡	607			607								607			'22.1.15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계	시비								구비		
도로	45	후암동247-50~후암동254-5	'20	B=6m,L=245m 1522㎡	661		661				'17	'18	'19	'20	'21	'22년 이후	'20.6.30	
도로	46	한강로27가(대3-1)~신계동(소3-2)	'20	B=12m,L=155m 1860㎡	2,057		2,057						2,057					'21.7.11
도로	47	원효로37가176~원효로37가194	'20	B=6m,L=170m 1058㎡	433		433							433				'20.6.30
도로	48	원효로37가(대2-61)~ 한강로37가40-1	'20	B=30m,L=184m 5520㎡	33,259		33,259							33,259				'21.7.11
도로	49	한남동736-5~한남동736-46	'20	B=6m,L=76m 477㎡	2,126		2,126							2,126				'22.6.27
도로	50	용산동27가5-753~ 용산동27가5-1903	'20	B=8m,L=70m 560㎡	89		89							89				'20.6.30
도로	51	한강로37가29-2~한강로37가40-1	'20	B=25m,L=100m 2500㎡	35,765		35,765							35,765				'21.7.11
도로	52	한남동644-23~한남동644-10	'20	B=8m,L=120m 1280㎡	959		959							959				'22.1.15
도로	53	한남동524-1~한남동618-5	'20	B=25m,L=210m 5250㎡	12,489		12,489							12,489				'22.1.15
도로	54	한남동155-11~한남동499-4	'20	B=6m,L=152m 976㎡	2,742		2,742							2,742				'22.1.15
도로	55	한남동272-2~한남동272-22	'20	B=6m,L=70m 479㎡	2,584		2,584							2,584				'22.1.15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도로	56		한남동174-2~한남동175	'20	B=6m,L=39m 168㎡	1,145	1,145		1,145							1,145		'22.1.15
도로	57		한남동143~한남동125	'20	B=6m,L=25m 137㎡	624	624		624							624		'22.1.15
도로	58		한남동524-45~한남동117-2	'20	B=8~20m,L=194m 1140㎡	9,067	9,067		9,067							9,067		'22.1.15
도로	59		만리동27294-14~서계동33-15	'20	B=6m,L=254m 1760㎡	10,930			10,930							10,930		'20.6.30
도로	60		용문동(중1-16)~호창공원	'20	B=20m,L=783m 13,935㎡	3,942			3,942							3,942		'20.6.30
도로	61		동자동8-5~동자동19-116	'20	B=6m,L=92m 552㎡	15						15				15		'21.7.11
도로	62		길월동56-5~길월동54-2	'20	B=6m,L=200m 1458㎡	1,749						1,749				1,749		'20.6.30
도로	63		한강로1가180-1~한강로17가199-5	'20	B=12m,L=155m 1860㎡	7,654						7,654				7,654		'21.7.11
도로	64		문배동11-20~문배동7-39	'20	B=8m,L=20m 160㎡	965						965				965		'21.7.11
도로	65		문배동10-3~문배동11-24	'20	B=6m,L=56m 336㎡	4,377						4,377				4,377		'21.7.11
도로	66		한강로1가180(3-9)~한강로2가 (중1-4)	'20	B=15m,L=125m 1800㎡	2,717						2,717				2,717		'21.7.11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 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지방법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로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우선 순위																		
도로	78	이태원동18-27~이태원동132-23	'20	B=15m,L=289m 4335㎡	8,028					8,028			'17	'18	'19	'20	'21	'22년 이후	'20.6.30
도로	79	동빙고동1-9~보광동216-3	'20	B=15m,L=403m 6045㎡	23,783					23,783					23,783				'20.6.30
도로	80	보광동22-2~보광동80-26	'20	B=15m,L=336m 5040㎡	212,258					212,258					212,258				'20.6.30
도로	81	한남동97-1~한남동97-1	'20	B=10m,L=46m 515㎡	7,097					7,097					7,097				'22.1.15
도로	82	한남동118-1~한남동494	'20	B=6m,L=90m 597㎡	2,503					2,503					2,503				'22.1.15
도로	83	한남동459-1~한남동434-1	'20	B=6m,L=45m 284㎡															'22.1.15
도로	84	이태원동7-38~보광동387-5	'20	B=12m,L=574m 6888㎡	250					250					250				'20.6.30
도로	85	한남동32-19~한남동32-19	'20	B=6m,L=50m 471㎡	20					20					20				'22.1.15
도로	86	이촌동301-5~이촌동302-41	'20	B=15m,L=260m 4,084㎡	121,048					121,048							121,048		'26.3.23
도로	87	이촌동301-4~이촌동300-307	'20	B=15m,L=228m 3405㎡	56,095					56,095							56,095		'26.3.23
도로	88	신계동(중3-7)~신계동3-14	'21	B=8m,L=110m 880㎡	95	95			95							95			'21.7.11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도로	89	한강로3기25-21~한강로3기23-1		'21	B=10m,L=120m 1200	720		720								720		'22년 이후	'20.6.30
도로	90	한남동72-7~한남동30-9		'21	B=8m,L=172m 1425㎡	1,935		1,935								1,935			'22.1.15
도로	91	이태원동133-33~보광동129-1		'22년	B=25m,L=1,245m 31,125㎡	175,847						175,847						175,847	'22년
도로	92	이태원동18-27~이태원동132-23		'22년	B=15m,L=289m 4,335㎡	6,981						6,981						6,981	'22년
도로	93	이태원동7-38~보광동387-5		'22년	B=12m,L=574m 6,888㎡	218						218						218	'22년
도로	94	동빙고동1-9~보광동216-3		'22년	B=15m,L=403m 6,045㎡	20,681						20,681						20,681	'22년
도로	95	보광동22-2~보광동80-26		'22년	B=15m,L=336m 5,040㎡	184,573						184,573						184,573	'22년
도로	96	이태원동15-81~이태원동22-19		'23년이후	B=38m,L=401m 15,238㎡	131,006						131,006						131,006	'23년이후
도로	97	한남동543-8~보광동80-2		'23년이후	B=15m,L=500m 7,500㎡	23,278						23,278						23,278	'23년이후
도로	98	보광동21-1~보광동248-9		'23년이후	B=15m,L=472m 7,080㎡	21,974						21,974						21,974	'23년이후
도로	99	보광동35-50~보광동33-10		'23년이후	B=15m,L=94m 1,410㎡	4,376						4,376						4,376	'23년이후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계	시비										구비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도로	100	이태원동41-14~이태원동11-17	'23년이후	B=15m,L=85m 1,275㎡				15,653										15,653 '23년이후
		도로	101	이태원동140-8~이태원동140-3	'23년이후	B=15m,L=108m 1,620㎡				20,082										20,082 '23년이후
		도로	102	이태원동20-11~보광동265-263	'23년이후	B=15m,L=390m 5,850㎡				53,250										53,250 '23년이후
		도로	103	보광동248-8~보광동246-2	'23년이후	B=15m,L=96m 1,440㎡				12,083										12,083 '23년이후
		도로	104	보광동217-20~보광동244-8	'23년이후	B=15m,L=332m 4,980㎡				54,694										54,694 '23년이후
		도로	105	보광동216-4~주성동42-23	'23년이후	B=15m,L=462m 6,930㎡				59,666										59,666 '23년이후
		도로	106	서빙고동183-5~동빙고동37-8	'23년이후	B=15m,L=532m 7,980㎡				69,586										69,586 '23년이후
		도로	107	서빙고동100~서빙고동82-1	'23년이후	B=15m,L=64m 960㎡				3,409										3,409 '23년이후
		도로	108	한남동642-17~한남동568-237	'23년이후	B=15m,L=532m 7,890㎡				68,867										68,867 '23년이후
		도로	109	동빙고동27-2~동빙고동31-2	'23년이후	B=15m,L=164m 2,460㎡				10,281										10,281 '23년이후
		도로	110	보광동259-4~보광동264-88	'23년이후	B=18m,L=161m 2,898㎡				23,040										23,040 '23년이후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계	시비	구비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도로	111	보광동265-1021~한남동732-152	'23년이후	B=12m,L=159m 1,908㎡	15,169						15,169									'23년이후
도로	112	이태원동15-66~이태원동136-1	'23년이후	B=8m,L=207m 1,656㎡	13,403						13,403									'23년이후
도로	113	한남동686-22~한남동685-22	'23년이후	B=8m,L=79m 632㎡	1,961						1,961									'23년이후
도로	114	보광동3-86~보광동265-234	'23년이후	B=12m,L=536m 6,432㎡	53,590						53,590									'23년이후
도로	115	한남동568-177~보광동3	'23년이후	B=12m,L=306m 3,672㎡	29,177						29,177									'23년이후
도로	116	한남동647-39~한남동686-42	'23년이후	B=12m,L=742m 8,904㎡	76,670						76,670									'23년이후
도로	117	보광동265-177~보광동269-12	'23년이후	B=8m,L=152m 1,216㎡	10,742						10,742									'23년이후
도로	118	보광동265-916~보광동265-694	'23년이후	B=10m,L=84m 840㎡	6,998						6,998									'23년이후
도로	119	한남동763-18~한남동620-171	'23년이후	B=6m,L=520m 3,120㎡	25,992						25,992									'23년이후
도로	120	한남동732-226~한남동732-19	'23년이후	B=6m,L=109m 654㎡	2,107						2,107									'23년이후
도로	121	한남동568-514~보광동1-15	'23년이후	B=6m,L=102m 612㎡	5,098						5,098									'23년이후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주차장 1	한남동611-20	'22년이후 면적: 597.68㎡ 규모: 16대	123	123									123	'22.1.16.	
주차장 2	한남동569-6일대	'23년이후 4,045㎡	36,525				36,525						36,525	'23년이후	
주차장 3	한남동732-189일대	'23년이후 1,649㎡	13,918				13,918						13,918	'23년이후	
공원 1	한남동678 (한남근린공원)	'18- '20 A=28,197㎡	227,553	227,553	227,553				90,000	91,000	46,553			'20.6.30	
공원 2	이촌1동301-86(꿈나무소공원)	'19 A=1,412.6㎡	5,735	5,735	5,735					5,735				'20.6.30	
공원 3	이촌1동301-60 (이촌소공원)	'19 A=1,736.9㎡	10,831	10,831	10,831					10,831				'20.6.30	
공원 4	서계동226-3 (청파어린이공원)	'19- '20 A=5,879㎡	15,653	15,653	15,653					15,084	569			'20.6.30	
공원 5	동자동8 (세꽃어린이공원)	'19 A=1,828㎡	245	245	245					245				'20.6.30	
공원 6	용산동6가69-163 (동빙고근린공원)	'19- '20 A=55,740.7㎡	142,185	142,185	142,185					141,700	485			'20.6.30	
공원 7	원효로3가-139 (늘푸른어린이공원)	'19 A=2,300㎡	2,559	2,559	2,559					2,559				'20.6.30	
공원 8	한강로1가20-1 (한강로도시환경정비구역소공원)	'19 A=5,580.5㎡	78,160				78,160			78,160				'20.6.30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민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공원	9	한강로1가187-4 (한강로도시환경정비구역 어린이공원)	'22년이후	A=1,820㎡	24,282							24,282						'22년 이후	24,282	'31.10.1 2
공원	10	한강로27363-1 (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 근린공원)	'22년이후	A=6,043.2㎡	316,562							316,562							316,562	'26.1.18
공원	11	한강로3763-113 (국제빌딩주변도시환경정비구역 문화공원)	'22년이후	A=17,635.3㎡	461,549							461,549							461,549	'26.4.19
공원	12	한강로3가 65-325 (정류장부지특계구역(로공원))	'19	A=1,079㎡	34,366							34,366			34,366					'30.12.1
공원	13	한남동732-23일대 (문화공원)	'23년이후	8㎡	74						74								74	'23년이후
공원	14	보광동8-3일대 (어린이공원)	'23년이후	1,612㎡	13,637						13,637								13,637	'23년이후
공원	15	동빙고동57-5일대 (어린이공원)	'23년이후	1,913㎡	15,822						15,822								15,822	'23년이후
공원	16	한남동137-22일대 (소공원)	'23년이후	280㎡	2,890						2,890								2,890	'23년이후
공원	17	한남동766-2일대 (소공원)	'23년이후	4,645㎡	35,683						35,683								35,683	'23년이후
공원	18	한남동732-126일대 (문화공원)	'23년이후	4,045㎡	34,219						34,219								34,219	'23년이후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공원	19	한남동620-171일대 (문화공원)	'23년이후	6,135㎡	51,900						51,900								51,900	'23년이후
공원	20	보광동35-13일대 (어린이공원)	'23년이후	5,973㎡	50,529						50,529								50,529	'23년이후
공원	21	한남동568-105일대 (소공원)	'23년이후	2,575㎡	21,783						21,783								21,783	'23년이후
공원	22	한남동561-1일대 (소공원)	'23년이후	2,276㎡	19,254						19,254								19,254	'23년이후
녹지	1	한강로3740일대 (경원선철도변녹지)	'19- '20	A=7,582㎡	64,727					64,727					62,832	1,895				'21.7.10
녹지	2	한강로2712-344일대 (한강로제1 녹지)	'19- '20	A=2,829㎡	13,566					13,566					12,859	707				'21.7.10
녹지	3	서빙고동155일대 (반포녹지)	'19	A=7,800㎡	11,400									11,400						'20.6.30
녹지	4	한남동321-3일대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	'20	A=3,562㎡	952					952						952				'22.1.14
녹지	5	서빙고155일대 (완충녹지)	'21년~ '22년	7,800㎡(5,796㎡)	11,008														11,008	'21년~ '22년
녹지	6	동빙고동32-18일대 (연결녹지)	'23년이후	11,811㎡	107,339														107,339	'23년이후
녹지	7	보광동265-43일대 (연결녹지)	'23년이후	5,423㎡	46,657														46,657	'23년이후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효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우선 순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녹지	8	주성동15-1일대 (경관녹지)	'23년이후	2,587㎡	26,083					26,083									'23년이후
녹지	9	보광동35-16일대 (경관녹지)	'23년이후	2,452㎡	21,466					21,466									'23년이후
공공공지	1	용문동56-4일대	'18	A=155㎡	1,254		1,254			1,254				1,254					'20.6.30
공공공지	2	보광동66일대	'23년이후	6,218㎡	55,203					55,203									'23년이후
공공공지	3	서빙고동87일대	'23년이후	4,607㎡	39,703					39,703									'23년이후
공공공지	4	서빙고동157-4일대	'23년이후	5,253㎡	18,123					18,123									'23년이후
학교	1	보광동265-284일대	'23년이후	12,403㎡	62,198					62,198									'23년이후
학교	2	한남동647-36일대	'23년이후	10,763㎡	112,577					112,577									'23년4월
학교	3	보광동168-4일대	'23년이후	53,565㎡	23,049					23,049									'23년이후
공공청사	1	보광동245-3일대	'23년이후	247㎡	4,370					4,370									'23년이후
공공청사	2	보광동265-124일대 (주민센터)	'23년이후	1,411㎡	18,321					18,321									'23년4월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7~2026)											비고 (실용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위 치 (또는 사업명)	사업 기간	주요내용	총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 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7	'18	'19	'20	'21	'22년 이후			
공공청사	3	주성동43-41일대 (주민센터)	'23년이후	990㎡	9,371				9,371								9,371	'23년이후	
공공청사	4	주성동42-19일대 (소방파출소)	'23년이후	800㎡	7,233				7,233								7,233	'23년이후	
사회복지 시설	1	한남동107-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증축)	'20년이후	142㎡ 증축	985		985										985	'20년이후	
사회복지 시설	2	보광동247-11일대	'23년이후	258㎡	3,295				3,295								3,295	'23년이후	
사회복지 시설	3	보광동265-999일대 (종합사회복지관)	'23년이후	1,293㎡	16,518				16,518								16,518	'23년이후	

◆ 성북구공고 제2018-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02-161호(2002.05.10.)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하월곡동 28-5 ~ 28-21간 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도로과 (☎ 02-2241-3546)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하월곡동 28-5 ~ 28-21간 도로개설사업	하월곡동 28-5 ~ 28-21	B = 6m L = 15m	서울시 고시 제2002-161호 (2002.05.10.)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19.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10층 도로과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28-5 ~ 28-21간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하월곡동 28-26	대	96	96	김운섭	성북구 동소문로284, 1210호 (하월곡동, 김음서희스타힐스)					28-5에서 분할
					한갑순	성북구 화랑로9길 24(하월곡동)	월곡 새마을금고	성북구 화랑로11길 36 (하월곡동)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28-5 ~ 28-21간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28-5	건물	연와조/세멘기와	지층 : 8.26 1층 : 41 담장 1식		김운섭	성북구 동소문로284, 1210호 (하월곡동, 김음서희스타힐스)				
						한갑순	성북구 화랑로9길 24(하월곡동)	월곡 새마을금고	성북구 화랑로11길 36 (하월곡동)	근저당권	

◆ 은평구공고 제2018-38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 제2014-55호(2014.02.20),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 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으로 결정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 01. 12 ~ 2018. 01. 25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05)

다. 공람내용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2,985.2	-	792,985.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 계		792,985.2	-	792,985.2	100.0	
주거 용지	소 계	518,783.3	증) 27,891.6	546,674.9	68.9	
	공동주택	452,035.9	증) 24,160.0	476,195.9	60.1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29,765.8	증) 4,340.2	34,106.0	3.7	체육시설 복합화
	주택용지	145.0	-	145.0	0.1	
	유 치 원	2,882.4	감) 608.6	2,273.8	0.3	
	종교용지	6,915.7	-	6,915.7	0.9	
존 처		13,353.5	-	13,353.5	1.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74,201.9	감) 27,891.6	246,310.3	31.1	
	도 로	108,547.3	증) 1,599.6	110,146.9	13.9	변경 및 신설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공 원	39,983.7	감) 4,936.9	35,046.8	4.4	1개소 폐지
	녹 지	23,783.6	-	23,783.6	3.0	
	광 장	2,513.3	감) 1,436.3	1,077.0	0.1	1개소 폐지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폐지
	열공급설비	【4,936.9】	감) 【4,936.9】	-	-	폐지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 전 소	8,486.0	감) 7,944.0	542.0	0.1	건축물 내부(지하)에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69,434.3	감) 12,980.0	56,454.3	7.1	1개소 폐지
	사회복지시설	4,256.3	-	4,256.3	0.5	
	도 서 관	3,781.0	-	3,781.0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0.5)	

※ 【 】는 중복결정 면적 등임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13,552호 / 36,938인

구분		계획세대(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19	증) 533	13,552	35,498	증) 1,440	36,938	-
촉진 구역	소계	12,772	-	12,772	34,485	-	34,485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1,157	-	1,157	3,124	-	3,124	
	40-50㎡	958	-	958	2,587	-	2,587	
	50-60㎡	3,348	-	3,348	9,039	-	9,039	
	60-85㎡	5,844	-	5,844	15,779	-	15,779	
	85㎡ 초과	1,465	-	1,465	3,956	-	3,956	
존치정비 구역	공동주택	-	-	-	-	-	-	수색1 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리 구역	공동주택	-	증) 533	533	-	증) 1,440	1,440	2.7인/세대
존치지역		247	-	247	1,013	-	1,013	-

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육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서고제30호 (75.02.21)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0	서고제50호 (82.02.03)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583.0	-	17,583.0	서고제10호 (79.01.10)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0	-	서고 제2008-173호	

- 교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학교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 (감 12,980㎡)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2)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3) 공공청사 : 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5) 문화시설 : 변경없음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도시자연 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 (지구내2,704)	-	1,510,558 (지구내2,704)	
생활권 공원	근린 공원	1 개소		23,130.9	감) 4,936.9	18,194.0	
		2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어린이 공원	4 개소		9,632.8	-	9,632.8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2 개소		4,516.0	-	4,516.0	
		소공원	1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2		수색동 361-10 일대	3,580.0	-	3,580.0	

구분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 녹지		1 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 녹지		4 개소	17,409.5	—	17,409.5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080.6	—	6,080.6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324.9	—	5,324.9	
	경관 녹지		3 개소	3,359.0	—	3,359.0	
		2	수색동 354-4대 일대	515.0	—	515.0	
		3	수색동 129-3학 일대	243.0	—	243.0	
		5	수색동 321임 일대	2,601.0	—	2,601.0	

마) 교통계획 : 변경없음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 주택재개발사업부문 : 변경없음

(2)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변경없음

(3)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수색동	366-11	0.4	60%	400%이하	24층(104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2	수색동	106-1	0.4	60%	78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3	수색동	102-20	0.3	60%	75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폐지	4	수색동	160-1	1.1	60%	370%이하	25층(104m이하)	2	복합용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	수색동	32.1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7	수색동	369-3	0.4	60%	350%이하	33층(130m이하)	2	복합용도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	792,985.2	－	792,985.2	
재정비 촉진 구역	합 계		－	695,380.8	감)11,376.1	694,004.7	
	주 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898.0	－	61,898.0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6,062.0	－	66,062.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 일대	31,796.6	－	31,796.6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998.0	－	29,998.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458.6	－	36,458.6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 일대	69,681.0	－	69,681.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	78,755.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 일대	112,694.3	－	112,694.3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 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 일대	3,704.0	－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	2,961.0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60－1 일대	11,376.1	감)11,376.1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 일대	3,163.0	－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 일대	4,453.0	－	4,453.0	
존치정 비 구역	합 계		－	40,966.9	감)40,966.9	－	
	지구단위 계획	수색2존치정비구역	수색동 160 일대	40,966.9	감)40,966.9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 리 구역	합 계		－	56,637.5	－	108,980.5	
	지구단위 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 160 일대	－	증)52,343.0	52,343.0	신설
	존치	존치	－	56,637.5	－	56,637.5	존치건축물

※ 존치관리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을 폐지,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통합관리

※ 기존 존치지역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 APT, 문영APT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 (2)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3)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4) 수색1존치관리구역(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및 수색2존치정비구역 : 폐지)

구분			면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수색2 존치정비구역	소계			수색1 존치관리구역
계			11,376.1	40,966.9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351.1	40,966.9	52,318.0	-	52,318.0	99.9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5,683.0	29,576.6	35,259.6	감) 5,683.0 (감) 35,259.6)	29,576.6 (-)	56.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0.0	470.0	- (감) 470.0)	470.0 (-)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2.0	52.0	- (증) 28,288.0)	52.0 (28,340.0)	0.1 (54.1)
	준주거지역		5,668.1	10,868.3	16,536.4	증) 5,683.0 (증) 7,441.6)	22,219.4 (23,978.0)	42.4 (45.8)
일반상업지역			25.0	-	25.0	-	25.0	0.1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는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면적 및 비율임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 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수색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6.83이하	18.5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4	267.9이하	19.9이하/30이하	92이하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 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수색7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55이하	17.5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이하	18.6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4.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39.9이하	-/22이하	85이하	
폐지	수색10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280.0	370이하	-/25이하	104이하	수색1존치 관리구역편 입에 따른 폐지
기정	수색1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1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0이하	14.8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촉진구 역	2-1,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247.7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이하	18.1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이하	19.7이하/30이하	92이하	
폐지	수색2존치정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	수색1존치 관리구역편 입에 따른 폐지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1) 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5,715.9	감) 19,947.6	245,768.3	
도로	108,547.3	증) 1,599.6	110,146.9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공원	39,983.7	감) 4,936.9	35,046.8	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
녹지	23,783.6	-	23,783.6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광장	2,513.3	감) 1,436.3	1,077.0	2개소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열공급설비	【4,936.9】	【 감) 4,936.9】	-	-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수색 ~ 향동(기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69,434.3	감) 12,980.0	56,454.3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56.3	-	4,256.3	6개소
도서관	3,781.0	-	3,781.0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1개소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1개소

※ 【 】는 중복결정 면적 등임

※ ()는 북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 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분담률(%) B/A	비고
합 계		684,004.7	184,924.4	42,321.9	61,845.1	401	86,904	12.7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0	
기정	수색4	61,898.0	13,606.0	2,313.0	7,051.0	-	7,581.0	12.3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6,062.0	18,346.0	5,227.0	6,090.0	401	6,628.0	10.0	
기정	수색7	31,796.6	6,434.6	1,963.0	-	-	4,468.6	14.1	
기정	수색8	29,998.0	9,132.0	2,652.0	2,813.0	-	3,667.0	12.2	
기정	수색9	36,458.6	9,119.9	1,023.6	1,729.0	-	6,367.3	17.5	
폐지	수색10	-	-	-	-	-	-	-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	315.0	10.0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681.0	14,280.0	2,375.0	7,698.0	-	7,418.6	10.6	
기정	증산2	78,755.2	23,154.1	7,057.8	7,699.6	-	8,396.7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694.3	31,699.8	6,420.5	10,574.5	-	14,704.8	13.0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 폐지(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	임대주택 전용면적					비고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기정	수색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2	-	-	-	-	-	시장정비사업
기정	수색3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4	203	84	84	3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5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6	208	88	97	2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7	112	45	45	2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8	99	40	40	1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9	135	57	54	20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10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2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3	278	106	87	8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2	237	114	99	2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4	595	228	228	13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5	292	120	121	5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2준치	-	-	-	-	-	지구단위계획
합계		2,159	882	855	418	4	

파)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2)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 폐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2016. 7. 7)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3)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4)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거)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너)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러) 기타특기사항 : 변경없음

5)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 변경없음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2,985.2	—	792,985.2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2,985.2	－	792,985.2	100.0	
소계			778,284.2	－	778,284.2	98.1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93.5	－	84,993.5	1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5,839.3	감) 5,683.0 (감) 35,259.6)	150,156.3 (120,579.7)	18.9 (15.2)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930.2	－ (감) 470.0)	414,930.2 (414,460.2)	52.3 (52.2)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44.2	－ (증) 28,288.0)	74,744.2 (103,032.2)	9.4 (13.0)	
	준주거지역		47,777.0	증) 5,683.0 (증) 7,441.6)	53,460.0 (55,218.6)	6.8 (7.0)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	1.9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내용 반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156.3㎡ → 155,839.3㎡), 준주거지역 (53,460.0㎡ → 47,777.0㎡)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는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면적 및 비율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준치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 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442	21	집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21	집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 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기정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5	15~20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468	7.5	국지 도로	38	수색동 78-6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469	12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8~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 일원	수색동 150-20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수색동 146-13구 일원	수색동 146-13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2	수색동 77-5 일원	수색동 146-22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수색10정비구 역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변경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	-

※ 환원된 시설의 해당 폭원 및 연장 반영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 및 연장 확대
소로2-3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라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2)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도시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0 (지구내 2,767)	-	1,510,558.0 (지구내 2,767)	서고제513호 (83.09.29)	
폐지	2	근린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	-	18,194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어린이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80.0	-	3,580.0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나) 녹지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라) 광장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	광장	수색동 122-2 일대	489	-	489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	광장	수색동 131-1 일대	588	-	588	서고 제2008-173호	

※ 주1)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라 광장①은 기 폐지

(3) 유통·공급시설 : 변경

(가) 시장 : 변경없음

(나)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수색2존치정비구역 내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나)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30호 (75.02.21)	증산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 제2008-173호	연서중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904.0	감)321	17,583.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0.01.10)	수색초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	12,980.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호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 → 0㎡ (감 12,980㎡)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다) 도서관 : 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40,966.9	감) 40,966.9	-	2008.5.22 (서울시 제2008-173호)	-
신설	①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증) 52,343.0	52,343.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면적 : 40,996.9㎡ → 0㎡ (감 40,996.9㎡)	수색2 존치정비구역 폐지에 따른 수색변전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0㎡ → 52,343.0㎡ (증 52,343.0㎡)	기존 수색변전소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11,376.1㎡)을 포함하여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계	52,343.0	100.0	
도 로	7,320.6	14.0	
공동주택용지	24,160.0	46.2	
복합용지	20,862.4	39.8	• 체육시설 복합화 - 부지환산 면적 3,133㎡ - 대지지분면적 890㎡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2,318.0	－	52,318.0	99.9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259.6	감) 5,683.0 (감) 35,259.6)	29,576.6 (－)	56.5 (－)
		제2종일반주거지역	470.0	－ (감) 470.0)	470.0 (－)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	－ (증) 28,288.0)	52.0 (28,340.0)	0.1 (54.1)
	준주거지역		16,536.4	증) 5,683.0 (증) 7,441.6)	22,219.4 (23,978.0)	42.4 (45.8)
일반상업지역			25.0	－	25.0	0.1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는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면적 및 비율임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준치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	12,360 (2,540)	1,030 (210)	양측 12	서고 164호 (1982. 04. 22.)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64	15 (7.5)	국지 도로	212 (156)	수색동 160 일원	수색동 165-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변경	중로	2	465	15~20 (6)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7.5)	국지 도로	481 (367)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7.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7.5 (-)	국지 도로	38 (-)	수색동 77-10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변경	중로	2	468	15 (7.5)	국지 도로	50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일원	수색동 150-20도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35)	수색동 146-13구일원	수색동 146-13구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기정	소로	3	6	6 (6)	국지 도로	142 (142)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46-22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변경	소로	3	6	6~8 (6~8)	국지 도로	185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제2002-262호	

※ ()는 구역내 연장, 폭원 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0m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 및 연장 확대
소로2-3	-	도로 폐지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 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도로 폐지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 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라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②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근린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 → 0㎡ (감 4,936.9㎡)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③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④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수색2존치정비구역 내 근린공 원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난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⑤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	-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호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감 12,980㎡)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24,160.0	특별계획구역
	2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7,455.0	
	3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5,509.0	
A2	1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3,916.0	
	-	은평구 수색동 77-5대 일원	331.0	
A3	-	은평구 수색동 153-10대 일원	3,651.4	

② 공동개발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필지, 과소필지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지정이 필요한 경우	
	권장	가구형태의 정형화, 규모 있는 개발유도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권장이 필요한 경우	

③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50-19, 18-2, 19-6, 160, 160-1, 28-1, 23-13, 23-5, 23-3, 23, 19-5	특별계획구역	-
	2	은평구 수색동 160-1, 160, 28-1, 32-42, 30-6		
	3	은평구 수색동 160, 160-1	-	-
A2	1	은평구 수색동 150-20, 158-5, 146-17, 160, 154-50, 160-1	-	-
	-	은평구 수색동 77-4, 77-5, 78-6	공동개발(지정)	-
A3	-	은평구 수색동 153-12, 153-9, 153-10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 154-25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2, 154-14, 154-26, 154-48(일부)	공동개발(권장)	-
		은평구 수색동 154-16, 154-15, 154-27,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9, 154-18,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30, 154-5, 154-32, 154-1(일부),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4, 76-6(일부),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6(일부), 76-27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7,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3-17, 146-16, 154-2, 154-11	공동개발(권장)	-

④ 대지의 분할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획지분할 가능선	A2	1	은평구 수색동 160, 158-5	획지분할가능선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필지 분할가능선 지정
			은평구 수색동 160, 149-17	획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60	획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60-1, 154-50	획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60-1	획지분할가능선⑤	
필지분할 가능선	A3	-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①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⑤	
			은평구 수색동 76-6	필지분할가능선⑥	

※ A2(1)획지의 획지분할가능선은 전면부(A3(-), A2(-))필지와 공동개발시에만 적용가능

⑤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A3	2,500㎡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제외 • 계획적 필요에 의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적용된 대지 제외 • 자율적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 준수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A1	1	A/A'	• 주택법 제2조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A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A'	특별 계획 구역
	2	B/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B			
	3	C/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B'	
A2	1	D/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D			-
A3	-						

※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인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주1)}	용적률			용도지역	비고 ^{주4)}
가구	획지	용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주3)}		
A1	1	공동주택용지	50%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건립형 (특별계획구역)
	2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특별계획구역)
	3	한전 업무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A2	1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	복합용지	60%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A3	－	복합용지						

주1)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적용

주2)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3)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 α ×가중치) 이내

- α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순부담:총기반시설 면적-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주4)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 7.)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건립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주5)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필로티구조 : $\alpha=1.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침상형구조 : $\alpha=2.0$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개방형구조 : $\alpha=3.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개방형구조 : $\alpha=1.0$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A2(-), A3(-)	공동개발	공동건축(지정)	• 기준용적률×0.1× α	• 2~3필지 : $\alpha=0.8$ • 4~5필지 : $\alpha=0.9$ • 6필지 이상 : $\alpha=1.0$
		공동건축(권장)	• 기준용적률×0.08× α	
	이면부(A2(1))와 공동개발시		•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탑상형 건축물	• 저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0.15 • 고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0.1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0.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A2(-), A3(-)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A2(-), A3(-)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기준용적률×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기준용적률×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기준용적률×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기준용적률×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기준용적률×0.05 이내

③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최고층수	최고높이	
A1	1	25층 이하	77m 이하	특별계획구역
	2	30층 이하	92m 이하	
	3	30층 이하	92m 이하	
A2	1	-	40m 이하	
	-	-	40m 이하	
A3	-	-	40m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④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	• 중로2-464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특별계획구역
		• 중로2-466호선(15m) 도로변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2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2-468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A3	• 중로2-465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하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 도로변과 접해 있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으로 조성	
공개공지	• A1(2),A1(3) 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②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A1(2),A1(3) 획지 내 북측에 조성 • 규모 : 최대 4m 확보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수색역에서 봉산 및 도서관으로의 연계 강화 - 인접한 수색6구역 및 수색9구역 등과의 보행연결 도모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상부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성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③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 간선부 및 이면부 일부구간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①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	증) 31,615	31,615	-

-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31,615	용도지역의 변경,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복합기능(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수용 등 수색변전소부지 일원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A1(1) 획지	A1(2) 획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확보		- 도로 및 체육시설 - 종전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확보 - 체육시설은 건축물로 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	
용도	지정	-	
	불허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구분		계획내용	
		A1(1) 획지	A1(2) 획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용도	권장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 • 주택법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 주택법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기준/허용/상한)		170% / 190% / 250% 이하	200% / 330% / 4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77m 이하	최고높이 9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교통처리계획		• 중로 2-464, 2-466, 2-467호선 변 일부구간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구간 지정	
기타	공개공지	• A1(2)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6m) 및 보도 조성(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공공보행통로	• A1(2)획지 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최대 폭4m)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권장용도면적} / \text{연면적}) \times 0.2$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연면적}) \times 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구조 : $\alpha=1.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침상형구조 : $\alpha=2.0$
		건축한계선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설치면적} - \text{의무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1$	• 개방형구조 : $\alpha=3.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lpha$	•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제공면적} / \text{연면적}) \times 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 구역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 기준용적률×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 기준용적률×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 기준용적률×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 이내

③ 공공기여계획(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내용	비고
위치	• 은평구 수색동 160-1번지 - 수색1준치관리구역 A1(2)획지 내 설치	
용도	• 체육시설(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 수영장, 체력단력실 등)	비도시계획시설
규모	• 4,023㎡(부지환산면적 포함) - 연면적 : 4,755㎡ 이상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체육시설)은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관리청	• 은평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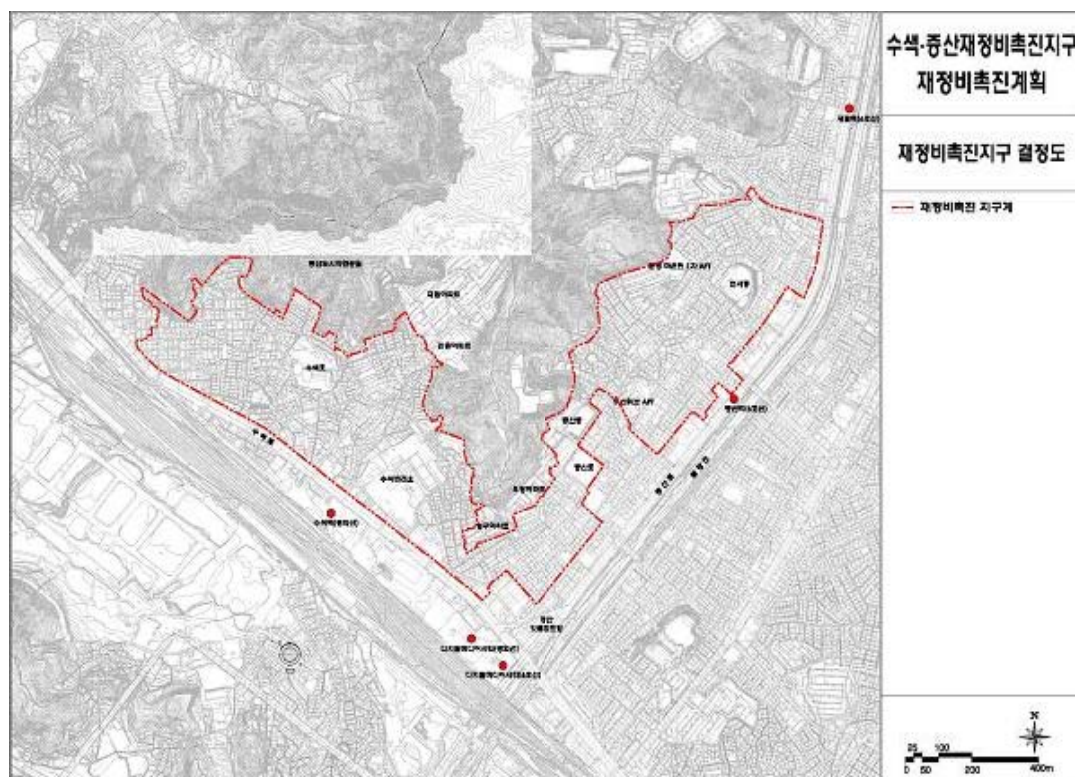
※ 체육시설 규모(4,023㎡)은 체육시설의 부지환산면적(3,133㎡)과 대지지분(890㎡)의 합산 면적으로 향후 건축허가시 부지가
액산정(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은 최소 40대 이상 확보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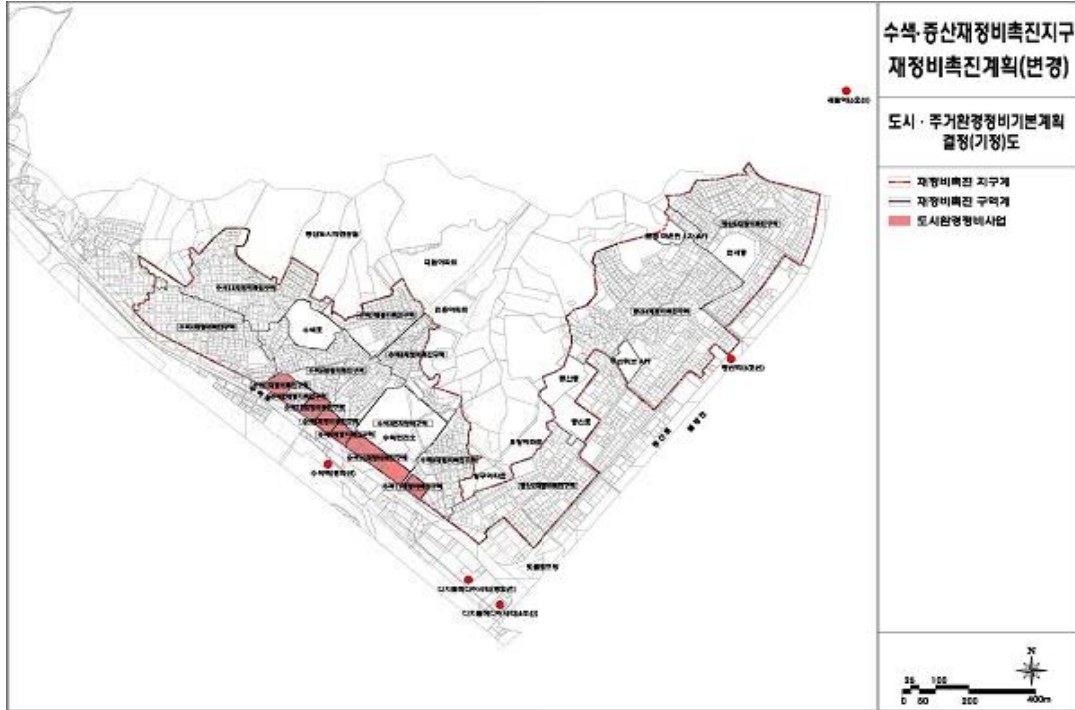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1)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수색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변전설비 사업을 시행한다(한전 및 서울시간 MOU(16.4.29.))
- 2)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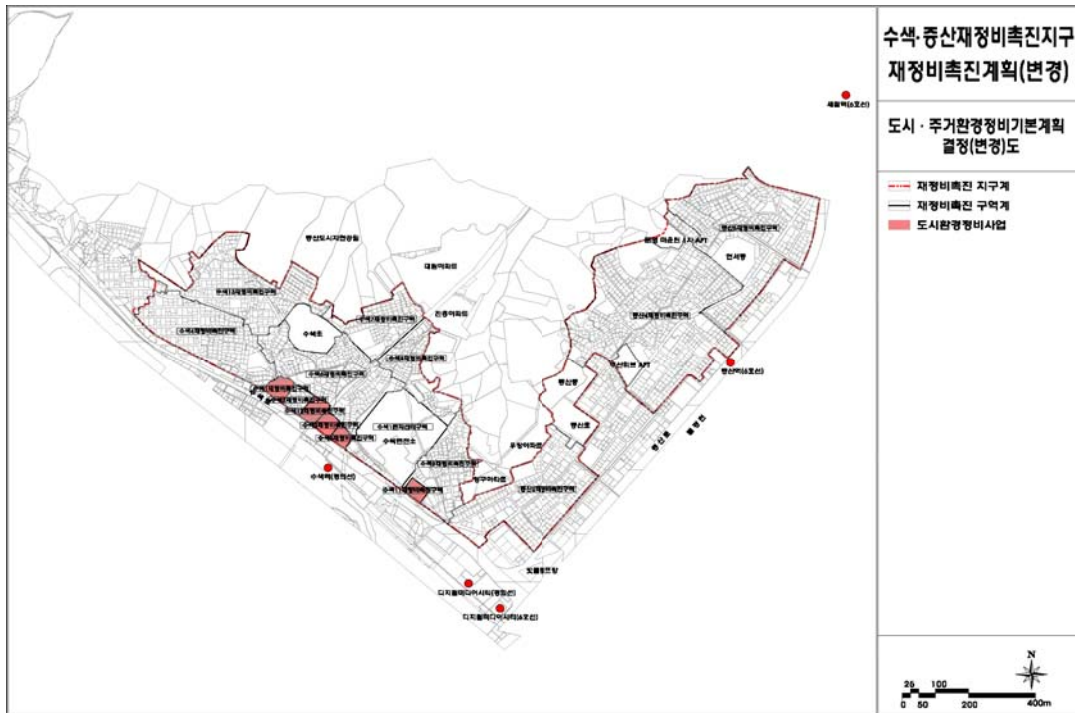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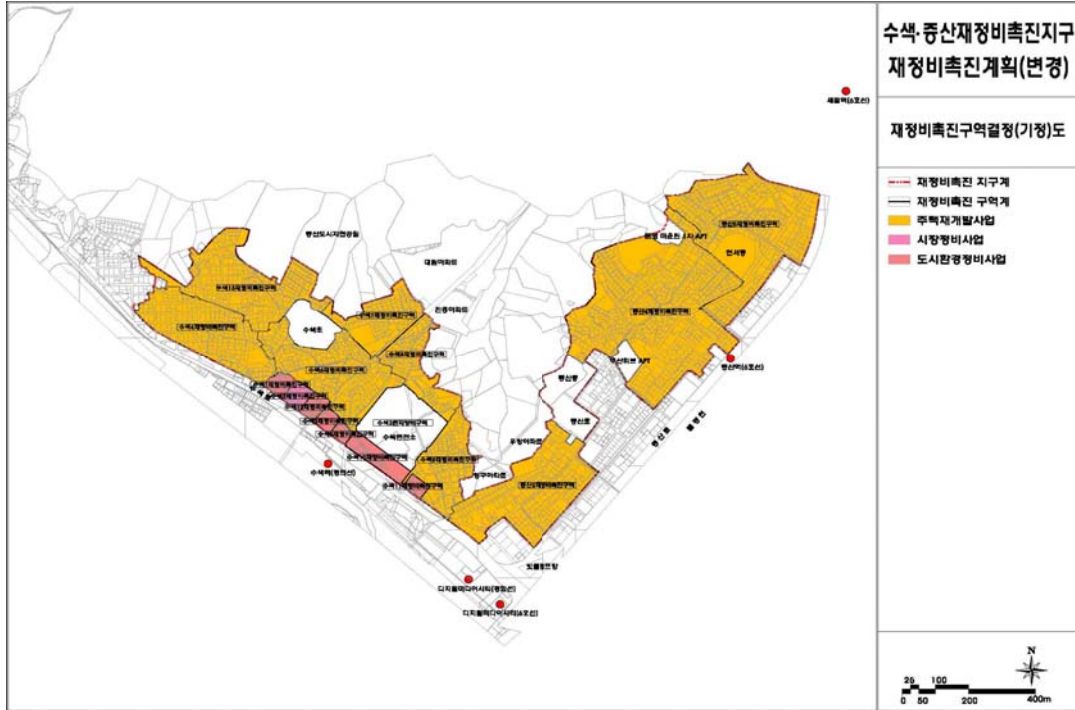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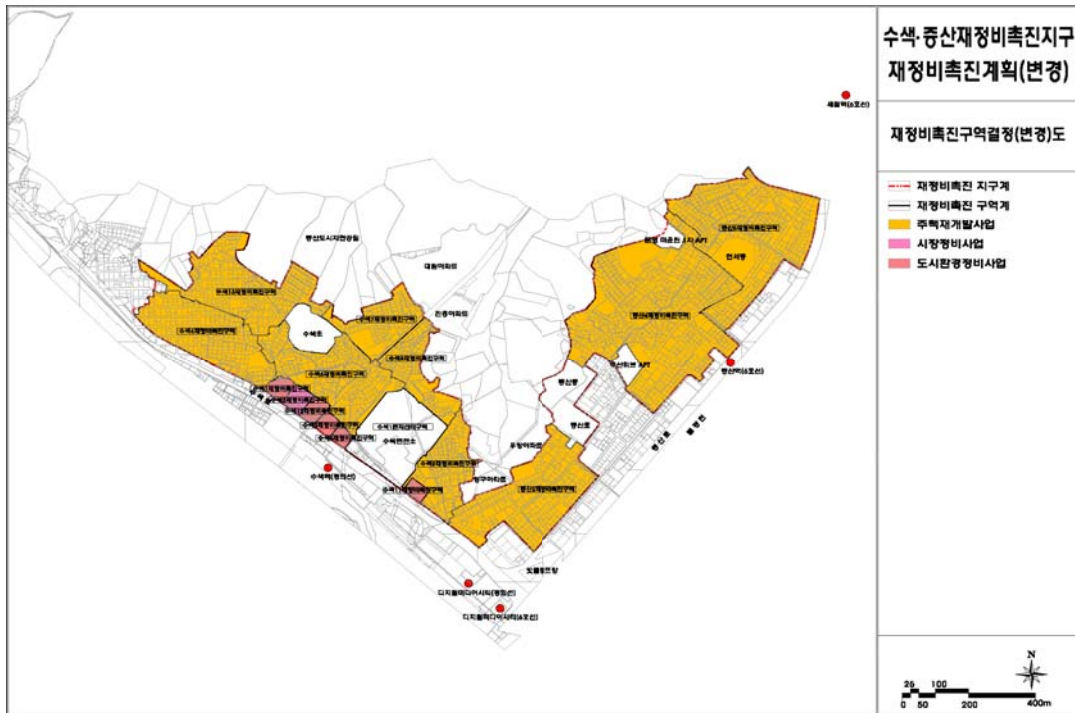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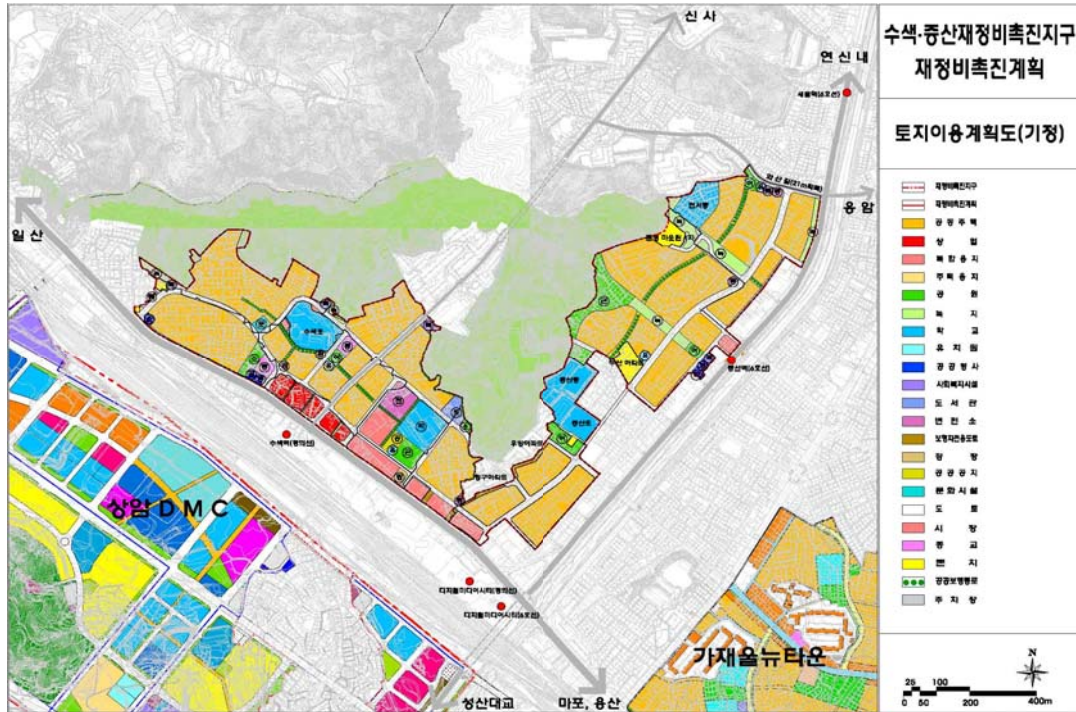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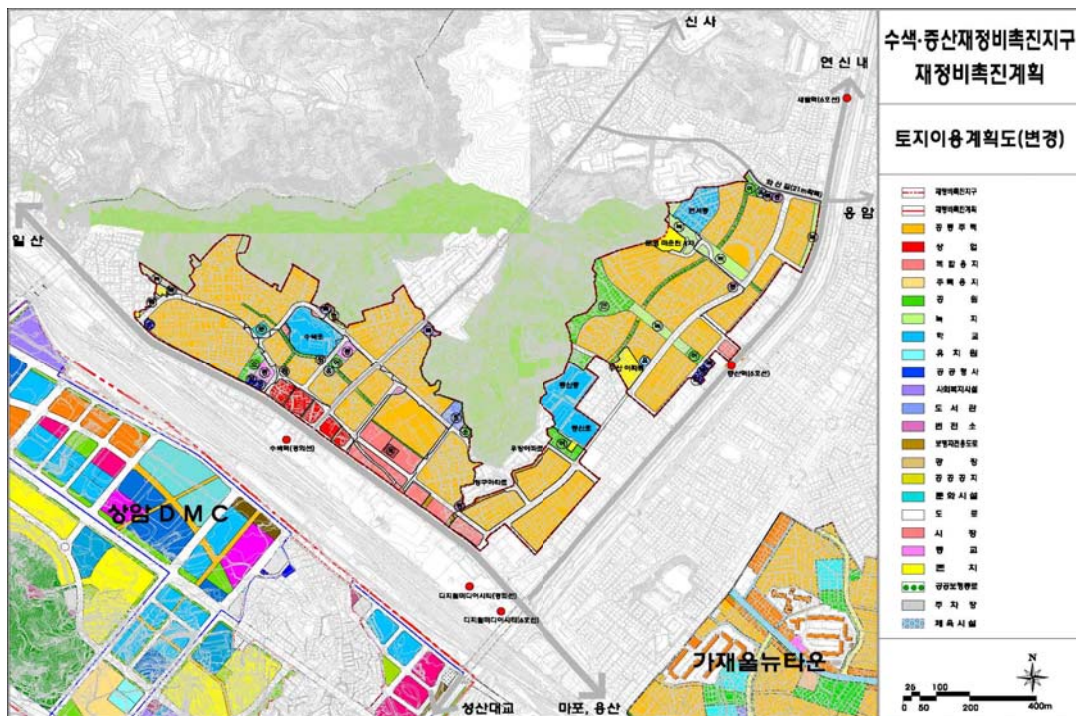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 토지이용계획도 :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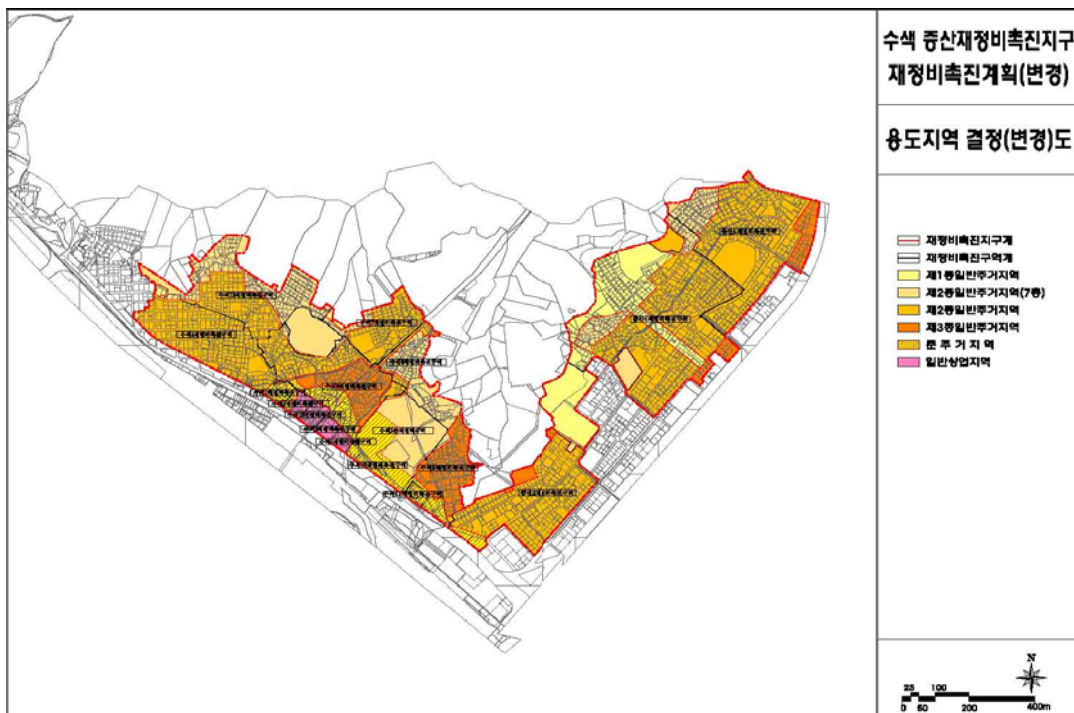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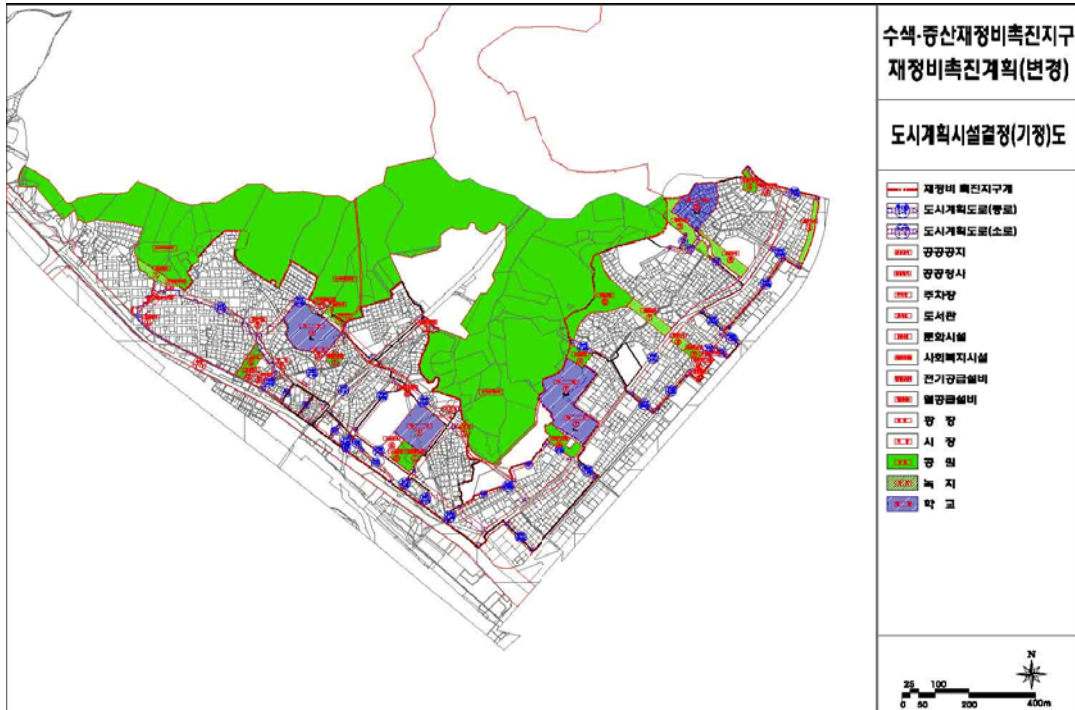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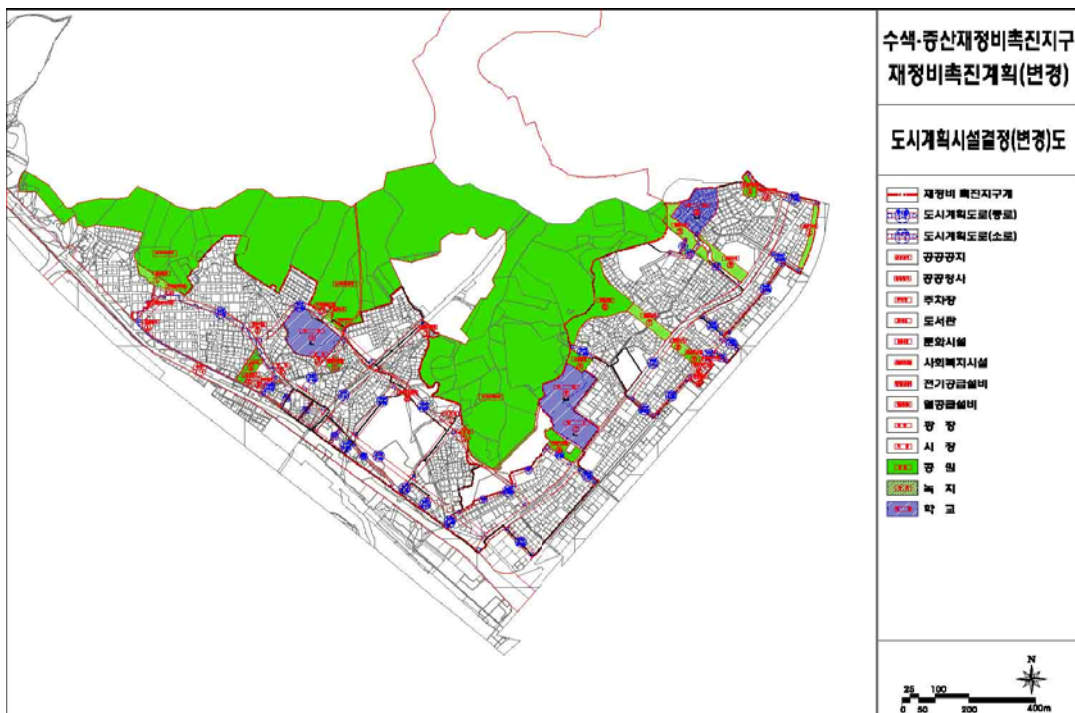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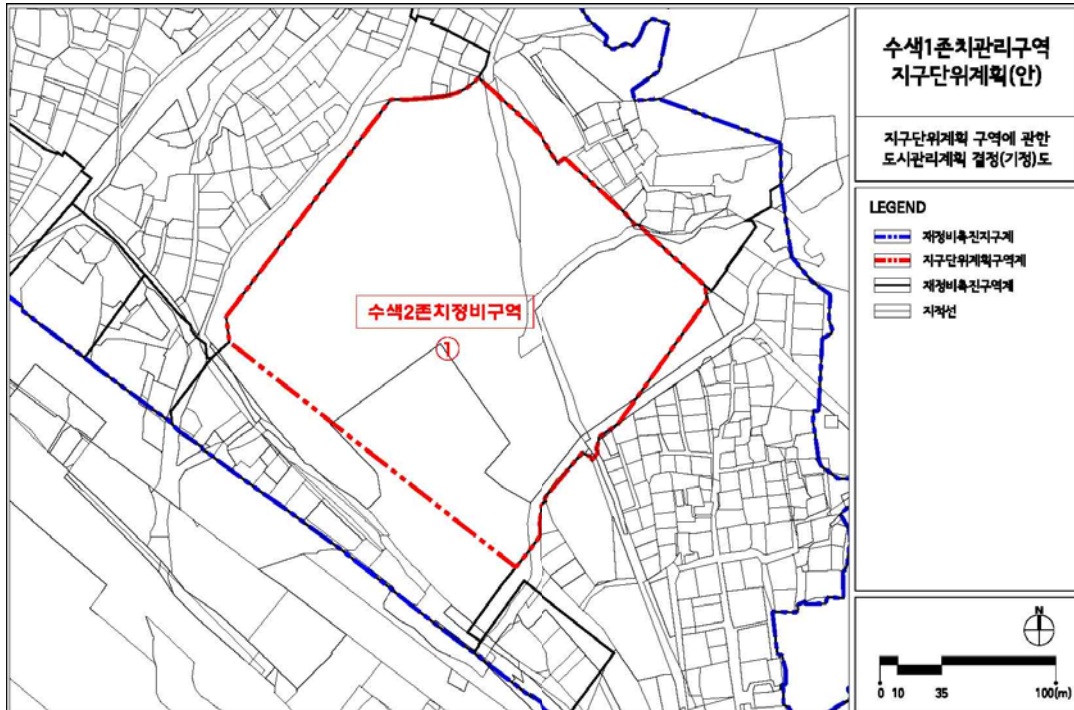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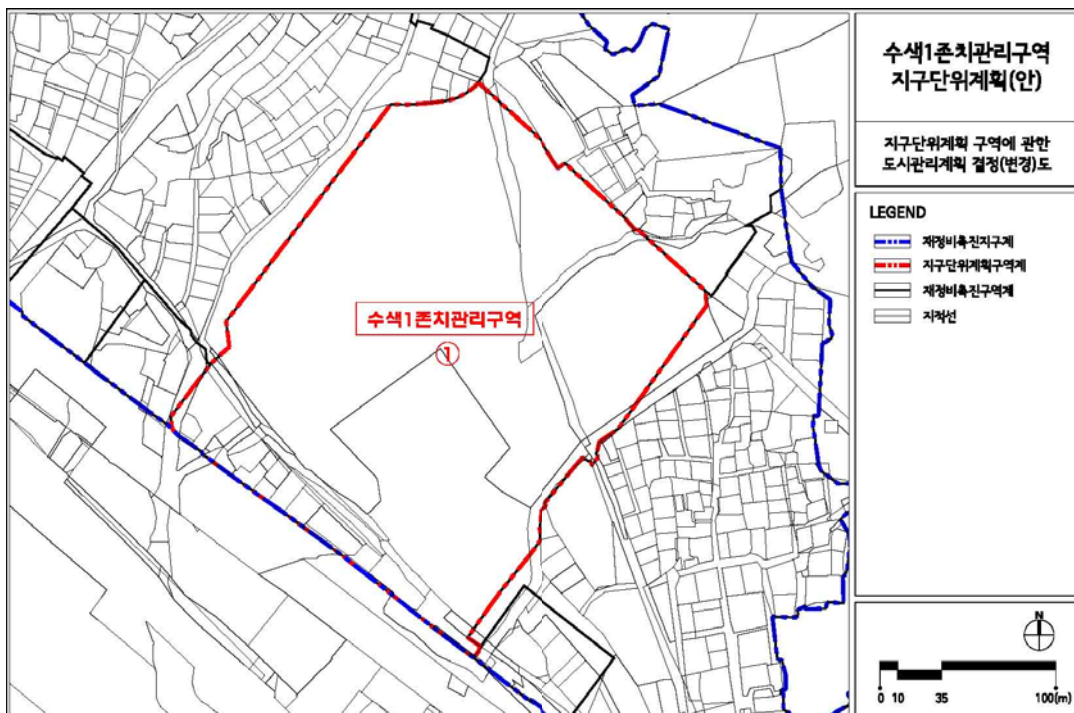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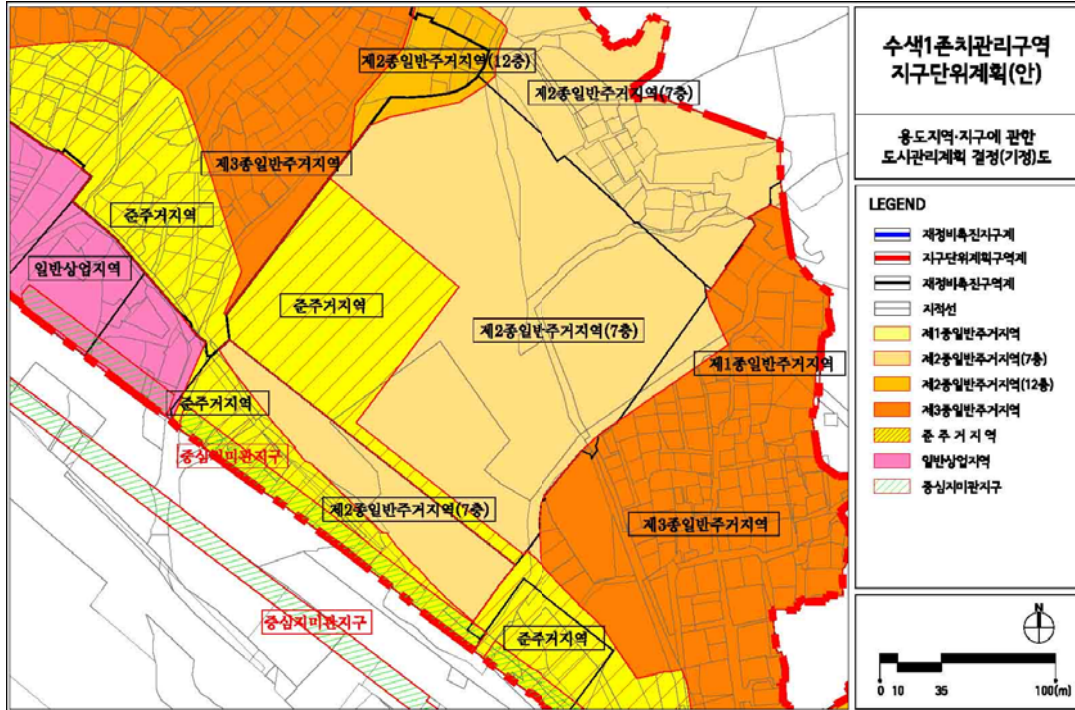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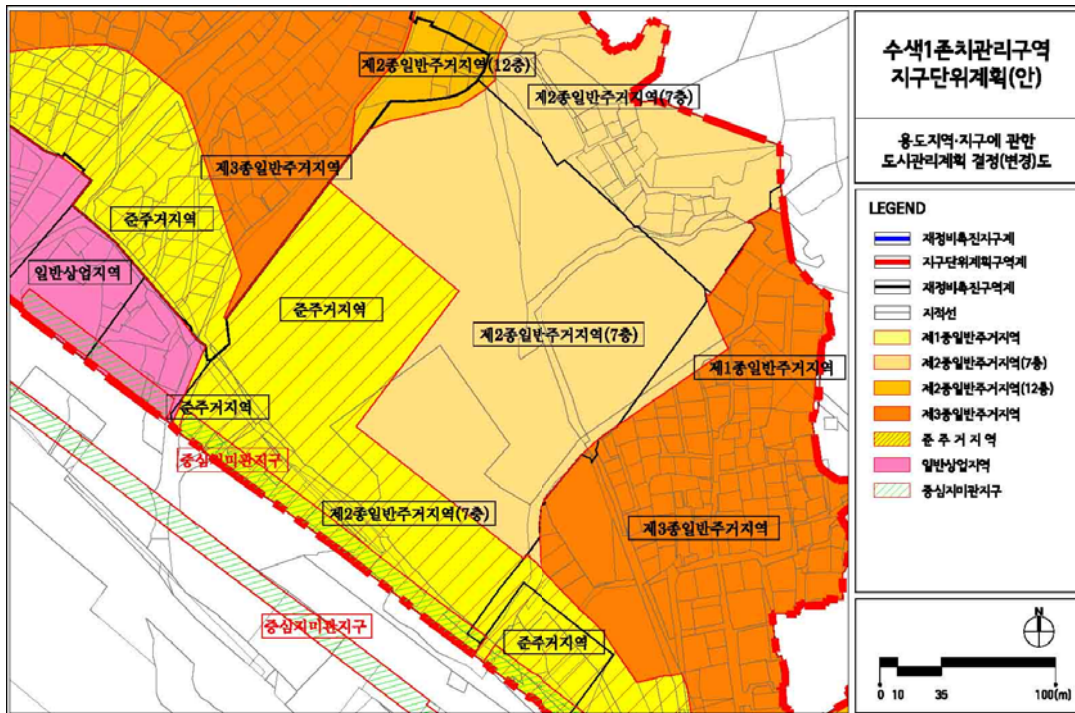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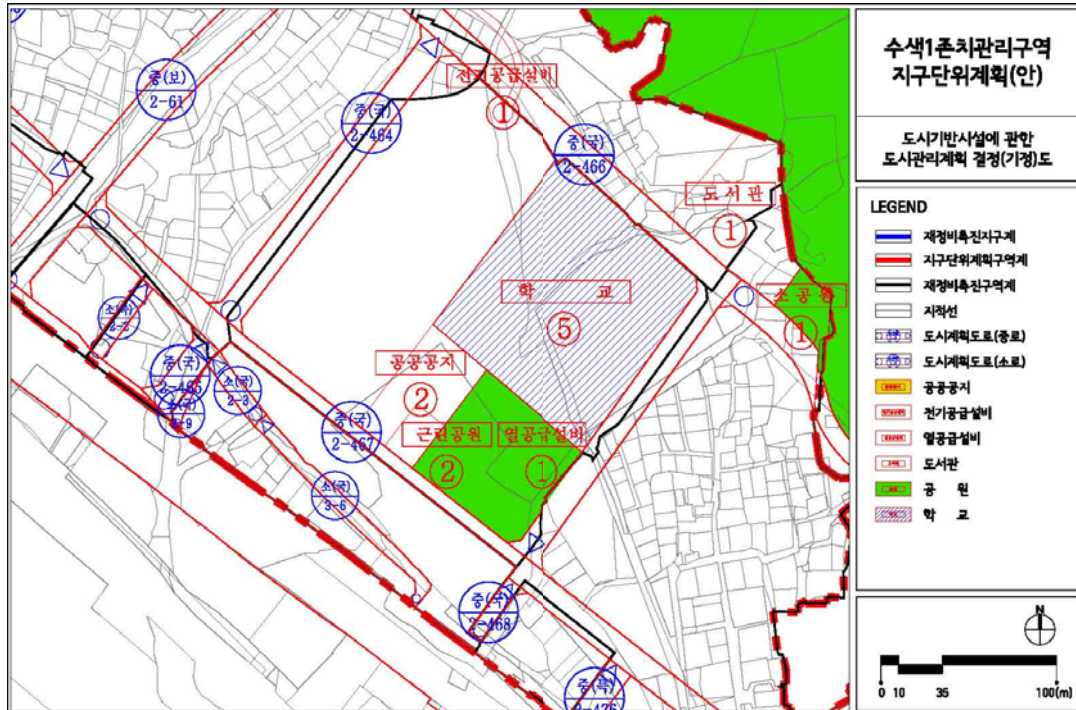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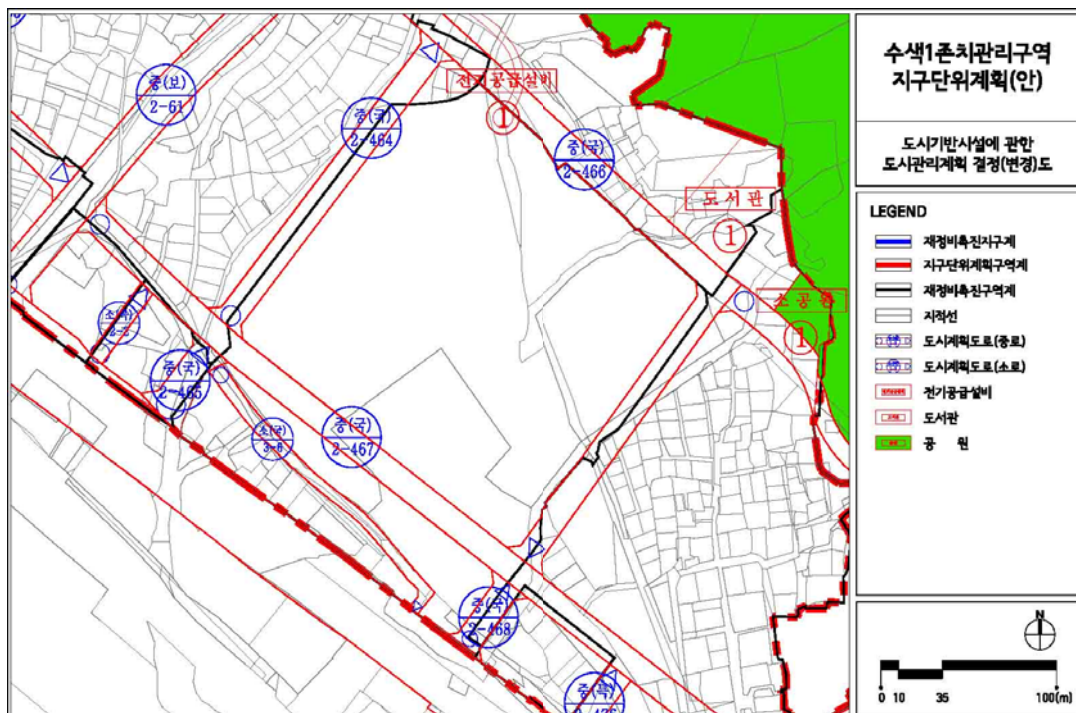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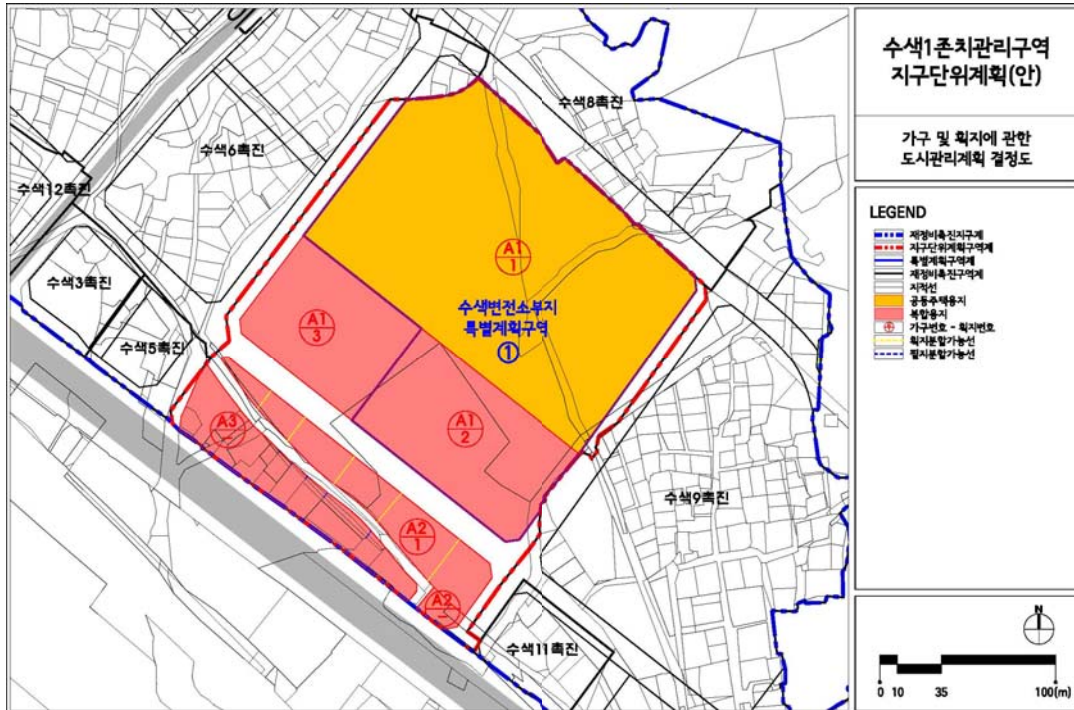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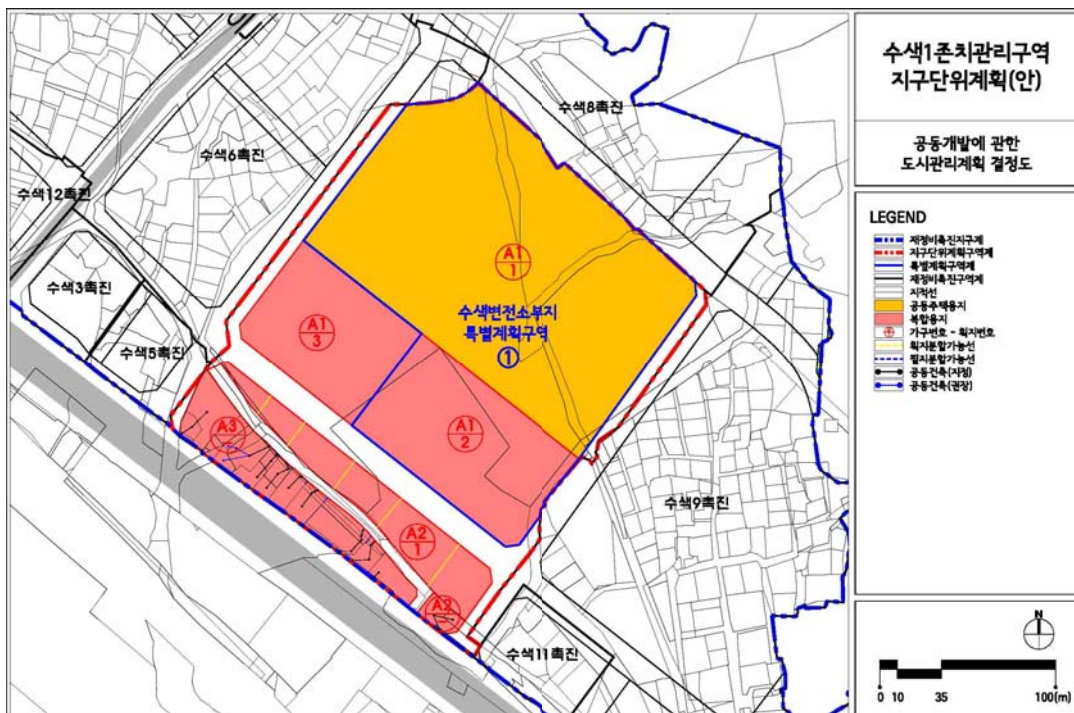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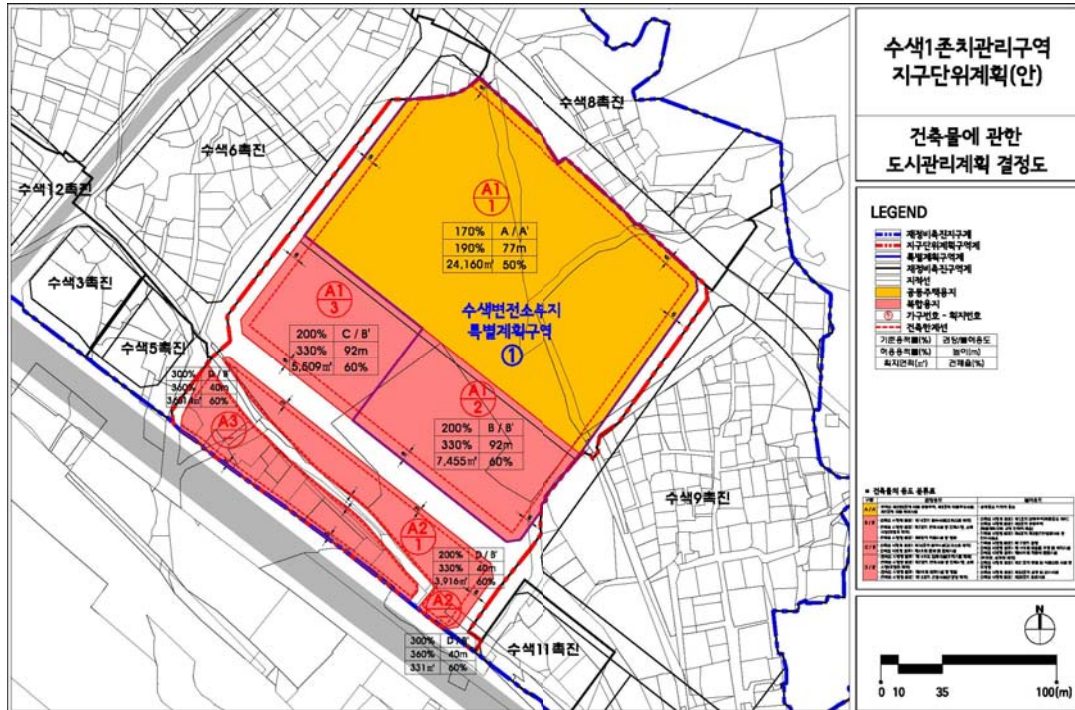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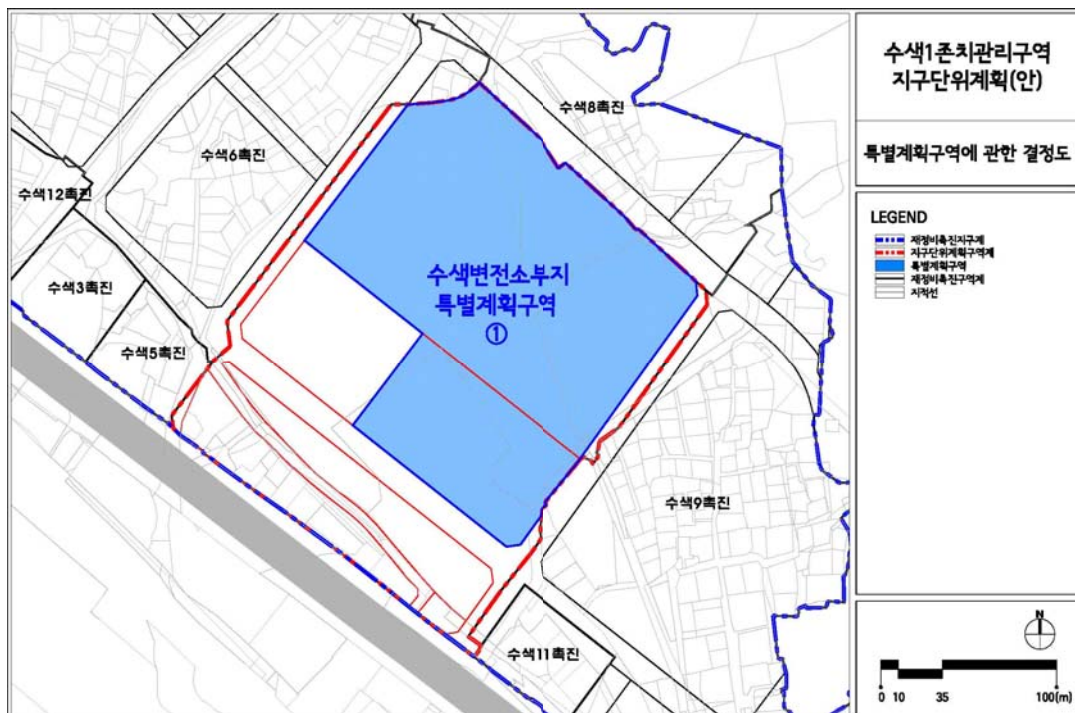
■ 공동개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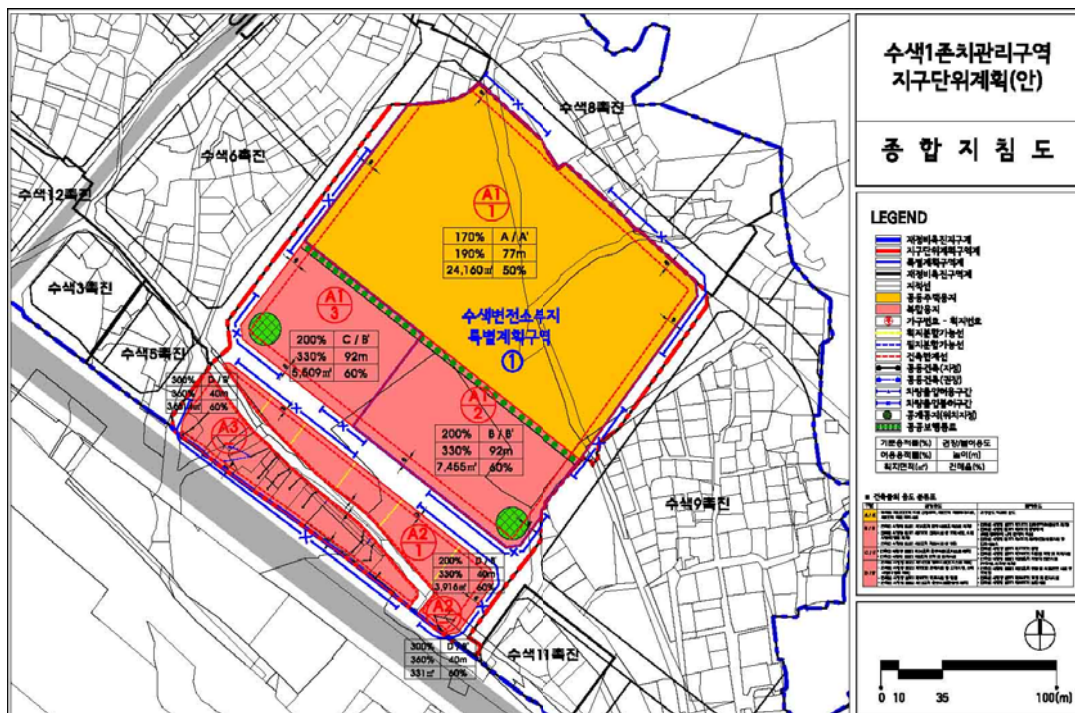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 종합지침도



◆ 금천구공고 제2018-18호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3호('08.5.29)로 결정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금천구공고 제2016-608호('16.6.16)로 열람공고 하였으나, '17.12.13. 개최된 2017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금 천 구 청 장

1.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련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	198,388	-	198,388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2. 2017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수정가결)

- 독산 4, 5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높이,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 상향시와 부합하지 않는 기반시설, 기타사항 등의 계획은 기정계획으로 변경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02-2627-2064)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 제출

- 본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2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8-75호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 특별계획구역Ⅲ,Ⅳ신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서초구청사(서초2동 1376-3)와 양재환승주차장(양재1동 23)의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III, IV신설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해 2017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1.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도시계획과로 의견 서면제출)
2.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서초2동, 양재1동 주민센터(☎02-2155-6793)
3. 열람내용 :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82,550	증)27,642	110,192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 (1996. 4. 13)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0,192	-	110,192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230	-	43,230	39.2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5,752	-	65,752	59.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8	-	1,078	1.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2	-	132	0.1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 공공청사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공공청사	-	서초동 1376-3	16,618.4	-	16,618.4	서울특별시 고시제1022호 (88.12.31)	서초구청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 5)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 7)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안)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310.8	증)24,591.1	30,901.9		-
기정	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	양재동 11-23 일대	4,472.6	-	4,47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86호 (2008. 5. 29)	-
기정	I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I	서초동 1363-13 일대	1,838.2	-	1,838.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18호 (2011. 5. 6)	-
신설	III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II	서초동 1376-3	-	증)16,618.4	16,618.4	-	-
신설	IV	양재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 IV	양재동 23	-	증)7,972.7	7,972.7	-	-

※ 양재환승주차장은 특별계획구역만 지정하고 추후 구체적 개발계획 검토후 지침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또는 구청홈페이지 참조)

◆ 강남구공고 제2018-4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287호(1981.07.30.)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145호(2016.11.03.)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논현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압구정역 3번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식회사 케이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나.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3번지 일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류장)사업
- 명 칭 : KT신사지사 복합시설 신축관련 지하철3호선 압구정역 3번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

라.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

1) 출입구 이설공사

- 규 모 : 폭원 38.1m, 길이 17.5m
- 면 적 : 499m²

2) 환기구 이설공사

- 규 모 : 폭원 12.3m, 길이 16.0m
- 면 적 : 132m²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3.1. ~ 2019.8.31.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6)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무상귀속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 등의 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사용면적	성명	주소
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3	대	850.1	8	(주)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		603-3	대	59.8	17		
3		610-6	대	1,429.1	490		
4		610-12	대	120.1	71		
5		668-37	대	276.1	45		
계				2,735.2	631	-	-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윤상덕 (파라다이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유선장 1,699㎡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8.
			유선 40척 - 모터보트 1척 - 오리보트 36척 - 구조선 3척		2018. 1. 1. ~ 2018. 2.28	
소문섭 (오엔)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2	유선장 1,350㎡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2척 전기, 상하수도 관로 178㎡			
(주)서울마리나 (대표:김종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유선장 3,418㎡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2척			
홍정희 (아리랑하우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유선장 1,321㎡ 임시승선대 150㎡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74척 (동력5, 무동력69) 상·하수도 관로 34.4㎡			
세븐마린레저 (대표 박명철)	서울시 도봉구 해동로 295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61	유선장 508.5㎡	유선사업	2018.1.1. ~ 2018.12.31.	2017. 12.29
			부대시설 338.4㎡			
			상·하수도 관로 29.4㎡			
		잠실대교 ~ 성산대교	유선 3척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화창레저산업 (대표 조현찬)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유선장 1,153㎡ 계류장 91㎡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2척			
			전기, 상·하수도 관로 53㎡			
(주)선스톤슈핑 (대표 신용석)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	유선장 3,030㎡	유선사업	2018. 1.1 ~ 2018.12.31	' 17.12.29
			유선 2척			
			상·하수도 관로 97㎡			
현대요트(주) (대표 이철웅)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5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33번지	유선장 1,457㎡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2척			
			상·하수도 관로 130㎡			
(주)시크릿 (대표 허승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번지	유선장 1,795.5㎡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유선 2척			
			장애인 진·출입로 152㎡			
			상·하수도 관로 211㎡			
씨에이글로벌(주) (대표 이수철)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유선장 295.34㎡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부대시설 1,346.4㎡			
		양화대교 ~ 성산대교	유선 6척			
(주)이랜드크루즈 (대표 송경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송파구 잠실동 1-2	잠실유선장 2,632.96㎡	유선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광진구 자양동 131	독섬유선장 3,295.27㎡			
		성동구성수동 1가 494-1	서울숲선착장 382.6㎡,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유선장2개소 3,515.96㎡			
		영등포구 양화동 47-1	양화선착장 1,852.33㎡			
		영등포구 양화동 95	선유도선착장 292.90㎡			
		마포구합정동 465-7	잠두봉선착장 797.55㎡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마포구 상암동 481	상암선착장 700.53㎡			
		잠실대교 ~ 가양대교	유람선 6척 청소방재선 1척			
(주)로잉코리아 (대표 김태석)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서울시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수상레저 선박 2척 - 모터보트 2척	수상레저 사업	2018. 1. 1 ~ 2018.12.31	2017. 12.29
(주)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수상레저 선박 6척 - 모터보트 3척 - 파워보트 1척 - 세일링요트2척	수상레저 사업	2018.1.1. ~ 2018.6.30.	2017. 12.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운항)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은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대표 이종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층 (녹번동 20동)	서초구 반포동 115-1 (한강상)	3,867.5㎡ (직접) 3,399.9㎡, 간접 467.6㎡)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도선장운영 및 수상레저활동	2018.1.1 ~ 2018.12.31 (365일간)	2018.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운항)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은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운항선박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대표 이종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층 (녹번동 20동)	잠실대교 ~ 서울시계간 (한강상)	수상관광 콜택시 9척 (5톤이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운항	2018.1.1 ~ 2018.12.31 (365일간)	2018.1.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대교 하류 ~ 동작대교 상류)	선박 13척	여의샅강 하상정비공사 선박운항	2018.01.08.~ 2018.05.18.	2018. 01.0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3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췌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서울시계내한강 (선유도~여의도)	선박 7척 (기선2척, 부선5척)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성화봉송 축하행사	2018.01.14. ~ 2018.01.17.	2018. 01.08.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09-2번지선
 - 면 적 : 1,8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네 체육시설
 - 내 역 :
 -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및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파고라 및 통나무의자) 등
5. 점용기간 : <당초> 2006.05.17.~2011.05.16.
<변경> 2011.05.17.~2021.05.1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